

간행물등록번호

2019-12-040

2018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 (2차 코호트 1차 조사)



■ 구성

- 본 '이용자 안내서'는 산재보험패널데이터(2차 코호트 1차년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제공될 주요 내용은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조사개요, 조사설계, 조사연혁 그리고 변수에 대한 설명을 기술함
- 실제 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표를 문항의 변수와 함께 본 문서의 끝에 '별첨'으로 제공함
- 본 산재보험패널데이터는 데이터의 구조와 변수 등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의 분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먼저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이해한 후 데이터 및 변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권장함
- 변수명 부여규칙, 조사문항과 변수명 연계 등은 본 자료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코드북'도 참고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I. 산재보험패널데이터'장에서는 조사사업에 대한 개요와 조사대상 그리고 표본을 교체하는 주기,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어서 모집단에 대한 정의, 표본 구성 및 선정방법, 가중치 산출 방법 그리고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 'II. 조사표 구성' 장에서는 조사표의 흐름과 항목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특히, 조사표를 이해하는 데는 경제활동 판별과 그 결과 구분되는 6개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조사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조사시점 당시 해당하는 6개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개별 조사표 영역으로 이동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만 수집함
 - 즉, 어떤 문항들은 특정 유형의 패널에게만 적용되어 설문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유형의 경제활동상태인 패널에게는 수집이 안 되거나 비슷한 의미의 문항이지만 변수명이 다르게 수집됨
 -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조사가 안 된 문항의 경우 데이터 상에는 결측값(null value)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도출 할 때에는 이러한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응답 변수의 명확한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함



■ 부가 제공자료

- 산재보험패널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자료는 총 4가지이며 모두 근로복지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파일의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음
- 첫 번째 문서는 본 문서인 '이용자 안내서'임
- 두 번째 문서는 '기초분석 보고서'로 본 조사에 대한 안내와 주요 주제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공함
 - 조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조사 설계 방법, 조사 내용, 실사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응답의 기술통계량을 제공함
 - 1차 코호트와 2차 코호트의 문항 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음
- 세 번째 '오차분석 보고서'에는 추정된 값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대표준오차(RSE: Relative Standard Error)를 제공함
 - 주요 문항에 대한 평균 및 비율, 이에 대한 RSE를 추정함
- 네 번째 '코드북'은 변수명과 함께 해당 변수에 대한 의미, 응답 대상자, 해당 문항의 '보기'와 해당 보기에 응답된 빈도와 유효 퍼센트 등의 값이 소개되어 있음
 - 변수명과 변수설명이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패널데이터의 변수현황을 파악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할만한 자료임

Contents

I. 산재보험패널데이터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1) 조사 배경	3
2) 조사 목적	3
3) 조사 개요	4
2. 조사 설계	5
1) 모집단 정의	5
2) 모집단 층화	5
3) 표본크기의 결정	5
4) 표본 배분 및 표본 추출	5
5) 가중치 산출	6
6) 모수 추정	7
3. 조사 연혁	9
【 1차 코호트(2013년 ~ 2017년) 】	
1) 예비조사(2013년)	9
2) 1차년도 조사(2013년)	9
3) 2차년도 조사(2014년)	9
4) 3차년도 조사(2015년)	10
5) 4차년도 조사(2016년)	10
6) 5차년도 조사(2017년)	10
【 2차 코호트(2018년 ~ 2022년) 】	
1) 1차년도 조사(2018년)	11

II. 조사표 구성 13

1. 개 요	15
1) 설문 흐름도	15
2) 조사 항목	17
2. 조사표 구성	21
1) 개인 특성(A)	21
2)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 - 산업재해 발생 상황(Ba)/요양(Bb)/보상(Bc)/재활(Bd) ..	21
3) 재해사업장(C)	23
4) 현재 경제활동 판별(D)	24
5) 원직장복귀자(E-①)	25
6) 재취업자(E-②)	28
7) 자영업자(E-③)	31
8) 무급가족종사자(E-④)	34
9) 실업자(E-⑤)	36
10) 비경제활동인구(E-⑥)	38
11) 일자리 이력(F)	40
12) 건강과 생활(G)	41
13) 개인 소득(H)	44
14) 가구 일반사항(I)	45

III. 변수 가이드 47

1. 변수 가이드	49
1) 데이터 유형	49
2) 변수명 부여 규칙	50
3) key 변수의 이해와 이용	51
4) 모름/무응답	58
5) 조사 영역별 주요 변수	60
2. 데이터 사용 시 참고사항	76
1) 데이터 구조	76
별첨. 2018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조사표	77

표 목차

〈표 1 - 1〉 조사 개요	4
〈표 2 - 1〉 조사 항목	18
〈표 2 - 2〉 조사표 구성 - A. 개인 특성	21
〈표 2 - 3〉 조사표 구성 -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21
〈표 2 - 4〉 조사표 구성 - C. 재해사업장	23
〈표 2 - 5〉 조사표 구성 - D. 현재 경제활동 판별	24
〈표 2 - 6〉 조사표 구성 - E-①. 원직장복귀자	25
〈표 2 - 7〉 조사표 구성 - E-②. 재취업자	28
〈표 2 - 8〉 조사표 구성 - E-③. 자영업자	31
〈표 2 - 9〉 조사표 구성 - E-④. 무급가족종사자	34
〈표 2 - 10〉 조사표 구성 - E-⑤. 실업자	36
〈표 2 - 11〉 조사표 구성 - E-⑥. 비경제활동인구	38
〈표 2 - 12〉 조사표 구성 - F. 일자리 이력	40
〈표 2 - 13〉 조사표 구성 - G. 건강과 생활	41
〈표 2 - 14〉 조사표 구성 - H. 개인 소득	44
〈표 2 - 15〉 조사표 구성 - I. 가구 일반사항	45
〈표 3 - 1〉 변수명 부여 규칙	51
〈표 3 - 2〉 장애등급 관련 변수	53
〈표 3 - 3〉 경제활동유형 및 관련 변수(1차년도 기준)	57
〈표 3 - 4〉 개인 특성(A) 주요 변수	60
〈표 3 - 5〉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 주요 변수	61
〈표 3 - 6〉 재해사업장(C) 주요 변수	62
〈표 3 - 7〉 경제활동상태 판별(D) 주요 변수	62
〈표 3 - 8〉 원직장복귀자(E-①) 주요 변수	63
〈표 3 - 9〉 재취업자(E-②) 주요 변수	64
〈표 3 - 10〉 자영업자(E-③) 주요 변수	65
〈표 3 - 11〉 무급가족종사자(E-④) 주요 변수	66
〈표 3 - 12〉 실업자(E-⑤) 주요 변수	67
〈표 3 - 13〉 비경제활동인구(E-⑥) 주요 변수	68

〈표 3 - 14〉 일자리 이력(F) 주요 변수	69
〈표 3 - 15〉 건강과 생활(G) 주요 변수	70
〈표 3 - 16〉 개인소득(H) 변수 - 근로 외 소득	72
〈표 3 - 17〉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가구원 정보	73
〈표 3 - 18〉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근로소득	73
〈표 3 - 19〉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근로 외 소득	74
〈표 3 - 20〉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소비	74
〈표 3 - 21〉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자산과 부채 외	75
〈표 3 - 22〉 데이터 구조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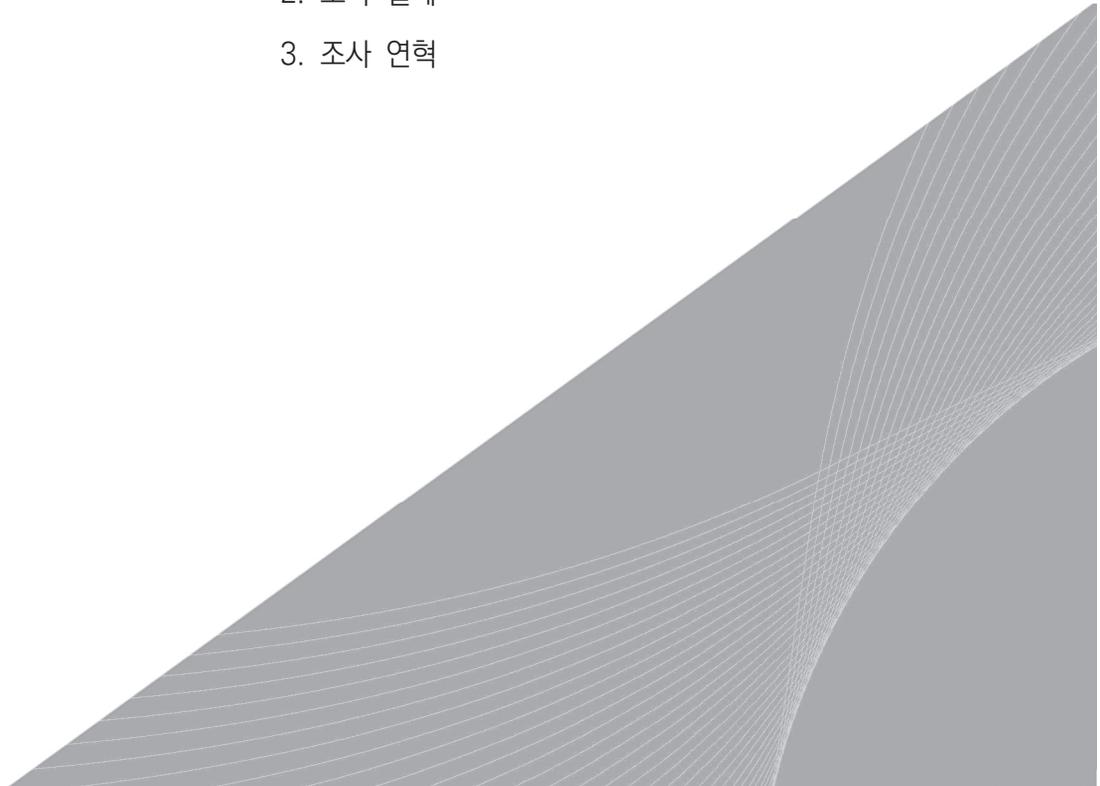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 1]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모집단 및 조사연도	11
[그림 2 - 1] 1차년도(2018년) 조사표 구조	16
[그림 2 - 2] 2차~5차년도(2019년~2022년) 조사표 구조	16
[그림 3 - 1] 1차 코호트(1~5차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 구조	49
[그림 3 - 2]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체계-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다루는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56
[그림 3 - 3] 경제활동상태 및 경제활동유형 판별도(1차년도 기준)	57



I

산재보험패널데이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연혁
- 

I. 산재보험패널데이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근래 산업재해를 경험하는 노동자의 수는 10여 년째 9만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하여 인권과 평등권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공공보험의 역할이 단순히 산재노동자를 치료하고 보상해 주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요양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패널조사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룸
- 2013년 시작된 1차 코호트 조사사업이 마무리 되고 2018년 2차 코호트 조사사업이 시작됨
- 2차 코호트 조사사업은 1차 코호트 조사사업에 이어 문항 조정과 표본 규모의 확대 등 좀 더 발전적이고 활용성 높게 설계되어 시작되었음
 - 1차 코호트 조사 문항에 비해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개발되어 포함되었고, 활용 측면에서 그 빈도가 떨어지는 문항들은 삭제되었음
 - 표본 규모를 1차 코호트 2,000명에서 2차 코호트 3,294명으로 확대함
 - 2차 코호트 조사사업은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됨

2) 조사 목적

- 첫째, 산재노동자에게 적합한 증상기적 요양 및 재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함
 - 산재요양종결자 본인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태적 및 종단적 자료수집
- 둘째, 산재발생 이후 산재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이동 경로,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건강과 생활 등 다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함
- 셋째, 1차 코호트 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영역과 문항을 개선하여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임

3) 조사 개요

- 패널 교체주기 5년: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를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함
- 표본 규모
 - 1차 코호트 조사(2013년~2017년): 표본수 2,000명
 - 2차 코호트 조사(2018년~2022년): 표본수 3,294명
- 조사방법: Tablet PC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조사(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TAPI)

〈표 1 -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 75,392명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등급별: 1~3급 88명, 무장해자 650명 할당 후 나머지 등급에서 제곱근비례배분 • 성별, 연령대별: 각 1명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표본	3,294명
조사기간	2018년 8~10월
패널 교체주기	5년
조사방법	Tablet PC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TAPI)
조사내용	개인 특성,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재해사업장,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이력, 건강과 생활, 가구 특성 등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승인통계(제439001호)

2. 조사 설계

1) 모집단 정의

- 정의: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요양 종결 산재노동자
 - 주소불명, 외국인 및 제주도 거주자 등을 제외한 75,392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정의

2) 모집단 층화

- 조사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변수를 층화변수로 설정하기로 하면서 본 조사에서는 선행연구와 기타 사회조사를 참조하여 장애등급(6개 범주¹⁾), 성(2개 범주), 연령대(4개 범주²⁾)를 층화변수로 설정함
 - 권역(6개 범주³⁾)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2개 범주)는 '내재적 층화변수'로, 표본 추출 시 활용함

3) 표본크기의 결정

- 표본크기는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허용목표오차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으로 계산함
 - V_o 는 목표오차로부터 계산되는 분산크기이고, W_h 와 s_h^2 은 각각 h 층의 구성비와 분산을 나타냄
- 조사예산과 통계활용성을 고려하여 3,200명으로 설정

$$n = \frac{\sum_{h=1} W_h s_h^2}{V_o + \sum_{h=1} W_h s_h^2 / N}$$

4) 표본 배분 및 표본 추출

- 표본 배분을 위해 먼저 조사모집단인 75,392명에 대하여 층화변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한 후, 각 층별로 모집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배분법을 검토함

1) 장애등급 범주: 1~3급, 4~7급, 8~9급, 10~12급, 13~14급, 무장애
 2) 연령대 범주: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3) 권역 범주: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전라권, 충청권

- 그 결과,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1~3급의 경우 과소구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본추출률 1/3수준과 기대상대표준오차 5%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88명으로 정하였으며, ‘무장애’의 과대구성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상대표준오차 2.785%를 기준으로 구해진 표본크기인 639명을 임의 조정한 650명을 우선 할당함
 - 이에 따라 738명을 장애등급 ‘1~3급’과 ‘무장애’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2,462명에 대해서는 4개의 장애등급 층별로 제공근 비례배분 함
- 6개 장애등급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표본할당은 표본추출과 현장조사 및 표본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명을 우선할당한 후 비례배분 함
 - 1명을 각 셀에 우선할당 한 것은 조사모집단 분포의 성별과 연령대별 구성비에서 나타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함임
- 층화변수인 장애등급별, 성별, 연령대별로 모집단을 분류한 후, 분류된 층 내에서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와 권역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함

5) 가중치 산출

- 표본설계에 사용한 조사모집단의 규모는 외국인 및 제주도 거주자를 제외한 75,392명임
- 표본배분은 1차 층화변수인 ‘장애등급’ 별로 우선할당 후 제공근 비례배분방법으로 배분한 후에, 2차 층화변수인 ‘성’과 ‘연령대’ 별로 1명씩 우선할당한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그러나 전체적으로 등확률추출이 아니므로 비편향 모수추정을 위해서 표본가중치의 산출이 필요함
- 장애등급별, 성별, 연령대별 가중치는 표본추출률의 역수로 다음과 같이 계산함

$$w_{(k,i,s,l)} = \frac{N_{(k,i,s)}}{n_{(k,i,s)}}$$

$w_{(k,i,s,l)}$	(k, i, s) 층 내 l 번째 응답자의 가중치
$N_{(k,i,s)}$	(k, i, s) 층의 모집단 크기
$n_{(k,i,s)}$	(k, i, s) 층의 표본 크기
k	장애등급(6개 범주)을 나타내는 첨자($k=1\sim6$)
i	연령대(4개 범주)를 나타내는 첨자($i=1\sim4$)
s	성별(2개 범주)을 나타내는 첨자($s=1,2$)
l	(k, i, s) 층 내 응답자의 순서

- 권역별,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별 조사 모집단 분포와 가중치를 반영한 표본분포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사후층화 보정계수를 설계가중치에 곱하여 최종가중치를 계산한 후에 모수를 추정함
 -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와 권역의 경우 표본배분이 아닌, 계통추출을 통해 표본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별 권역별 설계가중치의 합계는 모집단 구성비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해당변수에 대해 가중치를 사후층화 보정해야 함
- 설계가중치에 권역(g), 재활서비스 이용여부(j)에 대한 사후층화보정계수를 곱하여 사후층화보정을 수행함
 - 사후층화보정계수는 잠재층화변수에 대한 모집단 빈도와 설계가중된 빈도의 비로 산출함

$$\omega_{kisl}^* = \omega_{kisl} \times BF_1 \quad \text{where } BF_1 = \frac{N_{g,j}}{\sum_{k,i,s,l} \omega_{k,i,s,g,j,l}}$$

- 사후층화보정 가중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계산한 설계가중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레이킹 비 조정법을 이용하여 장애등급별, 연령대별, 성별 가중치 합이 모두 조사모집단의 합으로 수렴할 때까지 가중치를 보정하여 최종가중치를 산출함
 - 따라서 레이킹 비 조정법(Raking Ratio Adjustment)은 층화변수와 사후층화변수에 대해 가중치 합계와 모집단 규모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가중치 보정 방법임

6) 모수 추정

- 모평균은 표본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추정할 수 있음

$$\hat{Y} = \frac{\sum_{k=1} \sum_{i=1} \sum_{s=1} \sum_{l=1} \sum_{l=1}^{n_{kisl}} w_{kisl} y_{kisl}}{\sum_{k=1} \sum_{i=1} \sum_{s=1} \sum_{l=1} \sum_{l=1}^{n_{kisl}} w_{kisl}}$$

- 모평균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신뢰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됨

$$1.96 \times \sqrt{V(\hat{Y})}$$

1.96 : $z(0.025)$ 에 해당하는 신뢰계수(95% 신뢰수준)

- 표준오차를 계산하기 위한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hat{V}(\hat{Y}) = \sum_{h=1}^H \hat{V}_h(\hat{Y}_h)$$

$$\hat{V}_h(\hat{Y}_h) = \frac{n_h(1-f_h)}{n_h}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Y}_h) \right) / w_{h..}, \quad \bar{e}_{h..} = \frac{1}{n_h} \sum_{i=1}^{n_h} e_{hi}.$$

- 추정치에 대한 정도의 크기를 측정척도와 상관없이 나타내기 위해서 표본오차 대신에 상대표준오차(RSE : relative standard error)를 이용하여 아래 식으로 계산함

$$RSE(\hat{Y}) = 100 \times \frac{StdErr(\hat{Y})}{\hat{Y}} (\%)$$

3. 조사 연혁

【 1차 코호트 조사(2013년 ~ 2017년) 】

1) 예비조사(2013년)

- 1차 코호트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모집단은 2012년 한 해 동안 요양종결한 산재노동자 82,493명임
- 1차 코호트 산재보험패널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본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2013년 1월 예비조사를 실시함
 - 예비표본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재보험패널조사의 표본선정의 적합성과 대표성을 점검하고 조사대상의 인구·사회적 배경 등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였음
 - 또한 네덜란드 통계청의 조사프로그램인 Blaise를 이용한 CAPI의 개발을 통해 1차년도 조사를 준비함

2) 1차년도 조사(2013년)

- 예비조사의 조사 준비부터 실사, 자료처리 등 전반적인 조사과정을 점검하여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1차 코호트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명의 표본이 구축됨
- 1차년도 조사는 패널의 산업재해를 당한 당시의 일자리 정보, 산재보험제도 및 요양종결 이후 경제활동 상황, 건강 및 삶의 질, 가구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3) 2차년도 조사(2014년)

- 2차년도 조사에서는 동일 패널에 대한 종단면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본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1,803명 조사완료(표본유지율 : 90.2%)

4) 3차년도 조사(2015년)

- 3차년도 조사에서는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패널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표를 최대한 유지하였으며, 지역별 방문을 통한 에디터 1:1 맞춤형 교육 진행 등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1,704명 조사완료(표본유지율 : 85.2%)

5) 4차년도 조사(2016년)

- 4차년도 조사에서는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하여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춤
- 학업을 마친 이후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사업장 이전까지의 일자리 이력은 1차년도 ~ 3차년도 조사를 통해 그동안 수정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여 문항을 삭제함
- 또한 장애인 등록 관련 정보는 응답자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 등록정보인지 재확인한 후, 잘못된 응답 자료를 수정하는 등 지속적인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였음
- 1,660명 조사완료(표본유지율 : 83.0%)

6) 5차년도 조사(2017년)

- 해당 차수는 2012년 산재요양종결자를 모집단으로 하는 1차 코호트의 5개년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높은 표본유지율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회 이상 이탈경험이 있는 패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패널 관리 활동을 실시하였음
- 1,616명 조사완료(표본유지율 : 80.8%)

【 2차 코호트 조사(2018년 ~ 2022년) 】

1) 1차년도 조사(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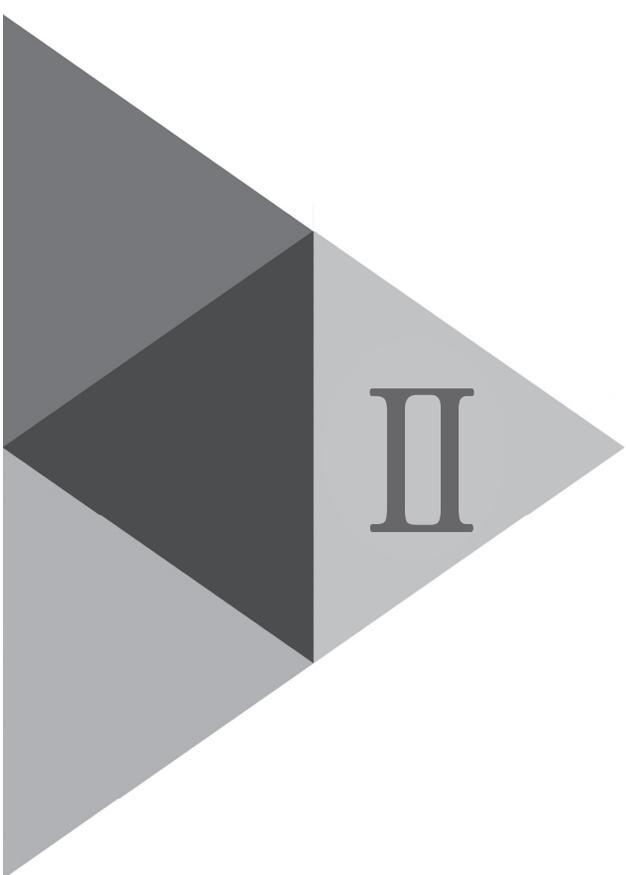
-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2차 코호트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 75,392명 중 3,294명의 표본을 구축하였음
- 산업재해 당시의 일자리 정보, 요양·보상·재활관련 정보 및 요양종결 이후 경제활동 상황, 건강과 생활, 가구 상황 등 1차 코호트 조사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문항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음
 - 산업재해 발생 당시 응급처치, 이송, 수술, 전원, 비급여, 보상 안내,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의 근로환경, 복귀한 일자리에서의 직장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 생활비 부족 경험, 자산, 저축 등 문항을 신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였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모집단	●					■					
1차		◎					□				
2차			◎					□			
3차				◎					□		
4차					◎					□	
5차						◎					□

[1차 코호트 조사모집단]
2012년 산재요양종결자
82,493명

[2차 코호트 조사모집단]
2017년 산재요양종결자
75,392명

[그림 1 - 1]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모집단 및 조사연도



II

조사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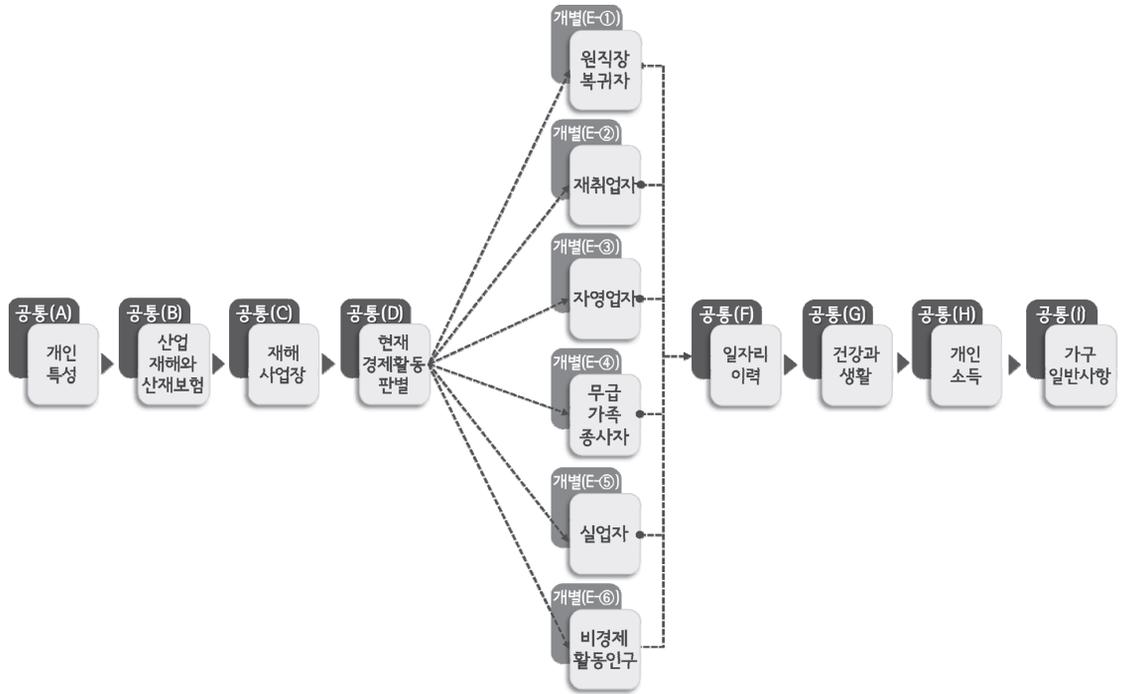
1. 개 요
2. 조사표 구성

II. 조사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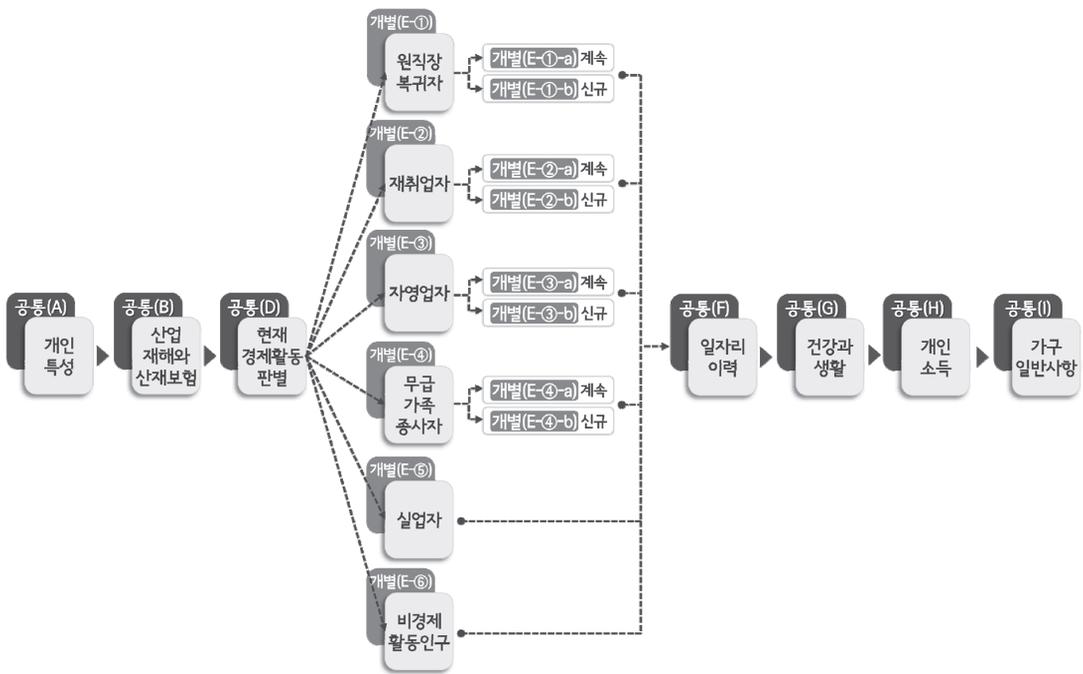
1. 개 요

1) 설문 흐름도

- 2차 코호트 1차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설문내용은 모든 응답자가 동일하게 응답하는 공통영역과, 현재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유형 영역(개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9개 영역은 A부터 I까지 알파벳을 할당하여 구분하였음
- 공통영역: 개인특성(A),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 재해사업장(C), 현재 경제활동 판별(D), 일자리 이력(F), 건강과 생활(G), 개인소득(H), 가구 일반사항(I)
- 개별영역: 패널의 현재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6개 유형별 하위 영역: 원직장복귀자(E-①), 재취업자(E-②), 자영업자(E-③), 무급가족종사자(E-④), 실업자(E-⑤), 비경제활동인구(E-⑥)로 구분
- 1차년도 조사표의 흐름은 개인특성(A) ⇨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 ⇨ 재해사업장(C) ⇨ 현재 경제활동 판별(D) ⇨ 6가지 경제활동유형 중 패널이 해당하는 1종의 조사표(E) ⇨ 일자리 이력(F) ⇨ 건강과 생활(G) ⇨ 개인소득(H) ⇨ 가구 일반사항(I)의 순으로 진행됨 [그림 2-1]
- 2차년도부터 조사되지 않는 영역: 재해사업장(C) 및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에 속한 산업재해 발생 당시 상황(Ba), 요양(Bb), 산업재해와 건강(Ga)은 변화하지 않는 값이므로 2차년도부터는 조사하지 않음[그림 2-2]



[그림 2 - 1] 1차년도(2018년) 조사표 구조



[그림 2 - 2] 2차~5차년도(2019년~2022년) 조사표 구조

2) 조사 항목<표 2-1>

- ‘개인특성(A)’영역에서는 패널의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 이력을 수집함
-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영역은 산업재해 발생상황(Ba), 요양(Bb), 보상(Bc), 재활(Bd)로 구분함
 - 산업재해 발생상황 부분에서는 2017년 요양을 종결한 산업재해 발생 당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여부, 보상처리, 대체인력 등을 확인하고, 요양 및 보상 부분에서는 패널이 경험한 요양 및 의료서비스,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 및 추가 보상 등을 설문함. 재활 부분에서는 패널의 교육 및 훈련 경험, 재활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함
- ‘재해사업장(C)’영역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내용, 업무내용, 사업장 규모, 한 달 평균 임금 등 산업재해 발생 당시의 재해사업장의 정보를 수집함
- ‘현재 경제활동 판별(D)’영역에서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의 경제활동상태를 확인하여 경제활동유형을 분류함
 - 분류된 유형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유형(E)’에서 해당하는 하위영역으로 이동하여 응답하도록 함
- ‘현재 경제활동유형(E)’영역 중 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E-①), 재취업자(E-②), 자영업자(E-③), 무급가족종사자(E-④), 미취업자는 ‘실업자(E-⑤)’와 ‘비경제활동인구(E-⑥)’로 구분됨⁴⁾
 - 원직장복귀자(E-①): 요양을 종결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종사하였던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한 산재노동자
 - 재취업자(E-②): 요양 종결 후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원래의 직장이 아닌 다른 직장으로 취업한 산재노동자
 - 자영업자(E-③): 요양 종결 후 취업하지 않고 자기사업을 하는 산재노동자
 - 무급가족종사자(E-④): 가족이나 친척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지난주 18시간 이상 일을 하였던 산재노동자
 - 실업자(E-⑤):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산재노동자
 - 비경제활동인구(E-⑥):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산재노동자

4) 정확한 정의는 III장 1절에서 다시 소개함

- ‘일자리 이력(F)’영역에서는 산업재해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 요양이 종료된 이후, 현재 일자리 이외 일자리 이력을 조사함
- ‘건강과 생활(G)’영역은 산업재해와 건강(Ga), 현재의 건강과 생활(Gb), 삶의 질(Gc), 사회적 관계(Gd)의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산업재해 이전·이후 건강상태 및 현재(조사시점)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현황, 일상생활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을 수집함
- 마지막으로 ‘개인 소득(H)’ 및 ‘가구 일반사항(I)’영역에서는 개인과 가구의 연간 소득, 주거현황 등을 조사함

〈표 2 - 1〉 조사 항목

항목		세부내용
개인특성(A)		[행정자료]성, 연령대, 장애등급, 거주지역 [조사자료]학력, 재해 전후 혼인상태, 장애인 등록 정보(등록여부·유형·등급·등록시기·활동 지원서비스), 자격증 보유정보(보유여부·개수·유형·명칭·취득시기·도움정도), 재해사업장 이전 일자리이력(경력여부·개수·근무시기·산업·직종·종사상 지위)
산업 재해 와 산재보험 (B)	산업재해 발생상황(Ba)	[행정자료]재해발생년도, 산업재해유형, 상해종류, 상해부위 [조사자료]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정보(동행인·이송수단·소요시간), 의료기관 선정인, 수술 여부, 요양·보상 처리(처리자, 변호사 선임시기·역할), 요양 중 업무대체자
	요양(Bb)	[행정자료]요양기간 [조사자료]의사의 설명, 치료기간 적정성, 비급여 부담자·금액, 전원경험(경험여부·횟수·사유), 재활병원 전원권유
	보상(Bc)	[조사자료]공단의 보상안내, 사업자와 관계 유지, 사업장의 민간보험가입(노동자건강실비보험·근재보험), 사업장의 추가보상협약, 사업주의 추가 보상·위로금(수령여부, 금액), 사업주 제공 편의내용·만족도, 민간의료보험 가입
	재활(Bd)	[행정자료]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직업·사회재활서비스 이용여부 [조사자료]안내받은 재활서비스, 서비스 인지경로, 주치의의 직업복귀 상담·만족도, 직업능력 평가 및 직업복귀소견서 이용여부·도움정도, 교육 및 직업훈련 경험(경험여부·횟수·분야·기간·훈련기관), 업무수행능력(요양종결 직후·현재), 확대 희망 지원서비스 분야, 지원서비스 이용 시 우려사항, 재활욕구
재해사업장(C)		[행정자료]근로기간 [조사자료]입사시점, 사업내용·산업분류, 업무내용·직업분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일자리 종류, 근무장소, 교대제 여부·형태, 주40시간 근로제, 노동 조합(유무·가입여부·미가입 사유), 복리후생, 사회보험가입, 고용계약기간 정보(설정여부·기간·반복갱신·미설정자의 일자리형태), 계속근무가능여부·사유, 기대근무기간·사유, 근로 계약서 작성, 임금지급주체, 임금산정방식, 한달 평균 소득, 근무일수·시간, 초과근무 여부·시간·수당, 사업체·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노출정도, 개인보호구 필요·착용, 유독성 물질 유출

항목		세부내용
현재 경제활동 판별(D)		[조사자료]지난주 수입활동·무급가족종사·일시휴직, 일자리 유형·재해사업장 여부, 무급가족 종사 시간, 지난 1주·4주 구직활동 여부, 근로 가능 여부
현재 경제 활동 유형 (E)	원직장복귀자 (E-①)	[조사자료]복귀시점, 복귀소요기간·사유, 현재 업무(재해당시 대비 변화·사유·업무내용·직업 분류), 종사상 지위, 현재 업무(복귀 직후 대비 변화·사유), 업무적응(적응도·장애요인), 근로시간 형태·변화, 사업체·사업장 규모·변화, 근무일수·시간·변화, 초과근무 여부·시간·수당, 교대제 여부·형태, 주40시간 근로제, 임금산정방식, 한달 평균 소득, 노동조합(유무·가입여부·미가입 사유·변화), 복리후생·변화, 사회보험가입·변화, 근무장소·변화, 고용계약기간 정보(설정여부·기간·반복갱신·미설정자의 일자리형태), 계속근무가능여부·사유, 기대근무기간·사유, 임금지급 주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직장복귀에 도움 된 프로그램·사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공단의 지원, 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성, 복귀 후 업무강도 변화, 복귀과정에서 어려움·사유, 복귀 후 사업주 제공 편의사항, 복귀 후 동료와의 관계·변화, 동료의 배려, 업무에 대한 생각·만족도, 이직 의향(의사·사유·희망 일자리유형·준비사항)
	재취업자 (E-②)	[조사자료]사업내용·산업분류, 입사·업무시작 시점, 취업경로, 채용형태, 재취업사유, 현재 업무(재해당시 대비 변화·업무내용·직업분류), 업무적응(적응도·장애요인),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사업체·사업장 규모, 일자리 종류, 근무일수·시간, 초과근무 여부·시간·수당, 교대제 여부·형태, 주40시간 근로제, 임금산정방식, 한달 평균 소득, 노동조합(유무·가입여부·미가입 사유), 복리후생, 사회보험가입, 근무장소, 고용계약기간 정보(설정여부·기간·반복갱신·미설정자의 일자리형태), 계속근무가능여부·사유, 기대근무기간·사유, 임금지급주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직장복귀에 도움 된 프로그램·사람, 업무강도 변화, 복귀과정에서 어려움·사유, 복귀 후 사업주 제공 편의사항, 동료와의 관계·비교, 동료의 배려, 업무에 대한 생각·만족도, 이직 의향(의사·사유·희망 일자리유형·준비사항)
	자영업자 (E-③)	[조사자료]사업내용·산업분류, 업무내용·직업분류, 창업시점, 창업동기, 창업경로, 창업활동기간, 초기투자비용·마련경로, 창업준비, 창업시 어려움, 사업체 정보(종류·종업원수·매출·수익·부채·사업장수·형태·면적·동업·산재보험가입), 업무유형, 일자리형태·계절성, 근무장소, 근무 시간의 정규성, 근무일수·시간, 건강사유 결근일수, 손익분기점, 현재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 이직 의향(의사·사유·구직활동·희망 일자리유형·준비사항), 컨설팅 경험·내용, 복귀에 도움 된 프로그램·사람, 재해 이후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사유, 복귀 후 직원과의 관계, 동료의 배려, 업무에 대한 생각·만족도, 경영상황에 대한 평가
	무급가족종사자 (E-④)	[조사자료]사업내용·산업분류, 업무내용·직업분류, 입사시점, 입사사유, 사업주와의 관계, 종업원수, 업무유형, 일자리형태·계절성, 근무장소, 근로시간 형태, 근무시간의 정규성, 근무일수·시간, 근무시 어려움, 건강사유 결근일수, 이직 의향(의사·사유·구직활동·희망 일자리유형·일자리 정보·희망사유·일자리 선택기준·준비활동), 업무에 대한 생각·만족도
	실업자 (E-⑤)	[조사자료]경제적 문제 해결방법, 구직활동 경험·시기, 구직방법, 희망 일자리 유형·사유·일자리 정보, 일자리 선택기준, 구직 상의 어려움, 업무수행을 위한 배려
	비경제 활동인구 (E-⑥)	[조사자료]경제적 문제 해결방법, 구직의향·사유, 구직가능성·사유, 구직활동 경험·시기, 구직 방법, 희망 일자리 유형·사유·일자리 정보, 일자리 선택기준, 구직 상의 어려움, 업무수행을 위한 배려

항목		세부내용
일자리 이력(F)		[조사자료]재해사업장 근로단절 경험·시기·사유, 요양 종결 후 일자리 이력(경력여부·개수·근무시기·산업·직종·종사상 지위·한달 평균 소득·규모·근로시간 형태·근무일수·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노동조합·사회보험·퇴사사유)
건강과 생활 (G)	산업재해와 건강(Ga)	[조사자료]건강회복정도, 통증정도·방해정도, 재해 이전 건강상태, 재해 이전 만성질환
	현재의 건강과 생활(Gb)	[조사자료]건강상태, 건강문제의 업무 방해정도, 만성질환 보유여부·종류, 의료기관 이용 현황 (외래진료 횟수·입원횟수·입원일수·최대 입원기간·입원사유·의료기관 유형), 미충족 의료 경험·사유, 육체적 장애 및 제약, 일상생활 도움 관련 정보(필요여부·도움제공자·도움시간·도움 분야),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 평소 주된 활동, 여가활동, 운동일수·시간, 수면시간, 흡연여부·흡연량, 음주여부·빈도
	삶의 질(Gc)	[조사자료]산업재해가 삶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존중감, 일상생활 만족도, 자기 효능감
	사회적 관계(Gd)	[조사자료]재해 이후 사회적 관계 교류 변화, 단체활동·유형, 종교활동, 어려움 발생 시 도움요청자
개인 소득(H)		[행정자료]산재보험급여 [조사자료]근로소득 발생여부·금액, 근로 외 소득
가구 일반사항(I)		[행정자료]산재보험급여 [조사자료]가구원 수, 가구원 정보(성·관계·출생시기·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한달 평균 소득·산재보험급여 수급), 가구소득(근로소득 발생여부·금액, 근로 외 소득), 가구소비, 생활비 부족 경험·비용마련방법, 가구자산(금융자산 보유여부·금액, 부동산자산·기타자산 보유여부·시세, 부동산 소유여부·종류·시가총액, 부채 보유 여부·금액, 저축여부·금액, 주거형태, 소유형태

2. 조사표 구성

1) 개인 특성(A)

- 교육수준, 혼인상태, 장애인 등록정보 및 자격증 정보 등 개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학업을 마친 이후부터 재해사업장 이전까지의 일자리 이력을 조사함<표 2-2>

〈표 2 - 2〉 조사표 구성 - A. 개인 특성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기본 개인정보	성별, 만 나이, 장애등급, 거주지(시도)(※행정데이터로 같음)	○
	교육수준(계열, 졸업여부)	○
	산업재해 전·후 혼인상태	○
장애인 등록정보	장애인 등록 여부(유형/등급/시기)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여부	○
자격증	자격증 보유 현황(보유 개수, 유형, 취득시기, 도움정도)	○
일자리 이력사항	학업을 마친 이후부터 재해사업장 이전까지의 일자리 또는 사업 경력 정보	○

2)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 - 산업재해 발생 상황(Ba)/요양(Bb)/보상(Bc)/재활(Bd)

- 산업재해 발생 당시 상황, 산업재해 이후에 받은 요양·보상 및 재활서비스 경험을 다루며<표 2-3>, Ba영역과 Bb영역은 1차년도에만 조사를 실시함

〈표 2 - 3〉 조사표 구성 -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Ba. 산업재해 발생 상황	재해발생년도, 산업재해유형, 상해종류, 상해부위(※행정데이터로 같음)	○	
	산업재해 발생 당시 응급처치 여부	○	
	산업재해 후 의료기관 이송 시 동행인	○	
	이송수단 및 소요시간	○	
	최초 치료 받은 의료기관 선정자	○	
	의료기관 도착 직후 수술여부	○	
	요양 및 보상처리	산재 처리 의뢰, 공인노무사 선임시기, 도움 받은 내용	○
		요양 중 업무대체자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3〉 조사표 구성 -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Bb. 요양	요양기간	2017년 요양 종결한 시기까지 총 요양기간(※행정데이터로 같음)	○
	의료서비스	담당 의사의 의료 정보 제공 현황	○
		치료기간의 적정성	○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	산업재해로 발생한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 유무	○
		산업재해로 발생한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 부담방법/총액	○
	의료기관 변경	산업재해 발생 당시 최초 이송 병원을 옮겨 치료한 경험/변경횟수/변경사유	○
요양기간 동안 재활병원 치료 권유를 받은 경험		○	
Bc. 보상	보상관련 안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관련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
	사업장 보상	요양 중 사업주(사업장 인사 노무 관련자)와의 관계 유지	○
		사업장 민간보험 가입 여부	○
		휴업급여 이외의 추가보상에 대한 협약	○
		산재보상 외 사업주의 별도 보상 여부/금액	○
		요양 중 사업주의 편의 제공	○
	요양 중 사업장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민간의료보험	개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	
Bd. 재활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활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활서비스 이용여부/이용내역(※행정데이터로 같음)	○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활서비스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정보습득경로	○
	직업복귀 상담	주치의의 직업복귀 관련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만족도	○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 소견서 실시 여부/취업 도움 정도	○
	교육·직업훈련	교육·직업훈련 경험/횟수	○
		교육·직업훈련 분야/기간/지원기관	○
	업무수행능력	요양 종결 직후 업무수행능력 정도	○
		현재 업무수행능력 정도	○
	근로복지공단 제공 지원서비스 개선의견	근로복지공단 제공 지원서비스의 확대 희망 분야	○
		근로복지공단 제공 지원서비스 이용 시 우려사항	○
재활서비스 욕구	재활서비스 욕구	○	

3) 재해사업장(C)

-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며<표 2-4>, 해당 영역은 1차년도에만 조사를 실시함

〈표 2 - 4〉 조사표 구성 - C. 재해사업장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사업장 정보	재해사업장 입사시기	○
	재해사업장의 사업체명 유무/사업내용/산업분류/소재지	○
근로조건	재해 발생 당시 업무내용/직업분류/특수형태근로자 여부	○
	재해 발생 당시 종사상 지위	○
	재해 발생 당시 근로시간 형태	○
	재해사업장 일자리 유형	○
	재해 발생 당시 주로 일하던 장소	○
	재해 발생 당시 교대제 여부/교대제 형태	○
	재해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로제 실시 여부	○
노동조합	재해사업장의 노동조합 유무	○
	재해 발생 당시 노동조합 가입여부	○
	재해 발생 당시 노동조합 미가입 이유	○
복리후생 / 사회보험	재해사업장의 복리후생 제공 및 혜택여부	○
	재해 발생 당시 사회보험 가입여부	○
고용계약 / 고용유지	재해사업장 고용 당시 고용계약기간 설정 여부	○
	재해사업장 고용 당시 고용계약기간의 범위	○
	재해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 반복갱신 여부	○
	재해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 근무형태	○
	재해 발생 당시 계속 고용 가능 여부	○
	재해 발생 당시 계속 고용 가능 이유	○
	재해 발생 당시 향후 기대 근무기간	○
	재해 발생 당시 향후 기대 근무기간 이유	○
	재해 발생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4〉 조사표 구성 - C. 재해사업장(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임금 / 근로시간	재해 발생 당시 임금 지급 주체	○
	재해 발생 당시 임금 산정 방식	○
	재해 발생 당시 한 달 평균 임금	○
	재해 발생 당시 근무일수, 근무시간	○
	재해 발생 당시 초과근로 여부	○
	재해 발생 당시 초과근로 시간/초과근로 수당	○
근로자 수	재해 발생 당시 사업체 근로자수	○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 근로자수	○
근로환경	재해 발생 당시 유해위험요인(환경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위험) 노출정도	○
	재해 발생 당시 필요에 따라 업무상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항상 착용여부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내 유독성 물질 유출 경험	○

4) 현재 경제활동 판별(D)

- 1차년도 조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종결 후 패널의 경제활동유형을 파악하고, 판별 결과에 따라 기본조사 영역(E-① ~ E-⑥)의 조사를 수행함〈표 2-5〉

〈표 2 - 5〉 조사표 구성 - D. 현재 경제활동 판별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현재 경제활동 상태 판별	지난 1주일 1시간 이상 수입을 위해 일한 경험	○
	지난 1주일 가족의 사업체(농장)에서 무보수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일자리 보유 여부	○
	지난 주 일하지 않는 이유	○
	일자리 형태(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
	지난 주 구직활동 여부(지난 4주 구직활동 여부)	○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	○

5) 원직장복귀자(E-①)

- 요양을 종결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종사하였던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한 산재노동자를 의미함
 - 원직장 복귀 시점, 요양 종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 등 원직장으로 복귀하게 된 배경을 설문함<표 2-6>

〈표 2 - 6〉 조사표 구성 - E-①. 원직장복귀자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원직장 복귀시기	원직장 복귀 시점	○
	요양 종료 후 바로 복귀했는지 여부	○
	원직장 복귀에 소요된 기간	○
	요양 종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	○
	요양 종료 전 복귀한 이유	○
직무관련 정보	산업재해 발생 이후 현재 직무 변화 여부/현재 직무/직무변화 사유	○
	산업재해 발생 이후 현재 직종 변화 여부/현재 직종	○
	종사상 지위	○
	원직장 복귀 직후와의 직무 변화 여부/변화 사유	○
	현재 수행 업무 적응 정도	○
	업무 적응 장애요인	○
근로시간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원직장 복귀 후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 여부/현재 근로시간 형태	○
일자리 정보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변화여부/현재 전체 근로자 수	○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실제 근무하던 사업장 근로자 수 변화여부/현재 사업장 근로자 수	○
근로조건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변화 여부	○
	한 달 평균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
	초과근무 여부/초과근무 시간/수당	○
	교대제 여부/교대제 형태	○
	주 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여부	○
	임금 산정 방식	○
	한 달 평균 임금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6〉 조사표 구성 - E-①. 원직장복귀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노동조합 관련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변화여부	○
	노동조합 유무	○
	노동조합 가입 여부	○
	노동조합 미가입 이유	○
복리후생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복리후생 제공 및 혜택 변화 여부/현재 복리후생 제공 및 혜택여부	○
사회보험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사회보험 가입 변화 여부/현재 사회보험 가입여부	○
근무 장소	산업재해 발생 당시 대비 근무 장소 변화 여부/현재 근무 장소	○
근로계약 관련정보	고용계약 체결 여부/고용계약 기간	○
	고용계약 반복 갱신 여부	○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하는지 여부	○
	지속근무 가능 여부	○
	지속근무 가능 이유	○
	향후 일할 수 있는 기간 및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임금 지급 주체	○
	특수형태근로자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원직장 복귀 관련 정보	원직장 복귀에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
	원직장 복귀에 큰 역할을 한 사람/제도	○
	원직장 복귀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제도	○
	원직장 복귀에 사업주 적극성 정도	○
	원직장 복귀 후 직무 강도 및 난이도 변화 여부	○
	원직장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 느낀 정도	○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 느낀 이유	○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6〉 조사표 구성 - E-①. 원직장복귀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일자리에 대한 평소 생각 및 만족도	동료들과의 관계	○
	산재 발생 전과 원직장 복귀 후 동료 관계 비교	○
	직장동료로부터 배려 받은 정도	○
	현재 업무의 교육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기술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지식/기능의 활용도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에 만족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계속하고 싶다	○
	일자리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
	일자리 만족도-취업의 안정성	○
	일자리 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
	일자리 만족도-근로환경	○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
	일자리 만족도-개인의 발전가능성	○
	일자리 만족도-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일자리 만족도-인사고과의 공정성	○
	일자리 만족도-복지후생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일자리 지속여부	현재 일자리 그만둘 의사 있는지 여부	○
	현재 일자리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	○
	희망 일자리 종류	○
	취업/창업 준비활동	○

6) 재취업자(E-②)

- 현재 경제활동유형이 재취업자로, 요양을 종결한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종사하였던 원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타직장으로 재취업한 산재노동자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함<표 2-7>
- 재취업자의 사업내용/산업분류, 일자리 근무시작 시기, 업무(직무) 시작시기 등을 설문함

〈표 2 - 7〉 조사표 구성 - E-②. 재취업자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취업관련 정보	사업내용/산업분류	○
	일자리 근무시작 시기(연도/월)	○
	업무(직무) 시작 시기(연도/월)	○
	취업경로	○
	채용 방법	○
	타 사업장 취업 이유	○
직무관련 정보	산업재해 발생 이후 현재 직무 변화 여부/현재 직무/직업분류	○
	종사상 지위	○
	현재 수행 업무 적응 정도	○
	업무 적응 장애요인	○
근로시간	현재 근로시간 형태	○
일자리 정보	현재 전체 근로자 수	○
	현재 사업장 근로자 수	○
	일자리 종류	○
근로조건	한 달 평균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
	초과근무 여부/초과근무 시간/수당	○
	교대제 여부/교대제 형태	○
	주 40시간(5일) 근로제 실시 여부	○
	임금 산정 방식	○
	한 달 평균 임금	○
노동조합 관련	노동조합 유무	○
	노동조합 가입 여부	○
	노동조합 미가입 이유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7〉 조사표 구성 - E-②. 재취업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복리후생	복리후생 제공 및 혜택여부	○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여부	○
근무 장소	근무 장소	○
근로계약 관련정보	고용계약 체결 여부/고용계약 기간	○
	고용계약 반복 갱신 여부	○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하는지 여부	○
	지속근무 가능 여부	○
	지속근무 가능 이유	○
	향후 일할 수 있는 기간 및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임금지급 주체	○
	특수형태근로자 여부	○
재취업 관련 정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재취업에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
	재취업에 큰 역할을 한 사람/제도	○
	재취업 후 직무 강도 및 난이도 변화 여부	○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 느낀 정도	○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 느낀 이유	○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사항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7〉 조사표 구성 - E-②. 재취업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일자리에 대한 평소 생각 및 만족도	동료들과의 관계	○
	산재 발생 전과 재취업 후 동료 관계 비교	○
	직장동료로부터 배려 받은 정도	○
	현재 업무의 교육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기술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지식/기능의 활용도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에 만족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계속하고 싶다	○
	일자리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
	일자리 만족도-취업의 안정성	○
	일자리 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
	일자리 만족도-근로환경	○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
	일자리 만족도-개인의 발전가능성	○
	일자리 만족도-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일자리 만족도-인사고과의 공정성	○
	일자리 만족도-복지후생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일자리 지속여부	현재 일자리 그만둘 의사 있는지 여부	○
	현재 일자리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	○
	희망 일자리 종류	○
	취업/창업 준비활동	○

7) 자영업자(E-③)

- 현재 일자리가 자영업인 경우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함<표 2-8>
 - 자영업자의 사업내용/산업분류, 업무내용/직업분류, 창업일자, 창업이유 등을 설문함

〈표 2 - 8〉 조사표 구성 - E-③. 자영업자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창업관련 정보	2017년 요양 종결 사업체와 동일 여부	○
	사업내용/산업분류	○
	업무내용/직업분류	○
	창업일자	○
	창업이유	○
	창업방법	○
	창업활동기간	○
	초기 투자비용	○
	초기 투자비용 마련 경로	○
	창업준비 활동	○
	창업활동 시 개인적인 애로사항	○
	사업체 창업 과정 시 애로사항	○
사업체 정보	사업체 종류	○
	종업원 수(전체/유급종업원/무급가족종사자)	○
	매출 및 수익규모(매출액/순이익 유무/순수익/적자/부채)	○
	사업장 개수	○
	사업장 형태 및 면적	○
	동업 여부 및 동업자 수	○
	산재보험 가입여부	○
업무정보	일자리 업무 유형	○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하는지 여부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여부	○
	주로 일하는 장소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8〉 조사표 구성 - E-③. 자영업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근로실태	정규근로시간 정해져 있는지 여부/정규근로시간	○
	한 달 평균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
	건강으로 인한 결근일수	○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도달시기	○
	사업체 운영 상 애로사항	○
이직 관련 정보	현재 일자리 지속 운영 의향	○
	현재 일자리 지속 운영 의향 없는 이유	○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
컨설팅 관련	취업/창업 준비활동 여부	○
	컨설팅 받은 경험 유무 및 내용	○
사업체 운영 관련	사업체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
	사업체 운영에 큰 역할을 한 사람/제도	○
	사업체 운영 시 직무 강도 및 난이도 변화 여부	○
	사업체 운영에서 어려움 느낀 정도	○
	사업체 운영에서 어려움 느낀 이유	○
일자리에 대한 평소 생각 및 만족도	동료들과의 관계	○
	직장동료로부터 배려 받은 정도	○
	현재 업무의 교육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기술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지식/기능의 활용도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에 만족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계속하고 싶다	○
	일자리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
	일자리 만족도-취업의 안정성	○
	일자리 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
일자리 만족도-근로환경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8〉 조사표 구성 - E-③. 자영업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
	일자리 만족도-개인의 발전가능성	○
	일자리 만족도-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일자리 만족도-인사고과의 공정성	○
	일자리 만족도-복지후생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사업체 평가	사업체 경영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	○

8) 무급가족종사자(E-④)

- 본 영역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함
 - 무급가족종사자의 사업내용/산업분류, 업무내용/직업분류 등을 설문함<표 2-9>

〈표 2 - 9〉 조사표 구성 - E-④. 무급가족종사자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일자리 기본 정보	사업내용/산업분류	○
	업무내용/직업분류	○
	근무시작시기(연도/월)	○
	근무동기	○
	사업주와 관계	○
	종업원 수(전체/무급가족종사자)	○
업무정보	일자리 업무 유형	○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하는지 여부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여부	○
	주로 일하는 장소	○
근로실태	근무시간 형태	○
	정규근로시간 정해져 있는지 여부/정규근로시간	○
	한 달 평균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
	건강으로 인한 결근일수	○
	근무 시 겪는 애로사항	○
	현재 일자리 지속근무 의향	○
	현재 일자리 지속근무 의향 없는 이유	○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
희망일자리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
	임금근로/창업 희망 이유	○
	일자리 선택 기준	○
	취업/창업 준비 활동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9〉 조사표 구성 - E-④. 무급가족종사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일자리에 대한 평소 생각 및 만족도	현재 업무의 교육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기술수준 적합 여부	○
	현재 업무의 지식/기능의 활용도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에 만족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일을 계속하고 싶다	○
	일자리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
	일자리 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내용	○
	일자리 만족도-근로환경	○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
	일자리 만족도-개인의 발전가능성	○
	일자리 만족도-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9) 실업자(E-⑤)

- 실업자의 구직활동, 희망일자리 및 구직활동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함<표 2-10>
- 실업자의 사업내용/산업분류, 업무내용/직업분류, 창업일자, 창업이유 등을 설문함

〈표 2 - 10〉 조사표 구성 - E-⑤. 실업자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경제적 문제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	○
구직활동	구직활동 여부/구직활동 시기	○
	일자리 정보 취득 경로	○
희망 일자리	희망 일자리 형태	○
	임금근로 희망 이유	○
	희망 일자리 정보 (사업내용/산업분류/업무내용/직업분류/종사상 지위/근무시간 형태/시간제 희망이유/최소희망임금)	○
	창업 희망 이유	○
	창업 희망 일자리 정보 (희망업종/산업분류/기대 순수익/사업장 형태)	○
	경제활동 할 의사가 없는 이유	○
	일자리 선택 기준	○
구직활동의 어려움	구직활동의 어려움-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경험이 부족하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나이가 너무 많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10〉 조사표 구성 - E-⑥. 실업자(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근무일, 근무시간 조정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출퇴근 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별도 작업장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직무 적응을 위한 일정기간의 훈련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사무보조 및 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작업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의사소통 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이동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기타	○

10) 비경제활동인구(E-⑥)

●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경험, 향후 근로의향 등을 파악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저적 문제해결 방법, 지난주 일자리 희망여부 등을 설문함<표 2-11>

〈표 2 - 11〉 조사표 구성 - E-⑥.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경제적 문제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해결 방법	○
구직활동 및 일할 능력	지난주 일자리 희망 여부	○
	지난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 가능여부	○
	지난 4주 이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	○
	구직활동 여부/구직활동 시기	○
	일자리 정보 취득 경로	○
희망 일자리	희망 일자리 형태	○
	임금근로 희망 이유	○
	희망 일자리 정보 (사업내용/산업분류/업무내용/직업분류/종사상 지위/근무시간 형태/시간제 희망이유/최소희망임금)	○
	창업 희망 이유	○
	창업 희망 일자리 정보 (희망업종/산업분류/기대 순수익/사업장 형태)	○
	경제활동 할 의사가 없는 이유	○
	일자리 선택 기준	○
구직활동의 어려움	구직활동의 어려움-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경험이 부족하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11〉 조사표 구성 - E-⑥. 비경제활동인구(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	구직활동의 어려움-나이가 너무 많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구직활동의 어려움-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근무일, 근무시간 조정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출퇴근 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별도 작업장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직무 적응을 위한 일정기간의 훈련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사무보조 및 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작업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의사소통 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이동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	○
	타인 또는 회사의 도움 필요 여부-기타	○

11) 일자리 이력(F)

- 해당 영역에서는 산재 근로자의 종결 후 일자리 이력에 대하여 파악함
 - 재해사업장 퇴사 여부, 재해사업장 퇴사 시기 및 이유 등을 설문함<표 2-12>

〈표 2 - 12〉 조사표 구성 - F. 일자리 이력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재해사업장 일자리 그만둔 정보	재해사업장 퇴사 경험	○
	재해사업장 퇴사 시기	○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	○
요양 종결 후 일자리 이력	요양 종료 이후 현재 일자리 이외 일자리 이력 보유 여부	○
	일자리 시작시기/종료시기	○
	사업내용/산업분류	○
	업무내용/직업분류	○
	종사상 지위, 월 소득	○
	근로자 수, 근로시간 형태, 근무일수/근무시간, 초과근로시간, 노동조합 가입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퇴사 이유	○

12) 건강과 생활(G)

- 해당 영역에서는 산업재해 전후 건강, 건강과 생활, 삶의 질,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설문함<표 2-13>

<표 2 - 13> 조사표 구성 - G. 건강과 생활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Ga. 산업재해와 건강	건강수준	산업재해 이후 건강회복 정도	○	
		산업재해 이후 통증의 빈도	○	
		통증에 의한 삶의 방해 정도	○	
		산업재해 이전 건강상태	○	
		산업재해 이전 건강문제	○	
Gb. 현재의 건강과 생활	건강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	○	
		건강상태가 일하는데 지장 여부	○	
		만성질병 보유 여부	○	
		만성질병 종류	○	
	의료 이용 정보		최근 1년간 총 외래진료 횟수	○
			최근 1년간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	○
			최근 1년간 총 입원 횟수 / 입원 일수	○
			최근 1년간 가장 장기간 입원기간	○
			최근 1년 중 의료기관 입원 이유	○
			최근 1년 중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형태	○
			최근 1년 중 주로 이용한 근로복지공단 운영 직영병원	○
			최근 1년간 필요한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경험	○
			장기간 지속되는 장애나 육체적 제약 여부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13〉 조사표 구성 - G. 건강과 생활(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Gb. 현재의 건강과 생활	일상생활 도움 및 어려움	일상생활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	○	
		도움 제공자 유무	○	
		도움 제공자	○	
		하루 평균 도움시간(시간/분)	○	
		도움을 받는 분야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일과 및 여가활동	하루일과 중 주로 하는 활동(수면 제외)	○	
		여가시간 활용	○	
	운동과 수면시간	1주일 평균 운동일 수	○	
		하루 평균 운동시간	○	
		하루 평균 수면시간	○	
	흡연 및 음주	흡연 여부	○	
		하루 평균 흡연 정도	○	
		음주여부	○	
		평소 음주 빈도	○	
	Gc. 삶의 질	일상생활 및 만족도	산업재해가 삶에 미치는 영향	○
			사회경제적 지위	○
			자아존중감	○
일상생활 만족도(가족수입/여가생활/주거환경/가족관계/친인척관계/사회적친분관계)			○	
전반적인 일상생활 만족도			○	
자기효능감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13〉 조사표 구성 - G. 건강과 생활(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Gd.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교류 상태 변화(친구)	○
		교류 상태 변화(이웃)	○
		교류 상태 변화(친척)	○
		모임 참여 빈도(종교모임)	○
		모임 참여 빈도(친목모임)	○
		모임 참여 빈도(동호회)	○
		현재 취업활동 이외에 특정 단체 가입활동 여부	○
		가입 단체	○
		종교	○
		산재 이후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	○

13) 개인 소득(H)

- 해당 영역에서는 패널 개인의 소득상황을 근로소득과 근로 외 소득으로 나누어 파악함(표 2-14)

〈표 2 - 14〉 조사표 구성 - H. 개인 소득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개인 근로 소득		지난 한 해 근로소득 발생 여부	○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	○
개인 근로 외 소득	사회보험 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급여(장해일시금)	○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
	재산소득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그 외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장애인 수당	○
		기초연금	○
		기타 공적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가구원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외 따로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
		그 이외의 사적이전 소득(친구, 이웃,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
	기타	기타 소득	○

14) 가구 일반사항(I)

- 해당 영역에서는 패널이 속해 있는 가구와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설문함<표 2-15>

〈표 2 - 15〉 조사표 구성 - I. 가구 일반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가구원 정보	가구원 수	○	
	가구원의 성별	○	
	패널과의 관계	○	
	가구원의 연령	○	
	가구원의 최종학력(최종학교/졸업여부)	○	
	가구원의 혼인상태	○	
	가구원의 취업상태/월평균소득	○	
	패널 외 산재보험 급여 받은 가구원 유무	○	
가구 근로 소득	지난 한 해 근로소득 발생 여부	○	
	지난 한 해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	○	
가구 근로 외 소득	사회보험 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
		산재보험급여(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	○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
	재산소득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그 외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장애인 수당	○
		기초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기타 공적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가구원 외 따로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
		그 이외의 사적이전 소득(친구, 이웃,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
	기타	기타 소득	○

(다음 장에서 계속)

〈표 2 - 15〉 조사표 구성 - I. 가구 일반사항(계속)

조사 항목	조사 내용	1차
가구 소비	식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	○
	주거비	○
	경조사비	○
	보건의료비	○
	교양오락비	○
	내구재 구입비	○
	통신비	○
	용돈	○
	피복비, 생필품 구입비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
	각종 이자비용	○
	그 외 기타 세금	○
	헌금 및 각종 기부금	○
	기타 생활비 지출금	○
	기타 생활비 지출용도	○
	지난 1년간 생활비 부족 경험 여부	○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	○
자산 및 부채	금융자산 소유 여부	○
	금융자산	○
	부동산 자산 또는 기타 자산 소유 여부	○
	부동산 자산 및 기타 자산	○
	부동산 소유 여부	○
	부동산 종류	○
	부동산 시가 총액	○
	부채 유무	○
	부채액	○
	저축 여부	○
	저축액	○
주거 및 소유 형태	주거 형태	○
	주거지 소유 형태	○



변수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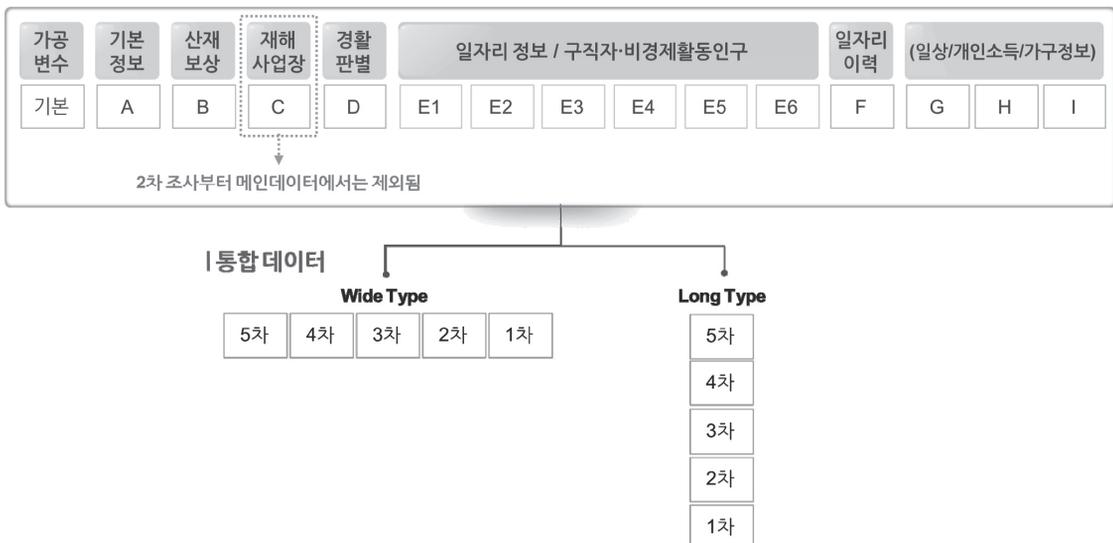
1. 변수 가이드
2. 데이터 사용 시 참고사항

Ⅲ. 변수 가이드

1. 변수 가이드

1) 데이터 유형

- 1차 코호트 산재보험패널 데이터는 ‘메인데이터’와 ‘통합데이터’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3-1]
- 메인데이터는 A~I 영역까지 해당차수의 조사표의 흐름에 따라 전반적인 정보를 수록함
- 통합데이터는 각 차수별 메인데이터를 가로와 세로로 병합하여 각각 Wide-type과 Long-type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함



[그림 3 - 1] 1차 코호트(1~5차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 구조

- 통합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메인데이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다만 현재 경제활동유형(E) 중 지난 조사 당시에 응답한 일자리와 동일한 일자리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a)'과 '신규(b)'로 구분되는 원직장복귀자(E-①-a, E-①-b) ~ 무급가족종사자(E-④-a, E-④-b)의 8개 영역에서는, 변수 구성 시 '계속(a)'과 '신규(b)'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변수로 취합함
 - 이에 따라 8개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4개 영역으로 축소하여 전체 데이터 크기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 2차 코호트 1차년도 산재보험패널 데이터 역시 1차 코호트 데이터의 구조, 변수체계 등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함
 - 단, 2018년도 조사는 2차 코호트 패널구축 조사로서, 메인데이터만 구축하였고, 통합데이터는 2차년도부터 구축함. 따라서, 본 이용자 안내서는 2차 코호트 1차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변수체계 구성방법을 다룸

2) 변수명 부여 규칙

-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의 변수명은 영역명, 조사차수, 구분번호, 변수번호 순으로 부여된다. 변수명은 각 문항에 대해 1개의 변수명만 갖도록 구성하였으며, 변수명이 부여되는 규칙은 아래와 같음<표 3-1>
 - 단, 복수응답문항의 경우 응답이 가능한 개수만큼 해당문항의 변수를 생성하였음

가) 조사차수

- 조사차수는 2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01은 1차년도, 02는 2차년도, 03은 3차년도, 04는 4차년도, 05는 5차년도를 의미함

나) 구분번호

- 조사내용 간에 관련이 있는 여러 문항들에는 주문항을 기준으로 하나의 구분 번호를 부여하였음. 예시) 문1), 문1-1), 문1-2) ⇨ 구분번호 : 001

다) 변수번호

- 해당하는 변수의 일련번호를 의미함

〈표 3 - 1〉 변수명 부여 규칙

영역		조사차수	구분번호	변수번호	비고
A. 개인특성		01	001	001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Ba. 산업재해 발생 상황	01	001	001	1차년도 조사만 실시
	Bb. 요양	01	001	001	
	Bc. 보상	01	001	001	
	Bb. 재활	01	001	001	
C. 재해사업장		01	001	001	1차년도 조사만 실시
D. 현재 경제활동 판별		01	001	001	
E. 현재 경제활동 유형	E1. 원직장복귀자	01	001	001	
	E2. 재취업자	01	001	001	
	E3. 자영업자	01	001	001	
	E4. 무급가족종사자	01	001	001	
	E5. 실업자	01	001	001	
	E6. 비경제활동인구	01	001	001	
F. 일자리 이력		01	001	001	
G. 건강과 생활	Ga. 산업재해와 건강	01	001	001	1차년도 조사만 실시
	Gb. 현재의 건강과 생활	01	001	001	
	Gc. 삶의 질	01	001	001	
	Gd. 사회적 관계	01	001	001	
H. 개인 소득		01	001	001	
I. 가구 일반사항		01	001	001	

3) key 변수의 이해와 이용

-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변수들로 기본영역을 구성함
- 기본영역에는 key 변수와 그 외 주요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key 변수는 패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며 그 외의 주요 변수들의 경우 자료를 사용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함

가) 패널 ID

-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조사 단위는 ‘개인’이며,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변수는 패널ID(PID)임
- PID는 각 조사차수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패널을 나타내는 값을 가짐

나) 성(gender), 연령(age), 교육수준(edu), 권역(area)

-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로 성(남성, 여성), 연령(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수준(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변수를 제공함
 - 이 중 연령(age)은 조사가 진행된 해의 8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만 나이를 범주화한 변수임
 - 이 때 졸업상태에 따라 '기본' 영역에서 교육수준을 재구성하였는데, 예를 들어, 개인특성(A) 영역에서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중졸로 분류함
- 권역(area)은 패널이 거주하는 권역의 15개 시도를 6개 권역(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전라권, 충청권)으로 범주화함
 -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를 추출하여 가공한 변수임(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 '기본' 영역에서는 패널 개인의 주요 인적특성과 경제활동유형 변수를 가공하여 제공함
 -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특성 변수는 'A. 개인특성'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 영역에 추가하였음

다) 장애등급 관련 변수(dis2, disa6, disa15)

- 산재보험제도에서 정의하는 장애등급이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한 체계로, 법률로 규정된 신체장애등급표를 따름
-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는 장애등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제공함(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 장애등급은 1급에 가까울수록 중증,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증에 해당하며 '장애등급 없음(무장애자)'은 장애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산재노동자를 의미함
 - 이용자는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등급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장애등급은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하여 변수 내용(보기범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변수로 구분함(표 3-2)

〈표 3 - 2〉 장애등급 관련 변수

disa012 (2개 범주)		disa016 (6개 범주)		disa0115 (15개 범주)	
변수 내용	변수값	변수 내용	변수값	변수 내용	변수값
장애등급 있음 (1~14급)	1	1~3급	1	1급	1
				2급	2
				3급	3
		4~7급	2	4급	4
				5급	5
				6급	6
		8~9급	3	7급	7
				8급	8
				9급	9
		10~12급	4	10급	10
				11급	11
				12급	12
		13~14급	5	13급	13
				14급	14
장애등급 없음 (무장해)	2	장애등급 없음 (무장해)	6	장애등급 없음 (무장해)	15

라) 요양기간(con)

- 패널이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했던 기간을 의미하며,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9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그리고 2년 초과로 총 6개 범주로 구분함
- 이 변수도 역시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를 추출하여 가공하였음(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마) 재해 발생 년도(acc)

-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를 나타내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제공함(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바) 상해부위(injury part)

-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손상된 신체부위를 의미하며, 두부, 눈, 귀, 안면부, 목, 팔, 손·손가락, 가슴·등, 허리, 엉덩이, 다리, 발·발가락, 복합부위,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 신경계통, 복부, 전신, 기타의 21개 범주로 구성됨
 -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제공함(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사) 상해종류(injury type)

- 산업재해로 입은 상해에 대한 유형으로, 골절, 삐임, 요통·근골격질환, 절단, 베임, 찰과상, 타박상·진탕, 파열·열상, 찢림, 화상, 동상, 전염·중독, 뇌심혈관질환을 포함한 내부기관상해, 기타의 14개 범주로 구성됨
 -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를 추출하여 제공함(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아) 근로기간(work period)

- 패널이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으로,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5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의 14개 범주로 구분하였음
 - 이 변수도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사용함(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 단, 패널이 조사에서 응답한 재해사업장 입사 시점과 행정자료가 다를 경우, 패널의 응답값으로 대체하였음

자) 산업재해유형(incident)

- 패널이 경험한 산업재해의 유형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됨
 - 이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에서 추출하여 제공함(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차) 재활서비스 이용여부(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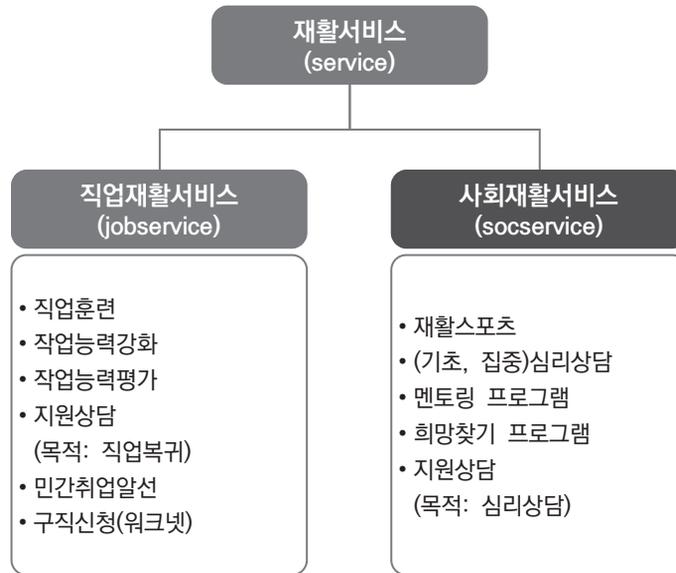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병 상태가 중하여 건강 회복과 직업 및 사회 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활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재활서비스는 다시 직업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로 구분하여 이용여부 변수를 함께 제공함[그림3-2]
- 이는 직업재활·사회재활서비스에 해당하는 개별 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이용여부를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 행정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임(자료 추출 기준 시점: 2018. 4.)

(1)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여부(jobservice)

- 직업재활서비스는 재해 발생 이후 원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 등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해당 변수에는 직업훈련,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작업능력평가, 지원상담(목적: 직업복귀), 민간취업알선 그리고 구직신청(워크넷)의 6개 직업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반영되어 있음

(2) 사회재활서비스 이용여부(socservice)

- 사회재활서비스는 직업활동 적응력 강화, 신체 능력 강화, 심리적 안정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해당 변수는 재활스포츠, 기초·집중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희망찾기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상담(목적: 심리상담)의 5개 사회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반영되어 있음



[그림 3 - 2]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체계-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다루는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카) 경제활동상태(emp2, emp3, emp6)

- 본 패널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 및 경제활동유형 변수를 3가지 종류로 제공함<표 3-3>
 - 'D. 현재 경제활동 판별'에서 아래의 정의에 따라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며, 이 때 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세분화됨[그림3-3]

(3) 취업자

- 지난 주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지난 주 수입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도 평소 해오던 일자리가 있었던 사람

(4) 실업자

- 지난 주 또는 지난 4주 내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지난 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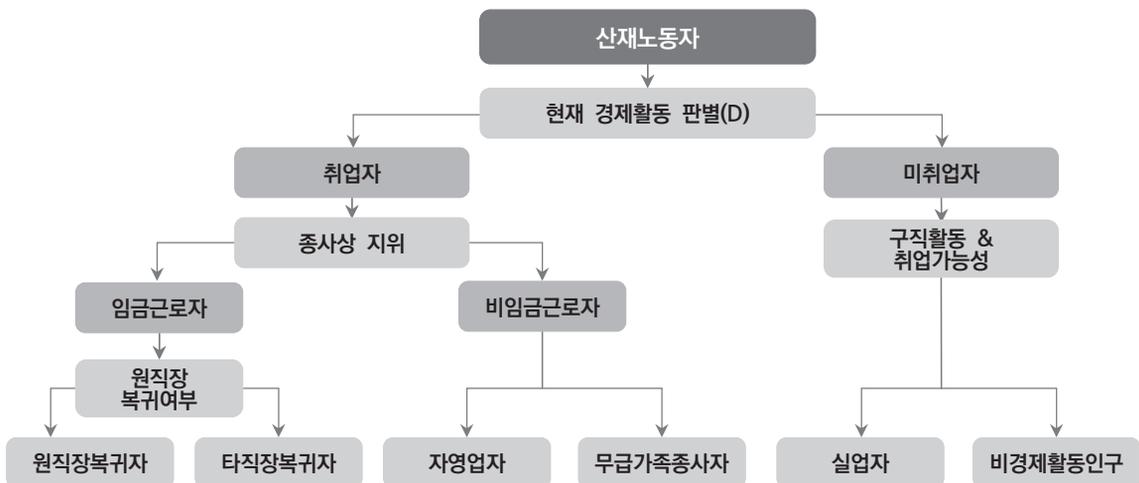
-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5) 비경제활동인구

- 지난 주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나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a.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
 - b.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표 3 - 3〉 경제활동유형 및 관련 변수(1차년도 기준)

emp012 (2개 범주)		emp013 (3개 범주)		emp016 (6개 범주)	
변수 내용	변수값	변수 내용	변수값	변수 내용	변수값
취업자	1	취업자	1	원직장복귀자	1
				재취업자	2
				자영업자	3
				무급가족종사자	4
미취업자	2	실업자	2	실업자	5
		비경제활동인구	3	비경제활동인구	6



[그림 3 - 3] 경제활동상태 및 경제활동유형 판별도(1차년도 기준)

4) 모름/무응답

- 'E-①. 원직장복귀자 : 문1) 원직장 복귀 시기 - 월(E101001002)'와 같이 시점(월)을 응답받는 문항이나, 'E-③. 자영업자 : 문6) 초기투자비용(E301006002)'과 같이 금액을 응답 문항의 경우, 모름/무응답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항목에서 모름/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범주형 보기를 다시 제시하여 응답을 받음으로써 모름/무응답을 최소화 함

〈모름/무응답 - 범주형 보기 제시 예시① (E1. 원직장복귀자 : 문1) 원직장 복귀 시기)〉

문1) 귀하께서 이 직장으로 복귀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E101001001~3)

년 월
 [계절 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 DB : 원직장 복귀 시점 관련 변수는 다음과 같음

변수명	변수설명	응답대상	보기 값
E101001001	원직장 복귀 연도	원직장복귀자 패널	
E101001002	원직장 복귀 월	원직장복귀자 패널	98 Refusal 99 Don't Know
E101001003	원직장 복귀 월(계절)	E101001002에서 모름/응답거절	91 봄 92 여름 93 가을 94 겨울

5) 조사 영역별 주요 변수

가) 개인 특성(A)

- 패널의 학력, 자격증, 과거 일자리 이력 등 개인 정보에 관련된 값을 갖는 변수<표 3-4>

〈표 3 - 4〉 개인 특성(A)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최종학교	A01001001	
졸업상태	A01001002	
산업재해 당시 혼인상태	A01002001	
현재 혼인상태	A01002002	
장애인 등록 여부	A01003001	
장애 유형	A01004001	
장애 등급	A01004002	
장애인 등록 시기-연도	A01004003	
장애인 등록 시기-월	A01004004	
장애인 등록 시기-월(계절)	A01004005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A01004006	
자격증 보유 여부	A01005001	
자격증 보유 개수	A01005002	
자격증-자격증명	A01005A01 ~ A01005O01	반복문항 (자격증 1 ~ 자격증 15)
자격증-종류	A01005A02 ~ A01005O02	
자격증-취득 연도	A01005A03 ~ A01005O03	
자격증-취득 월	A01005A04 ~ A01005O04	
자격증-취득 월(계절)	A01005A05 ~ A01005O05	
자격증-취업에 도움 정도	A01005A06 ~ A01005O06	
재해 발생 일자리가 학업 후 첫 일자리인지 여부	A01006001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 이력 개수	A01006002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시작 연도	A01006A01 ~ A01006J01	반복문항 (일자리 1 ~ 일자리 10)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시작 월	A01006A02 ~ A01006J02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시작 월(계절)	A01006A03 ~ A01006J03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그만둔 연도	A01006A04 ~ A01006J04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그만둔 월	A01006A05 ~ A01006J05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그만둔 월(계절)	A01006A06 ~ A01006J06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사업내용	A01006A07 ~ A01006J07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산업분류	A01006A08 ~ A01006J08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업무내용	A01006A09 ~ A01006J09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직업분류	A01006A10 ~ A01006J10	
재해 발생 이전 일자리-종사상 지위	A01006A11 ~ A01006J11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나)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

- 산업재해 발생 당시 상황, 발생 이후 요양과 보상 과정의 경험, 사업장의 배려, 주관적 업무수행능력,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등의 정보를 포함<표 3-5>

<표 3 - 5> 산업재해와 산재보험(B)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응급처치 여부	B01001001	
의료 기관 이송 시 동행인	B01002001~B01002004, B01002004t	중복응답
이송수단	B01002005, B01002005t	
이송 소요시간	B01002006	
산재 발생 당시 치료받은 의료기관 선정 방법	B01003001	
의료기관 도착 직후 수술 여부	B01004001	
요양 및 보상과 관련하여 주로 의뢰한 사람	B01005001, B01005001t	
공인노무사(혹은 변호사) 선임한 시기	B01005002	
공인노무사(혹은 변호사)로부터 실제 도움 받은 일	B01005003 ~ B01005008, B01005008t	중복응답
요양 중 하던 일 대신 담당하 사람	B01006001, B01006001t	
의사의 상세한 설명 여부	B01007001	
치료기간 적정 여부	B01008001	
비급여 금액 발생 여부 및 부담 방법	B01009001, B01009001t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금액	B01009002, B01009003	
최초 이송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험 유무	B01010001	
다른 병원으로 옮긴 횟수	B01010002	
다른 병원으로 옮긴 이유	B01010003, B01010003t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은 경험 유무	B0101100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 관련 안내 받았는지 여부	B01012001	
요양 중 사업주 및 사업장 인사노무 관련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	B01013001	
민간보험 가입여부(근로자 건강 실비 보험)	B01014001	
민간보험 가입여부(근재 보험)	B01014002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다) 재해사업장(C)

- 재해사업장 영역은 1차년도에만 조사되며, 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 재해 당시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및 업무 정보, 근로조건 등으로 구성됨<표 3-6>

〈표 3 - 6〉 재해사업장(C)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재해사업장 입사일(년)	C01001001	1차만 조사
재해사업장 입사일(월)	C01001002	
임금산정방식	C01020001	
종사상 지위	C01005001	
근로시간형태	C01006001	
고용계약체결여부	C01014001	
한달 평균 임금	C01021001	
한 달 평균 근무일수	C01022001	
하루 평균 근무시간	C01022002	
사업체 근로자수	C01024001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라) 경제활동상태 판별(D)

- 경제활동상태 판별은 조사일 직전 1주를 기준으로 응답받은 정보이며, 지난 주 주요활동, 지난 주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1주 및 4주 이내 구직활동 여부, 일자리를 원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표 3-7>

〈표 3 - 7〉 경제활동상태 판별(D)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지난 1주일 1시간 이상 수입을 위해 일한 경험	D01001001	
지난주 일시휴직 여부	D01002001	
지난주 일시휴직 이유	D01002002, D01002002t	
하는 일의 유형	D01003001	
지난 주 구직활동 여부	D01005001	
지난4주 이내 구직활동 여부	D01006001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는지 여부	D01007001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마) 현재 경제활동유형(E)

(1) 원직장복귀자(E-①)

- 원직장복귀자는 조사시점 직전 1주를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에 종사하였던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한 산재노동자를 의미함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 정보,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및 업무 정보, 근로조건 등을 조사함<표 3-8>

〈표 3 - 8〉 원직장복귀자(E-①)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원직장복귀 연도 원직장복귀 월 원직장복귀 월(계절)	E101001001 E101001002 E101001003	
요양종료 후 바로 복귀했는지 여부	E101002001	
복귀까지 걸린 시간(년) 복귀까지 걸린 시간(개월)	E101002002 E101002003	
현재 한 달 평균 근무일수	E101012002	
현재 하루 평균 근무시간	E101012003	
현재 임금산정방식	E101016001	
현재 한달 평균 임금	E101017001	
현재 고용계약체결여부	E101023001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2) 재취업자(E-②)

- 재취업자 영역은 조사시점 직전 1주를 기준으로 원래 다니던 재해사업장이 아닌 다른 직장(임금근로)에 재취업한 패널을 대상으로 사업장 정보, 일자리 정보, 고용형태 및 업무 정보, 근로조건 등을 조사함<표 3-9>

〈표 3 - 9〉 재취업자(E-②)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사업내용 산업분류	E201001001 E201001002	
현재 일자리 입사일(년) 현재 일자리 입사일(월) 현재 일자리 입사일(계절)	E201002001 E201002002 E201002003	
현재 업무 시작일(년) 현재 업무 시작일(월) 현재 업무 시작일(계절)	E201003001 E201003002 E201003003	
취업하게 된 경로 취업하게 된 경로(기타)	E201004001 E201004001t	
채용방법 채용방법(기타)	E201005001 E201005001t	
원직장 복귀하지 않고 재취업한 이유 원직장 복귀하지 않고 재취업한 이유(기타)	E201006001 E201006001t	
재해 당시와 현재 업무의 동일 여부 업무내용 직업분류	E201007001 E201007002 E201007003	
종사상 지위	E201008001	
현재 업무에 적응 정도	E201009001	
현재 업무 적응 시 장애 요인 현재 업무 적응 시 장애 요인(기타)	E201009002 E201009002t	
근로시간 형태	E201010001	
사업체 근로자 수 사업장 근로자 수	E201011001 E201012001	
일자리 종류 일자리 종류(기타)	E201013001 E201013001t	
한 달 평균 근무일수 한 달 평균 근무시간	E201014001 E201014002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3) 자영업자(E-③)

- 자영업자 영역은 조사시점 직전 1주를 기준으로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패널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순수익, 종업원수, 초기투자비용 등을 조사함<표 3-10>

<표 3 - 10> 자영업자(E-③)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2017년 요양 종결 사업체와 동일 여부	E301001001	
사업내용	E301001002	
산업분류 업무내용 직업분류	E301001003 E301001004 E301001005	
창업시점-연도 창업시점-월 창업시점-월(계절)	E301002001 E301002002 E301002003	
창업 동기 창업 동기(기타)	E301003001 E301003001t	
창업 방법 창업 방법(기타)	E301004001 E301004001t	
창업활동 기간	E301005001	
초기투자비용 초기투자비용(범주)	E301006001 E301006002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본인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가족 및 친지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정부지원금 및 융자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금융권 대출 및 융자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사채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기타 초기투자비용 마련 경로(기타)	E301007001 E301007002 E301007003 E301007004 E301007005 E301007006 E301007007 E301007007t	
창업준비 활동-1순위 창업준비 활동-1순위(기타) 창업준비 활동-2순위 창업준비 활동-2순위(기타)	E301008001 E301008001t E301008002 E301008002t	순위응답
창업활동 시 개인적 애로사항-1순위 창업활동 시 개인적 애로사항-1순위(기타) 창업활동 시 개인적 애로사항-2순위 창업활동 시 개인적 애로사항-2순위(기타)	E301009001 E301009001t E301009002 E301009002t	순위응답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4) 무급가족종사자(E-④)

- 무급가족종사자는 조사시점 직전 1주를 기준으로 혈연인 동거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주에 18시간 이상 근무한 패널을 대상으로, 근로자수,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무시간제 등을 조사함<3-11>

〈표 3 - 11〉 무급가족종사자(E-④)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사업내용 산업분류 업무내용 직업분류	E401001001 E401001002 E401001003 E401001004	
일자리 시작-연도 일자리 시작-월 일자리 시작-월(계절)	E401002001 E401002002 E401002003	
일자리 시작 동기 일자리 시작 동기(기타)	E401003001 E401003001t	
사업주와 관계	E401004001	
사업장 근로자 수 무급가족종사자 수	E401005001 E401005002	
업무 종류	E401006001	
일거리가 있을 때만 일하는지 여부	E401007001	
주기적 일자리 여부	E401008001	
주로 일하는 장소	E401009001	
근무시간 형태	E401010001	
정규 근로시간 정해져 있는지 여부 정규 근로시간-시작시간 정규 근로시간-종료시간	E401011001 E401011002 E401011003	
한 달 평균 근무일수 하루 평균 근무시간	E401012001 E401012002	
건강으로 인한 결근일수	E401013001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 근무 시 애로사항-1순위(기타) 근무 시 애로사항-2순위 근무 시 애로사항-2순위(기타)	E401014001 E401014001t E401014002 E401014002t	순위응답
일자리 지속 근무 의향	E401015001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5) 미취업자(실업자 : E-⑤) / 비경제활동인구 : E-⑥)

- 경제활동상태 판별 결과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게만 해당되는 변수임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변수는 구분되어 있으며, 일자리 희망/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직활동 관련사항, 희망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표 3-12, 13>

<표 3 - 12> 실업자(E-⑤)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1	E501001001	중복응답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2	E501001002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3	E501001003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4	E501001004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5	E501001005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6	E501001006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7	E501001007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기타)	E501001007t	
요양 종결 후 구직활동 여부	E501002001	
마지막 구직활동 연도	E501002002	
마지막 구직활동 월	E501002003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1순위	E501003001	순위응답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1순위(기타)	E501003001t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2순위	E501003002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2순위(기타)	E501003002t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3순위	E501003003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3순위(기타)	E501003003t	
희망 일자리 종류	E501004001	
임금근로 희망 이유	E501005001	
임금근로 희망 이유(기타)	E501005001t	
[임금근로희망]사업내용	E501006001	
[임금근로희망]산업분류	E501006002	
[임금근로희망]업무내용	E501006003	
[임금근로희망]직업분류	E501006004	
[임금근로희망]종사상 지위	E501006005	
[임금근로희망]근무시간 형태	E501006006	
[임금근로희망]시간제 희망 이유	E501006007	
[임금근로희망]시간제 희망 이유(기타)	E501006007t	
[임금근로희망]최소 희망 임금	E501006008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표 3 - 13〉 비경제활동인구(E-⑥)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1	E601001001	중복응답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2	E601001002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3	E601001003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4	E601001004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5	E601001005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6	E601001006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7	E601001007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 방법(기타)	E601001007t	
지난주 일자리 희망 여부	E601002001	
지난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 가능여부	E601002002	
지난 4주 내 일자리 구하지 않은 이유	E601002003	
지난 4주 내 일자리 구하지 않은 이유(기타)	E601002003t	
일자리 있더라도 일 할 수 없었던 이유	E601003001	
일자리 있더라도 일 할 수 없었던 이유(기타)	E601003001t	
2017년 구직활동 여부	E601004001	
마지막 구직활동 연도	E601004002	
마지막 구직활동 월	E601004003	
마지막 구직활동 월(계절)	E601004004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1순위	E601005001	순위응답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1순위(기타)	E601005001t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2순위	E601005002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2순위(기타)	E601005002t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3순위	E601005003	
일자리 알아보는 방법-3순위(기타)	E601005003t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바) 일자리 이력(F)

- 요양종결 이후 현재 일자리 이외의 일자리 이력을 파악함
- 일자리 이력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 시작시기, 그만둔 시기, 사업내용, 업무내용, 종사상 지위, 소득, 근로자 수, 근로시간 형태, 근무일수, 근무시간, 초과근로시간, 노동조합, 사회보험 가입 여부, 퇴직사유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표 3-14>
- 일자리 중 새벽시장, 인력사무소, 인맥(십장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매일 필요에 의해 고용되고 일거리나 일터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 ①일하는 장소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거나, ②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같은 종류의 일자리를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하였다면 1개 일자리로 간주하여 파악함

<표 3 - 14> 일자리 이력(F)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재해사업장 퇴사 여부	F01001001	
재해사업장 처음 그만둔 시기(년)	F01001002	
재해사업장 처음 그만둔 시기(월)	F01001003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	F01001007	
재해사업장 퇴사 이유(기타)	F01001007t	
요양종료 후 현재 일자리 외 일자리 있었는지 여부	F01002001	
요양종료 후 현재 일자리 외 일자리 개수	F01003001	
일자리1-시작 연도	F01003A01	반복문항 (일자리 1 ~ 일자리 10)
일자리1-시작 월	F01003A02	
일자리1-시작 월(계절)	F01003A03	
일자리1-그만둔 연도	F01003A04	
일자리1-그만둔 월	F01003A05	
일자리1-그만둔 월(계절)	F01003A06	
일자리1-사업내용	F01003A07	
일자리1-산업분류	F01003A08	
일자리1-업무내용	F01003A09	
일자리1-직업분류	F01003A10	
일자리1-종사상 지위	F01003A11	
일자리1-임금/소득	F01003A12	
일자리1-임금/소득(범주)	F01003A13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사) 건강과 생활(G)

- 패널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상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삶의 질, 사회적 관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산업재해 전후의 전반적 건강 상태 및 산재이전 평소의 건강 문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성 질병, 일상생활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패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임<표 3-15>

〈표 3 - 15〉 건강과 생활(G) 주요 변수

항 목	변 수 명	비 고
산재 이후 건강회복 정도	G01001001	
산재 이후 통증 느끼는 횟수	G01002001	
산재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	G01003001	
산재 이전 평소 건강상태	G01004001	
산재 이전에 있었던 건강문제1	G01004002	중복응답
산재 이전에 있었던 건강문제2	G01004003	
산재 이전에 있었던 건강문제3	G01004004	
산재 이전에 있었던 건강문제4	G01004005	
산재 이전에 있었던 건강문제5	G01004006	
산재 이전에 있었던 건강문제(기타)	G01004006t	
현재 전반적인 건강상태	G01005001	
건강문제로 인해 일하는데 지장 정도	G01005002	
현재 만성적인 질병 유무	G01006001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아) 개인소득(H)

- 작년 한 해(2017년) 동안 발생한 패널 개인의 근로소득 및 근로 외 소득을 조사함
- 근로소득은 특성상 2017년도 당시 취업자 중에서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변수임
 -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은 급여소득과 상여금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연간 순수익으로 조사됨
 - 근로소득의 경우 지난 1년간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 패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응답받도록 함
- 만약 임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한 항목에서라도 모름/응답 거절을 한 경우에는 범주형 문항을 통해 다시 응답받도록 함<표 3-16>
 - 범주형으로 응답받은 문항은 중간값으로 대체하여 소득의 총계를 계산함
 - 예를 들어, 임금소득에서 모름/응답거절 후 범주형에서 12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을 응답한 경우 중간값인 180만원을 총계를 계산하는데 사용함
 - 단, 60만원 미만이나 3억 6천만원 이상과 같이 중간값이 존재하지 않는 범주는 최소 및 최대값을 사용하여 대체하였음

<표 3 - 16> 개인소득(H) 변수 - 근로소득

항 목	변 수 명	비 고
2017년 개인 근로소득 발생 여부	H01001001	
개인 근로소득-임금소득(금액)	H01002001	
개인 근로소득-임금소득(범주)	H01002002	
개인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	H01002003	
개인 근로소득-사업소득(범주)	H01002004	
개인 근로소득-총계	H01002005	

-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근로 외 소득이 지난 1년 동안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였으며, 1년간 발생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받았음<표 3-17>
- 근로 외 소득 항목 중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장해일시금)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를 생성하였음

- 또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패널이 모름/응답거절 한 경우 범주형 문항으로 재응답받았으며, 총계 변수는 범주형의 중간값(극단범주의 경우,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였음

〈표 3 - 17〉 개인소득(H) 변수 - 근로 외 소득

항 목	변 수 명	비 고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휴업급여)(금액)	H01003001	행정자료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휴업급여)(범주)	H01003002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장해연금)(금액)	H01003003	행정자료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장해연금)(범주)	H01003004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상병보상연금)(금액)	H01003005	행정자료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상병보상연금)(범주)	H01003006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장해일시금)(금액)	H01003007	행정자료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산재보험(장해일시금)(범주)	H01003008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공적연금(연금)(금액)	H01003009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공적연금(연금)(범주)	H01003010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공적연금(일시금)(금액)	H01003011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공적연금(일시금)(범주)	H01003012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금액)	H01003013	
개인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범주)	H01003014	
개인 근로 외 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금액)	H01003015	
개인 근로 외 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범주)	H01003016	
개인 근로 외 소득-재산소득-부동산소득(금액)	H01003017	
개인 근로 외 소득-재산소득-부동산소득(범주)	H01003018	
개인 근로 외 소득-재산소득-그 외 재산소득(금액)	H01003019	
개인 근로 외 소득-재산소득-그 외 재산소득(범주)	H01003020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자) 가구 일반사항(I)

- 가구 일반사항은 패널의 가구원 정보, 패널이 속한 가구의 근로 소득, 근로 외 소득 항목,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하여 조사함<표 3-18~22>
- 근로 외 소득 항목 중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연금, 상병보상연금, 장애일시금)의 경우 개인의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자료로, 조사자료인 가구원의 산재보험급여와 합산하여 산재보험급여 변수를 생성하였음
- 가구소득 및 소비, 자산, 부채 문항도 항목별 모름/응답거절시 범주형을 통해 응답 받도록 하였으며, 범주형 문항에 응답한 경우 중간값으로 대체하여 총계를 계산하였음

<표 3 - 18>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가구원 정보

항 목	변 수 명	비 고
가구원 수	I01001001	
가구원1-성별	I01001A01	반복문항 (가구원 1 ~ 가구원 14)
가구원1-패널과의 관계	I01001A02	
가구원1-연령	I01001A03	
가구원1-최종학력	I01001A04	
가구원1-졸업상태	I01001A05	
가구원1-혼인상태	I01001A06	
가구원1-취업상태	I01001A07	
가구원1-한 달 평균 소득	I01001A08	
가구원1-한 달 평균 소득(범주)	I01001A09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표 3 - 19>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근로소득

항 목	변 수 명	비 고
2017년 가구 근로소득 발생 여부	I01003001	
가구 근로소득-임금소득(금액)	I01003002	
가구 근로소득-임금소득(범주)	I01003003	
가구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	I01003004	
가구 근로소득-사업소득(범주)	I01003005	
가구 근로소득-총계	I01003006	

〈표 3 - 20〉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근로 외 소득

항 목	변 수 명	비 고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휴업급여(금액)	I01004001	행정자료(패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휴업급여(범주)	I01004002	+조사자료(가구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장해연금(금액)	I01004003	행정자료(패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장해연금(범주)	I01004004	+조사자료(가구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상병보상연금(금액)	I01004005	행정자료(패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상병보상연금(범주)	I01004006	+조사자료(가구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유족연금(금액)	I01004007	행정자료(패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유족연금(범주)	I01004008	+조사자료(가구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장해일시금(금액)	I01004009	행정자료(패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장해일시금(범주)	I01004010	+조사자료(가구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유족일시금(금액)	I01004011	행정자료(패널)
가구 근로 외 소득-사회보험 급여-유족일시금(범주)	I01004012	+조사자료(가구원)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표 3 - 21〉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소비

항 목	변 수 명	비 고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식비(금액)	I01005001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식비(범주)	I01005002	
한 달 평균 가구 소비-공교육비(금액)	I01005003	
한 달 평균 가구 소비-공교육비(범주)	I01005004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사교육비(금액)	I01005005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사교육비(범주)	I01005006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금액)	I01005007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범주)	I01005008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주거비(금액)	I01005009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주거비(범주)	I01005010	
한 달 평균 가구 소비-경조사비(금액)	I01005011	
한 달 평균 가구 소비-경조사비(범주)	I01005012	
한 달 평균 가구 소비-보건의료비(금액)	I01005013	
한 달 평균 가구 소비-보건의료비(범주)	I01005014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표 3 - 22〉 가구 일반사항(I) 변수 - 자산과 부채 외

항 목	변 수 명	비 고
금융자산 소유 여부	I01007001	
금융자산(금액)	I01007002	
금융자산(범주)	I01007003	
부동산 자산 또는 기타 자산 소유 여부	I01008001	
부동산 자산 및 기타 자산(금액)	I01008002	
부동산 자산 및 기타 자산(범주)	I01008003	
부동산 소유 여부	I01008004	
부동산 종류1	I01008005	중복응답
부동산 종류2	I01008006	
부동산 종류3	I01008007	
부동산 종류4	I01008008	
부동산 종류5	I01008009	
부동산 종류(기타)	I01008009t	
부동산 시가 총액(금액)	I01008010	
부동산 시가 총액(범주)	I01008011	
부채 유무	I01009001	
부채(금액)	I01009002	
부채(범주)	I01009003	
저축 여부	I01010001	
저축액(금액)	I01010002	
저축액(범주)	I01010003	

※ 그 외 문항은 조사표 참고

2. 데이터 사용 시 참고사항

1) 데이터 구조

- 산재보험패널 데이터의 특성 및 구조는 <표 3-23>과 같음
- ‘기본’영역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공한 변수들로 구성하였음

<표 3 - 23> 데이터 구조

영역	항 목		비고
기본	주요 변수 및 행정데이터 모음		가공영역
A	개인특성		
Ba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상황	1차 조사만 실시
Bb		요양	1차 조사만 실시
Bc		보상	
Bd		재활	
C	재해사업장		1차 조사만 실시
D	현재 경제활동 판별		
E1	현재 경제활동유형	원직장복귀자	
E2		재취업자 (원직장 복귀가 아닌 경우)	
E3		자영업자	
E4		무급가족종사자	
E5		실업자	
E6		비경제활동인구	
F	일자리 이력		
Ga	건강과 생활	산업재해와 건강	1차 조사만 실시
Gb		현재의 건강과 생활	
Gc		삶의 질	
Gd		사회적 관계	
H	개인 소득		
I	가구 일반사항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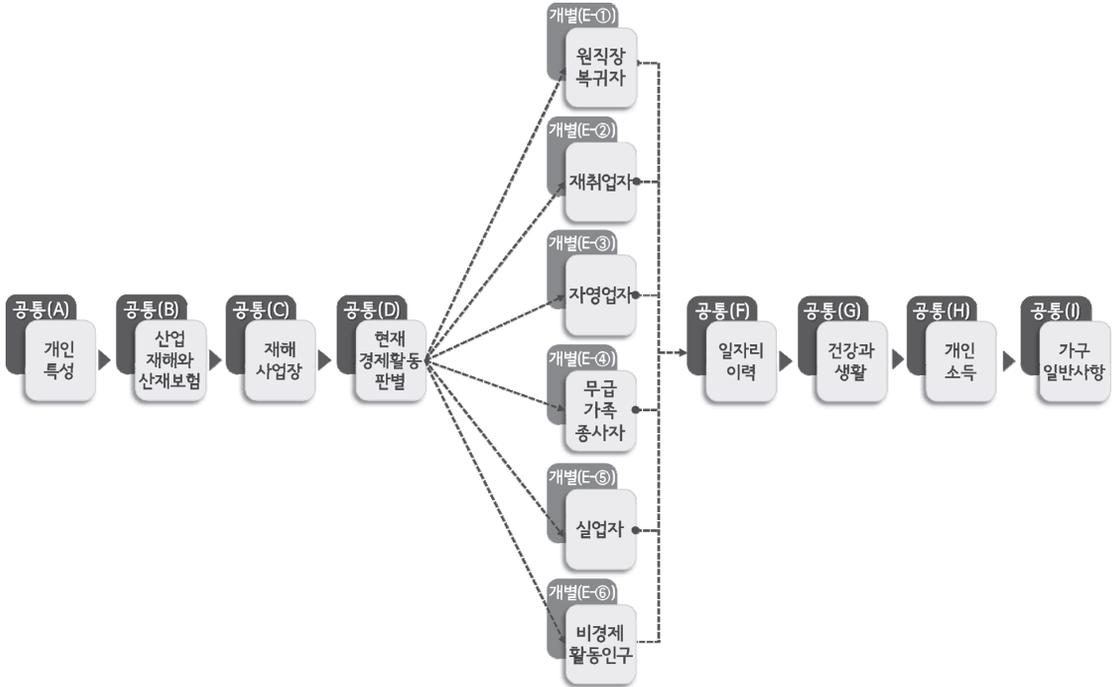
2018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조사표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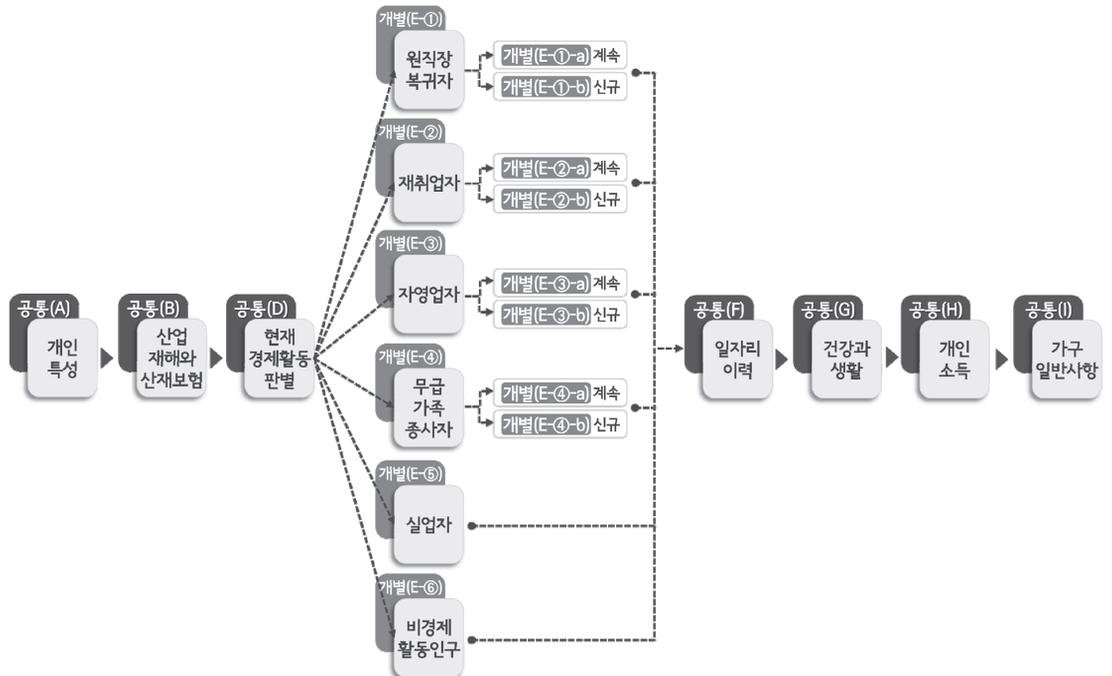
2018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조사표

A. 개인 특성	83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89
Ba. 산업재해 발생 상황	89
Bb. 요양	92
Bc. 보상	94
Bd. 재활	97
C. 재해사업장	102
D. 현재 경제활동 판별	113
E-①. 원직장복귀자	116
E-②. 재취업자(원직장 복귀가 아닌 경우)	133
E-③. 자영업자	150
E-④. 무급가족종사자	163
E-⑤. 실업자	172
E-⑥. 비경제활동인구	177
F. 일자리 이력	183
G. 건강과 생활	189
Ga. 산업재해와 건강	189
Gb. 현재의 건강과 생활	190
Gc. 삶의 질	198
Gd. 사회적 관계	201
H. 개인 소득	203
I. 가구 일반사항	206

1차년도(2018년) 조사표 구조



2~5차년도(2019~2022년) 조사표 구조





--	--	--	--

2018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산재보험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근거법률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439001호)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를 경험하신 분들의 직업복귀와 생활, 건강 등을 파악하고 향후 취업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정확한 응답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이동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주된 응답은 1개만 기입해 주십시오.

주 관 기 관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A. 개인 특성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gender01**)

01	02	03	04	05
----	----	----	----	----

1. 남성
2. 여성

[A2] 조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나이) (**age014**)

01	02	03	04	05
----	----	----	----	----

- | | |
|-----------|-----------|
| 1. 30대 이하 | 3. 50대 |
| 2. 40대 | 4. 60대 이상 |

[A3]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은 몇 급입니까? (2018. 4. 기준) (**disa012, disa016, disa0115**)

장애등급 판정 유무(disa012)	장애등급 범주(disa016)	장애등급(disa0115)
판정을 받았음(1~14급)	1~3급, 4~7급, 8~10급, 11~12급, 13~14급	1~14급, 무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음(무장애)	무장애	

[A4]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2018. 4. 기준) (**area01**)

01	02	03	04	05
----	----	----	----	----

- | | |
|-------------|-------------|
| 1. 서울/강원 | 4. 광주/전라 |
| 2. 경인 | 5. 대구/경북 |
| 3. 충청/세종/대전 | 6. 부산/울산/경남 |

문1) 귀하께서는 최종학교를 어느 과정까지 다니셨습니까? (**A01001001**)

01	02	03	04	05
----	----	----	----	----

1. 무학 → 문2)로 가십시오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초급대, 2년제 및 3년제 포함)
6. 대학교(4년제, 일반대 등)
7. 대학원 석사
8. 대학원 박사

• 졸업여부에 관계없이 재학, 중퇴, 수료, 휴학, 검정고시, 자격취득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응답받습니다.

문1-1) 귀하께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의 졸업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A01001002**)

01	02	03	04	05
----	----	----	----	----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문2) 귀하의 산업재해 발생 당시 혼인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A01002001)

01 02 03 04 05

1. 미혼
2. 혼인
3. 별거
4. 이혼
5. 사별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결혼관계를 말합니다.
- 주말부부이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별거가 아닙니다.
- 조사 시점 이전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2-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A01002002)

01 02 03 04 05

1. 미혼
2. 혼인
3. 별거
4. 이혼
5. 사별

문3) 귀하는 2017년 요양을 종결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장애인 등록을 하였습니까? (A01003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5)로 가십시오

문4) 장애인 등록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문4-1) 장애 유형 A01004001	1. 지체 장애 2. 뇌병변 장애 3. 시각 장애 4. 청각 장애 5. 언어 장애 6. 지적 장애 7. 자폐성 장애 8. 정신 장애 9. 신장 장애 10. 심장 장애 11. 호흡기 장애 12. 간 장애 13. 안면 장애 14. 장루[-]요루 장애 15. 뇌전증 장애
문4-2) 장애 등급 A01004002	()급 • 일반 장애등급은 1~6급입니다.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나올 수 없지만, 중복장애 시 1급 상승 등으로 인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각장애의 경우 '1급'으로 응답 시 다시 확인 -언어장애의 경우 '1, 2, 5, 6급'으로 응답 시 다시 확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4, 5, 6급'으로 응답 시 다시 확인 -신장장애의 경우 '1, 3, 4, 6급'으로 응답 시 다시 확인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4, 6급'으로 응답 시 다시 확인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 6급'으로 응답 시 다시 확인 -뇌전증장애의 경우 '1, 6급'으로 응답 시 다시 확인
문4-3) 장애인 등록 시기 A01004003~5	()년 ()월 [계절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문4-4)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A01004006	1. 이용함 2. 이용하지 않음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을 근거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3급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가사 지원이나 이동 보조기 등의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소득 수준,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됩니다. 단, 노인 장기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생활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1) 문5) 귀하는 국가자격증(기술사,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타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또는 국제(외국)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반 운전면허(2종 보통)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A01005001)

01 02 03 04 05

1. 있다
2. 없다 → 문6)으로 가십시오

《표》 자격증 유형과 종류

자격증 유형		자격증 종류
국가 자 격 증	(1) 기술사	▶ 용접, 조선,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자동차정비,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정보통신,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등 이공계열 ▶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조리, 제빵, 미용사, 세탁 등 ▶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한글속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 비서 등 전문사무 영역의 자격증은 1급일 경우 (4) 산업기사에, 2급, 3급일 경우 (5) 기능사에 해당됨
	(2) 기사	
	(3) 기능장	
	(4)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1급)	
	(5) 기능사(국가기술자격 2급)	
	(6) 기타 국가 자격증	
(7) 민간 자격증	▶ TEPS, 한자능력급수, PC정비사, 인터넷정보관리사, PC활용능력평가시험, 무역영어, 세무회계, 전산 세무회계, 병원행정사, 신용관리사, 수화통역사 등 민간 자격증은 공인, 비공인(민간) 자격증 모두를 포함합니다.	
(8) 국제(외국) 자격증	▶ 일본어 능력시험(JLPT) : 급수를 함께 기재 ▶ TOEIC, TOEFL : 점수를 함께 기재 ▶ 미국공인회계사(AI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선물중개인(AP) 등	

문5-1) 그럼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모두 몇 개입니까? (A01005002)

01 02 03 04 05

■ 자격증 보유 개수 : 개

• 자격증 수의 응답 범위는 1~15개입니다.

※ 아래 문항부터는 자격증의 정보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는, 가장 먼저 취득한 순서대로 응답합니다. 자격증의 종류와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합니다.

문5-2)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A01005A01)

01 02 03 04 05

1. 기술사
2. 기사
3. 기능장
4.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1급)
5. 기능사(국가기술자격 2급)
6. 기타 국가 자격증
7. 민간 자격증
8. 국제(외국) 자격증

문5-3)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01005A02)

01 02 03 04 05

• 자격증의 급수 또는 점수도 함께 기재 합니다.

문5-4) 귀하가 보유한 자격증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A01005A03~5)

01	02	03	04	05
----	----	----	----	----

□	□	□	□	년	□	□	월
---	---	---	---	---	---	---	---

[계절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문5-5) 해당 자격증이 귀하께서 취업(구직)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A01005A06)

01	02	03	04	05
----	----	----	----	----

1. 전혀 도움 안 됨
2. 도움 안 됨
3. 보통
4.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

《표》 자격증 응답표

	자격증 유형	자격증의 종류	취득시기	취업에 도움 정도
①	A01005A01	A01005A02	A01005A03 년 A01005A04 월 A01005A05(계절)	A01005A06
...
⑮	A01005O01	A01005O02	A01005O03 년 A01005O04 월 A01005O05(계절)	A01005O06

문6)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일자리(직장)는 학업을 마친 이후 첫 일자리(직장)입니까? (A01006001)

01	02	03	04	05
----	----	----	----	----

1. 네. 첫 일자리(직장)입니다 → A영역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2. 첫 일자리(직장)가 아닙니다 → 문6-1)로 이동

※ 아래 문항부터는 학업을 마친 이후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자리(직장) 직전까지 종사한 일자리(또는 사업 경력)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일자리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가장 먼저 일하였던 순서대로 응답합니다.

문6-1) 학업을 마친 이후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자리(직장) 직전까지 총 몇 개의 일자리(직장)에 종사하였습니까? (A01006002)

01	02	03	04	05
----	----	----	----	----

_____개

• <일자리>

-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 (직장, 아르바이트 등)
- (2) 내 사업을 하거나 (예: 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업, 임업, 수산업, 행사 및 노점상 등)
-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 <주의>

새벽시장이나 인력사무소, 인백(십장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매일매일 필요에 의해 고용되고 일거리나 일터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 다음 기준으로 일자리를 파악합니다.

- (1) 일하는 장소(○○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합니다.
- (2)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없이 같은 일(건설 현장 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합니다.
- (3)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합니다.

문6-2) 해당 일자리(직장)에 취직한 시기(자영업: 사업장을 운영한 시기)와 그만둔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시작한 시기: 년 월 (A01006A01~3)

그만둔 시기: 년 월 (A01006A04~6)

[계절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문6-3) 당시 일하였던 사업체(또는 운영한 사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사업체였으며, 그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 무엇을 하던 업체였습니까? (자영업자의 경우,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까?) (A01006A07)
- 한국표준산업분류 : _____ (A01006A08)
- 귀하께서 하였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A01006A09)
- 한국표준직업분류 : _____ (A01006A10)

《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직업분류

<p>※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일한 곳의 사업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p>※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하였던 일의 종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	-----------------------------------------------------------------------------------------------------------------------------------------------------------------------------------------------------------------------------------------------------------------------------------------------------

문6-4) 당시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A01006A11)

01 02 03 04 05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상 지위》

-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평소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표》 산업재해 발생 시기까지 일자리 경력 응답표

	시작한 시기	그만둔 시기	사업		업무		종사상 지위
			사업 내용	산업코드	업무내용	직업코드	
①	A01006A01 년 A01006A02 월 A01006A03(계절)	A01006A04 년 A01006A05 월 A01006A06(계절)	A01006A07	A01006A08	A01006A09	A01006A10	A01006A11
...
⑩	A01006J01 년 A01006J02 월 A01006J03(계절)	A01006J04 년 A01006J05 월 A01006J06(계절)	A01006J07	A01006J08	A01006J09	A01006J10	A01006J11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 Ba. 산업재해 발생 상황

[A5] 귀하께서 2017년에 요양을 종결한 산업재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accident01)

01	02	03	04	05
----	----	----	----	----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문1)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까? (B01001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문2)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의료 기관으로 이송할 때 누가 동행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B01002001~4)

01	02	03	04	05
----	----	----	----	----

1. 사업주, 인사 노무 담당 직원
2. 회사 동료
3. 가족
4. 혼자
5. 기타(적을 것 : B01002004t)

•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보기 4번을 제외한 1~3번 및 5번은 복수 응답이 가능합니다.

문2-1) 그렇다면, 이송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B01002005)

01	02	03	04	05
----	----	----	----	----

1. 구급차
2. 회사차량
3. 개인 소유 차량(자가용, 오토바이 등)
4. 대중교통
5. 택시
6. 도보
7. 기타(적을 것: B01002005t)

• 개인 소유 차량이란 사업주, 본인, 동료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문2-2) 이송 시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B01002006)

01	02	03	04	05
----	----	----	----	----

1. 30분 미만
2.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 2시간 이상

문3)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치료를 받은 의료 기관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B01003001)

01 02 03 04 05

1. 본인이 직접 결정하였음
2. 사업주(회사 지정 병원 포함)가 결정하거나 추천하였음
3. 지인 및 동료가 결정하거나 추천하였음
4. 가족이 결정하거나 추천하였음
5. 응급 의료 종사자(119, 앰블런스 등)가 결정하여 이송하였거나 추천하였음

문4) 의료기관 도착 직후 수술을 받았습니까? (B01004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도착 직후란 의료기관 도착 후 24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문5) 귀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요양 및 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누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였습니까? (B01005001)

01 02 03 04 05

1. 본인이 직접 → 문6)으로 가십시오
2. 회사 관계자 → 문6)으로 가십시오
3. 공인 노무사(혹은 변호사) → 문5-1)로 가십시오
4. 가족이나 친구 등 → 문6)으로 가십시오
5. 병원 직원 → 문6)으로 가십시오
6. 기타(적을 것 : B01005001t) → 문6)으로 가십시오

• 공인 노무사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기업 및 개인의 노무 관리에 관한 업무, 상담, 처리 등을 맡아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합니다.

문5-1) 공인 노무사(혹은 변호사)를 선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B01005002)

01 02 03 04 05

1. 요양 신청 전
2. 요양 중
3. 요양 종결 후

• 선임한 공인 노무사(변호사)가 중간에 변동이 되었어도 가장 처음 노무사(변호사)를 선임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5-2) 공인 노무사(혹은 변호사)가 실제로 도움을 준 일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B01005003~8)

01 02 03 04 05

1. 신청 서류 준비
2. 요양 중 행정 처리 대행
3. 장애 보상 관련
4. 회사의 추가 보상금 문제 등
5. 불승인/미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심사, 재심사 청구 등)
6. 기타(적을 것 : B01005008t)
7. 특별히 없음

문6) 산업재해로 요양 중일 때 귀하가 사업장(직장)에서 하던 일은 누가 담당하였습니까? (B01006001)

01	02	03	04	05
----	----	----	----	----

1. 직장 동료, 사업주
2. 신규 인력(정규직) 고용
3. 대체 인력(임시직) 고용
4. 본인이 직접(통원 치료 병행 등의 방법으로)
5. 기타(적을 것 : B01006001t)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 Bb. 요양

※ 다음은 귀하가 경험하신 요양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A6] 다음은 귀하가 경험하신 요양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7년에 요양을 종결한 시기까지의 총 요양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con01)

01 02 03 04 05

1. 3개월 이하
2.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3.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4. 9개월 초과 ~ 1년 이하
5. 1년 초과 ~ 2년 이하
6. 2년 초과

문7) 의사가 다친 부위, 정도, 치료 예상 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까? (B01007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수술 후 의사가 상세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응답합니다.

문8) 귀하는 산재로 인한 치료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01008001)

01 02 03 04 05

1.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
2.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음
3.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에 적절한 기간이었음
4.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음
5.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에 매우 충분한 기간이었음

문9) 산업재해로 발생한 의료비 중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금액(본인부담액)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부담하였습니까? (B01009001)

01 02 03 04 05

1. 본인이 직접 부담
2. 사업주가 부담
3. 민간실비보험으로 부담
4. 기타(적을 것: B01009001t)
5. 비급여 금액이 없었음 → 문10)으로 가십시오

문9-1) 요양기간 동안 비급여 금액(본인부담액)은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B01009002)

01	02	03	04	05
----	----	----	----	----

총 _____ 만원

•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 범주형으로 응답받습니다.

[비급여 금액(본인부담액) 범주] (B01009003)

- | | |
|----------------------|------------------------|
| 1. 30만원 미만 | 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 2. 3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6.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
| 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7. 7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 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문10) 귀하는 요양 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수술, 처방 등 모든 의료행위 포함)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B01010001)

01	02	03	04	05
----	----	----	----	----

1.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험이 있음
2.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험이 없음 → 문11)로 가십시오

문10-1) 그렇다면 몇 번이나 옮기셨습니까? (B01010002)

01	02	03	04	05
----	----	----	----	----

_____ 회

문10-2)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B01010003)

01	02	03	04	05
----	----	----	----	----

1. 수술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2. 전원한 병원이 집에서 가까워서
3.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4. 기존 병원의 치료 등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5. 공단 직원의 안내(권유)에 따라
6. 기타 (적을 것: B01010003t)

• 보기 1 vs. 3 : 치료시점에 따른 차이(보기1: 치료 초기, 보기3: 회복기)
 • 보기 1 vs. 4 : 병원의 의료 질에 따른 차이(보기1: 당시 병원이 의료 질을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보기4: 당시 병원이 의료 질을 개선할 수 있으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재활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 시켜 기능을 회복·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운동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의미합니다.

문11) 귀하는 요양기간 동안 재활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B01011001)

01	02	03	04	05
----	----	----	----	----

1.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음
2. 권유를 받은 경험이 없음

• 재활병원이란 기능을 회복·유지하기 위해 운동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수행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B.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 Bc. 보상

※ 사업주가 제공한 편의 내용 및 추가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2)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과 관련한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B01012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 보상과 관련한 안내를 받은 경험을 응답합니다.

문13) 귀하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었던 기간 동안, 사업주 및 사업장 인사 노무 관련자와 관계(병문안, 전화 통화 등)가 계속 유지되었습니까? (B01013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문14) 귀하가 일하던 사업장(직장)은 다음의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른다
근로자 건강 실비 보험(단체 보험) B01014001	1	2	3
근재 보험(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보험) B01014002	1	2	3

- 근로자 건강 실비 보험(단체 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을 말합니다.
- 근재 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 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문15) 귀하가 일하던 사업장(직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이외의 추가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와 맺은 협약(노조와 합의 등)이 있었습니까? (B01015001)

01	02	03	04	05
----	----	----	----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모른다

• 사업장(직장)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 이외의 추가 보상을 줄 때에 해당됩니다.

문16)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 외에,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보상이나 위로금을 받았습니까? (B01016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17)로 가십시오

•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명목으로 보상을 지급한 후 공단으로부터 대체 지급을 받은 경우도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문16-1)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받은 보상이나 위로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B01016002)

01	02	03	04	05
----	----	----	----	----

_____만원

• 정확한 보상 금액을 모를 경우 범주형으로 응답받습니다.

[보상 금액 범주] (B01016003)

- | | |
|------------------------|--------------------------|
| 1. 50만원 미만 | 5.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 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6. 3,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
| 3.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7. 6,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 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8. 1억 원 이상 |

문17)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 사업주가 귀하를 위해 제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B01017001~5)

01	02	03	04	05
----	----	----	----	----

1. 통원 차량 및 통원 비용 지원
2. 비급여 병원비 부담
3. 임금 지급
4. 사업장이 가입한 단체 상해 보험 지원
5. 기타(적을 것 : B01017005t)
6. 없음

• 문16)에서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보상이나 위로금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면 '6. 없음'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 문16)에서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보상이나 위로금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면 '2, 3, 4번'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문18)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 사업장(직장)이 제공한 편의 내용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B01018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개인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귀하는 현재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B01019001)

01	02	03	04	05
----	----	----	----	----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모르겠다

• 의료실비보험이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으로도 불립니다.

문21) 위의 상담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B01021001)

01 02 03 04 05

1.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2. 사업주나 직장 동료로부터
3.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4. 요양 중 병원 담당자나 의사로부터
5. 요양 중 다른 환자로 부터
6. 각종 매체(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를 통하여
7. 기타(적을 것 : B01021001t)

문22) 치료과정에서 주치의로부터 직업 복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B01022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23)으로 가십시오

문22-1) 주치의 상담에 만족하였습니까? (B01022002)

01 02 03 04 05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23) 귀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소견서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B01023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24)로 가십시오

•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소견서는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재 상병상태, 예전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작업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업복귀 여부 및 직무수행 가능성 등을 작성하여 산재노동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23-1)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작업능력평가 및 직업복귀 소견서가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B01023002)

01 02 03 04 05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도움이 되었다
3. 보통이었다
4.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24) 귀하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까? (B01024001)

01	02	03	04	05
----	----	----	----	----

1. 받아본 경험이 있다
2. 현재 받고 있다
3. 받아본 적이 없다 → 문25)로 가십시오

문24-1) 요양종결 후 현재까지 몇 번의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까? (B01024002)

01	02	03	04	05
----	----	----	----	----

■ _____ 회

※ 아래 문항부터는 교육·훈련 정보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교육·훈련 경험이 2회 이상일 경우는, 가장 먼저 받은 순서대로 응답합니다.

문24-2) 다음 중 어떤 분야의 교육·훈련입니까? (B01024A01)

01	02	03	04	05
----	----	----	----	----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분야 (과수재배, 목재가공, 수산양식 등)
2. 섬유분야 (섬유가공, 편물, 염색, 의복제조, 섬유디자인, 섬유기계 보전 등)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화학제품 제조, 도자기 제조, 위험물 취급 등)
4. 금속분야 (금속가공, 열처리 등)
5. 기계·장비 분야 (기계가공, 선반, 밀링, 조립, 설계·제도, 운전, 용접 등)
6. 건설분야 (토목, 건축, 도배, 미장 등)
7. 전기, 전자 분야 (기계 설비·제어, 조립, 전기공사 등)
8.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DB, 통신설비 운용·수리 등)
9. 서비스 분야 (음식조리, 제빵, 미용기술, 관광 및 숙박서비스 등)
10. 업무관리분야 (재무·경영, 생산사무, 판매사무, 사무지원 등)
11. 의료분야 (물리치료, 간호 등)
12. 운송장비 제조 분야 (자동차, 조선, 항공장비 제조 등)
13. 산업응용분야 (인쇄·출판, 가구 등 디자인 개발, 광학분야 등)
14. 공예분야 (귀금속, 가구, 자수, 도장 등)
15. 금융, 보험 및 환경분야
16. 어학분야
17. 기타(적을 것 : B01024A01t)

문24-3)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받고 있는 경우는 계획된 훈련기간을 응답합니다.) (B01024A02~3)

01	02	03	04	05
----	----	----	----	----

□□ 개월 □□ 일

문24-4) 교육·훈련의 비용을 지원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B01024A04)

01	02	03	04	05
----	----	----	----	----

1. 근로복지공단
2. 근로복지공단 이외의 타 기관
3. 스스로 부담

문28) 귀하께서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B01028001)

01 02 03 04 05

1. 서비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참여 시간대
2. 기관까지의 거리와 이동수단
3. 복잡한 신청 및 이용절차
4. 이용할만한 서비스 부족
5.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6. 불편한 편의시설 및 환경
7. 긴 대기시간
8. 이용대상 선정의 까다로움(장애등급, 소득기준 등)
9. 기타(적을 것 : B01028001t)

문29) 다음은 귀하의 재활서비스 욕구에 대해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응답합니다. (B01029001~10)

01 02 03 04 05

내 용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1. 심리 및 가족 상담 지원	1	2	3	4
2. 일상생활 적응 및 활동 지원(교통, 편의시설 등)	1	2	3	4
3. 재발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합병증 예방 및 운동 등)	1	2	3	4
4. 원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원직장 복귀 의무화 및 대체인력 투입 등)	1	2	3	4
5. 재취업을 위한 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1	2	3	4
6.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현장 훈련 등)	1	2	3	4
7. 창업을 위한 지원(창업 컨설팅, 점포임차비용 등)	1	2	3	4
8. 보조기 관련 지원	1	2	3	4
9. 문화활동 지원	1	2	3	4
10.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1	2	3	4

C. 재해사업장

※ 아래의 질문은 모두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문1) 귀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자리(직장)에 언제 입사하였습니까? (C01001001~2)

01 02 03 04 05

□□□□년 □□월

문2) 귀하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 그 사업체는 무엇을 하는 업체였습니까?
- 한국표준산업분류: _____

C01002001

C01002002

문3) 귀하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주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C01003001)

01 02 03 04 05

상세 서술: _____
(생산제품 검사, 미장, 식당 서빙 등 풀어서 서술)

문3-1) 귀하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주로 하던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였습니까? (C01003002)

01 02 03 04 05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문4) 귀하가 일자리(직장)에서 당시 하던 일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에 해당되었습니까?
(C01004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문5)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귀하의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되었습니까? (C01005001)

01	02	03	04	05
----	----	----	----	----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자영업자 → 문21)로 가십시오

■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자영업자: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문6)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었습니까? (C01006001)

01	02	03	04	05
----	----	----	----	----

1. 전일제
2. 시간제

•전일제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 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시간제 :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문7)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C01007001)

01	02	03	04	05
----	----	----	----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외국계 회사
3.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4. 정부기관
5.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
6. (재단, 사단) 법인단체
7.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8. 시민단체, 종교단체
9. 기타(적을 것 : C01007001t)

• 정부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문8)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주로 일하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C01008001)

01	02	03	04	05
----	----	----	----	----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3. 주로 이동하면서

문9) 귀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그 일자리(직장)에서 교대제로 일하였습니까? (C01009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10)으로 가십시오

문9-1) 그렇다면, 교대제의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C01009002)

01 02 03 04 05

1. 2조 2교대제
2. 3조 3교대제
3. 3조 2교대제
4. 4조 3교대제
5. 4조 2교대제
6. 기타(적을 것 : C01009002t)

문10)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는 주 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C01010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문11)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까? (C01011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12)로 가십시오
3. 모르겠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1) 그렇다면,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까? (C01011002)

01 02 03 04 05

1. 예 → 문12)로 가십시오
2. 아니오

문11-2)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C01011003)

01 02 03 04 05

1. 자격요건이 안돼서
2.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주변(지인)의 만류로
4. 회사의 만류로
5. 기타(적을 것 : C01011003t)

문1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1) 일자리(직장)에서 제공(시행)되었는지, (2)제공되었다면 귀하가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복리후생 항목 I (C01012001~20)	(1) 일자리(직장)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되었다	제공되지 않았다	모름	변수명	받을 수 있었다	받을 수 없었다	변수명
(1) 법정퇴직금	1	2	3	C01012001	1	2	C01012002
(2) 누진퇴직금	1	2	3	C01012003	1	2	C01012004
(3) 유급휴가(경구, 연월차)	1	2	3	C01012005	1	2	C01012006
(4) 생리휴가	1	2	3	C01012007	1	2	C01012008
(5)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1	2	3	C01012009	1	2	C01012010
(6) 병가(상병휴가)	1	2	3	C01012011	1	2	C01012012
(7) 육아휴직	1	2	3	C01012013	1	2	C01012014
(8) 휴업보상	1	2	3	C01012015	1	2	C01012016
(9) 포상휴가	1	2	3	C01012017	1	2	C01012018
(10)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1	2	3	C01012019	1	2	C01012020

복리후생 항목 II (C01012021~46)	(1) 일자리(직장)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되었다	제공되지 않았다	모름	변수명	받을 수 있었다	받을 수 없었다	변수명
(1) 식사비용보조	1	2	3	C01012021	1	2	C01012022
(2) 학비보조	1	2	3	C01012023	1	2	C01012024
(3) 주택마련지원(용자 등)	1	2	3	C01012025	1	2	C01012026
(4)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1	2	3	C01012027	1	2	C01012028
(5) 경조사지원	1	2	3	C01012029	1	2	C01012030
(6) 휴양, 콘도(휴가)비용지원	1	2	3	C01012031	1	2	C01012032
(7) 보육비지원	1	2	3	C01012033	1	2	C01012034
(8) 저축장려금지원	1	2	3	C01012035	1	2	C01012036
(9) 종업원주제도시원	1	2	3	C01012037	1	2	C01012038
(10) 개인연금 보험료지원	1	2	3	C01012039	1	2	C01012040
(11) 생명보험 보험료지원	1	2	3	C01012041	1	2	C01012042
(12) 개인의료-상해보험료지원	1	2	3	C01012043	1	2	C01012044
(13) 상여금(명절비, 휴가비, 선물 등 포함)	1	2	3	C01012045	1	2	C01012046

- 법정퇴직금 : 1년 간 총 근로소득의 한 달 치를 퇴직금으로 받음
- 누진퇴직금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 1~5년 근속은 1년 당 1개월, 5년~10년 근속은 1년 당 2개월 치 산정
→ 누진 퇴직금을 제공받았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응답 받습니다.

문13) 귀하는 산업재해 발생 당시의 일자리(직장)에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C01013001~3)

01 02 03 04 05

(1) 국민연금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 국민건강보험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고용보험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와의 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4) 귀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자리(직장)에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C01014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정년은 '정하지 않았음'에 해당됨) → 문15)로 가십시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닌 소속된 사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를 응답받습니다.
- 고용주(사용자)와 근로기간을 구두로 정한 경우(약속 또는 계약)도 '1. 예(정했음)'에 해당합니다.

문14-1) 당시 정한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였습니까? (C01014002)

01 02 03 04 05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이하
5. 2년 초과~3년 이하
6. 3년 초과

- 현재 기준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당시 사업장(직장)에 고용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14-2)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계약(기간)은 반복 갱신된 것이었습니까? (C01014003)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최초 계약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당시 일하고 있었던 일자리에서의 계약이 반복 갱신된 상태인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당시 고용계약이 처음으로 맺은 것이라면 '2. 아니오'에 해당되고, 주기적으로 반복 또는 갱신된 것이라면 '1. 예'에 해당됩니다.

응답 후 문16)으로 가십시오

문15)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자리(직장)에서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였습니까? (예 :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 (C01015001)

01 02 03 04 05

1. 예 → 문18)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업체의 요청 또는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 행사도우미, 파출부, 건설일용근로자,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아르바이트 사원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단기간에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적정기간 일하기로 명백하게 구두 또는 서류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한 사업체(장소)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도 '1. 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16)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까? (C01016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17)로 가십시오

-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특별히 잘못이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 ① 근무태도 불량 : 무단결근, 직장규율 위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 등
 - ② 범법행위 : 절도, 횡령, 등 업무와 관련 수뢰, 배임 등
 - ③ 경력위조
 - ④ 기타 사업장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

문16-1) “예”(계속 다닐 수 있었음)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C01016002)

01	02	03	04	05
----	----	----	----	----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1 ⇒ 무기계약, 고용계약 사실은 있으나 근로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3 ⇒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직장) 또는 사업체의 내부 규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경우입니다.
-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정년은 있으나 특별히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일반 기업체 정식사원 등도 해당됩니다.

응답 후 문18)로 가십시오

문17) 귀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까? (C01017001)

01	02	03	04	05
----	----	----	----	----

1. 1년 이하(C01017002 개월)
2. 1년 초과~2년 이하
3. 2년 초과

- 개월 수의 응답가능범위는 1~12입니다.
- 15일 미만은 1개월로 기입하고, 이외에는 반올림하여 기입합니다.

문17-1) 귀하가 그렇게 생각하였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C01017003)

01 02 03 04 05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이었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었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당시 하던 업무(프로젝트)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5.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할 것이었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었으므로
8. 당시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당시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적을 것 : C01017003t)

문18) 고용될 때 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C01018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임의 구두계약 제외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 계약서에 준하는 근로계약서 포함

문19) 귀하의 임금(급여)을 당시 일한 일자리(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 (C01019001)

01 02 03 04 05

1. 당시 일한 사업장(직장)
2. 파견업체
3. 용역업체

- 파견업체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본사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 :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원이나 수위 등을 의미합니다.

문20)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귀하의 임금은 다음 중 어떤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까? 가장 주요한 산정방식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C01020001)

01 02 03 04 05

임금 산정 방식	해당 여부 표시 (○)	액 수
1. 연봉제		
2. 월급제		
3. 주급제 / 격주제		
4. 일급제		일당 C01020002 원
5. 시급제		시간당 C01020003 원
6. 실적급제		
7. 기타(적을 것 : C01020001t)		

- 일급제 및 시급제인 경우 응답단위가 “원”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급제 : 임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생산(서비스)량, 실적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형태(업적급, 실적급, 도급제 등)

문21)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의 한 달 평균 임금 또는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C01021001)

01	02	03	04	05
----	----	----	----	----

한 달 평균

--	--	--	--	--

 만원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대상 지침]

-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응답하며, 연봉 응답 시 1/12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 평소 일하는 수준의 임금을 응답받으며, 한 달을 제대로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임금을 물품 등으로 받는 경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임금은 초과근로수당도 포함하며, 0-99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 한 달 평균 임금이 10만 원 미만 또는 1천만 원 이상이면 다시 확인합니다.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자영업자' 대상 지침]

- 한 달 평균 소득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 연간소득을 응답 시 1/12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0-99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문22) 귀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한 달 평균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씩 근무하였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

C01022001

 일
- 하루 평균 근무시간 :

C01022002

 시간

['공통 지침]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시휴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쉬 경우 등은 일이 있을 때의 통상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합니다.
-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응답받습니다.
- 한 달 평균근무일수는 1-31까지 가능하며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1-24까지 가능합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인 경우 실 근무일수를 응답합니다.(취업 당일 사고인 경우 근무일 1일 응답)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대상 지침]

- 초과근로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일, 총근로 시간입니다.
- ▶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자영업자' 대상 지침]

- 실제적으로 해당 사업체 운영과 관련되어 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보낸 시간이 합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농업에만 종사하는 계절적인 자영업자는 농번기 등 성수기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사업체를 2곳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문23) 귀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였습니까? (C01023001)

01	02	03	04	05
----	----	----	----	----

- 1. 예
- 2. 아니오 → 문24)로 가십시오

- 초과근로시간이란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정규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사업장(직장)과 문서상 또는 암묵적으로 계약한 근로시간, 관습에 의해 정해진 노동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사일에서 해뜰 때부터 해질 때 까지 등)
- ▶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응답받습니다.

문23-1) 그림 귀하의 평소 초과근로시간은 당시에 1주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또 한 달 평균 초과근로 수당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01 02 03 04 05

- 1주 평균 초과근로 시간 :

C01023002

 시간
- 한 달 평균 초과근로 수당 :

C01023003

 만원

- 초과근로시간은 1-168까지 응답가능합니다.
-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0-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84시간이 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응답받습니다.

문24)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직장)의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했을 때 당시 전체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그룹사의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C01024001)

01 02 03 04 05

1. 5인 미만
2. 5~9인
3. 10~19인
4. 20~29인
5. 30~99인
6. 100~299인
7. 300~999인
8. 1,000인 이상

- 사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5인 미만으로 응답합니다.
- 일용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모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파견업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를 응답 받습니다.

문25) 귀하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실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C01025001)

01 02 03 04 05

1. 5인 미만
2. 5~9인
3. 10~19인
4. 20~29인
5. 30~99인
6. 100~299인
7. 300~999인
8. 1,000인 이상

- 사업장은 본사나 개별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의미합니다.
- 일용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모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함께 파견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응답받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의 근로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6) 귀하가 일을 하실 당시에 아래와 같은 요인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습니까? (C01026001~9)

01 02 03 04 05

문항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 노출 안 됨	절대 노출 안 됨
1.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1	2	3	4	5	6	7
2.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1	2	3	4	5	6	7
3. 일하지 않을 때조차 맘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1	2	3	4	5	6	7
4.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1	2	3	4	5	6	7
5. 연기, 흙(용접 흙 또는 배기가스), 가루나 먼지(목 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1	2	3	4	5	6	7
6. 시너와 같은 유기 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1	2	3	4	5	6	7
7. 화학 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	1	2	3	4	5	6	7
8.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1	2	3	4	5	6	7
9. 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함	1	2	3	4	5	6	7

문27) 귀하가 일을 할 당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C01027001~11)

01 02 03 04 05

문항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 노출 안 됨	절대 노출 안 됨
1.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1	2	3	4	5	6	7
2.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	1	2	3	4	5	6	7
3.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	1	2	3	4	5	6	7
4. 계속 서 있는 자세	1	2	3	4	5	6	7
5. 앉아 있음	1	2	3	4	5	6	7
6.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1	2	3	4	5	6	7
7.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함	1	2	3	4	5	6	7
8.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 학생을 다룸	1	2	3	4	5	6	7
9.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작업	1	2	3	4	5	6	7
10. 업무를 위해 인터넷/전자 우편(이메일)을 사용함	1	2	3	4	5	6	7
11.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임	1	2	3	4	5	6	7

문28) 귀하는 일을 하실 당시에 업무상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를 착용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까?
(C01028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29)로 가십시오

문28-1) 귀하는 개인 보호구가 필요할 때 항상 착용하였습니까? (C01028002)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문29)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당시 귀하는 유독성 물질에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까? (C01029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3.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았음



D. 현재 경제활동 판별

※'지난주'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주(일요일 ~ 토요일)를 의미합니다.

문1)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습니까? (D01001001)

01	02	03	04	05
----	----	----	----	----

- 1. 예 → 문3)으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자신이 임금을 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윤을 얻기 위해 일했던 사람은 '1. 예'에 해당됨
- 자가사용 또는 자가소비만을 위한 일은 '2. 아니오'에 해당됨 (예 : 자기집 짓기, 텃밭 가꾸기 등)

문1-1) 지난 1주일 동안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했습니까? (D01001002)

01	02	03	04	05
----	----	----	----	----

- 1. 일을 한 적이 있었다 → 문3)으로 가십시오
- 2.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문2)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D01002001)

01	02	03	04	05
----	----	----	----	----

- 1.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문5)로 가십시오
- 2. 가지고 있었다

• 재요양 중이며 고용 상태인 경우에는 2번으로 응답받습니다.

문2-1)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D01002002)

01	02	03	04	05
----	----	----	----	----

- 1. 산업재해의 후유증 및 재요양 때문에
- 2. 산업재해 이외의 일시적 병 혹은 사고 때문에
- 3. 휴가나 교육 중이어서
- 4. 집안 일(경조사, 이사, 가사 및 육아 등) 때문에
- 5. 노사분규 때문에
- 6. 사업부진·조업중단 때문에
- 7. 일기불순(날씨가 나빠서)
- 8. 일감이 없어서
- 9. 기타(적을 것 : D01002002t) → 문5)로 가십시오

문3) 그렇다면, 귀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D01003001)

01 02 03 04 05

1. 타인, 또는 사업장(직장)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문3-1)로 가십시오
2.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 영역 E-③ 자영업자로 가십시오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 문4)로 가십시오

•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해야 합니다. 혈연가족이라 할지라도 밥값, 용돈 등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친인척을 돕는다고 해서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문3-1) 이 일자리(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D01003002)

01 02 03 04 05

1.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다니던 일자리(직장)에 다니고 있다
→ 영역 E-① 원직장복귀자로 가십시오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당시 다니던 일자리(직장)를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직장)에 다니고 있다
→ 영역 E-② 재취업자로 가십시오

• 2017년에 요양 종결한 산업재해를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문4) 가족(친척)의 일을 돕는 시간이 1주일 평균 약 18시간(하루에 3~4시간) 이상입니까? (D01004001)

01 02 03 04 05

1. 18시간 이상이다 → 영역 E-④ 무급가족종사자로 가십시오
2. 18시간 미만이다

문5)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D01005001)

01 02 03 04 05

1. 구해보았다 → 문7)로 가십시오
2. 구해보지 않았다

• 조사 전 1주일 기준으로 응답 받습니다.

문6) 지난 4주 이내에 한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D01006001)

01 02 03 04 05

1. 구해보았다 → 문7)로 가십시오
2. 구해보지 않았다 → 영역 E-⑥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십시오

문7) 지난주에 알맞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D01007001)

01	02	03	04	05
----	----	----	----	----

- 1. 일할 수 있었다 → 영역 E-⑤ 실업자로 가십시오
- 2. 일할 수 없었다 → 영역 E-⑥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십시오

[S1]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상태는 ()입니다.

01	02	03	04	05
----	----	----	----	----

1. 확인

《표》 경제활동상태 응답표

경제활동상태 (2개 구분) emp012	경제활동상태 (3개 구분) emp013	경제활동상태 (6개 구분) emp016
취업자	취업자	원직장복귀자, 재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E-①. 원직장복귀자

문1) 귀하께서 이 직장으로 복귀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E101001001~3)

01 02 03 04 05

□□□□년 □□월

[계절 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귀하의 요양종료일은 2017년 ○○월입니다.

문2) 요양종료 후 바로 복귀한 것입니까? (E101002001)

01 02 03 04 05

1. 예 → 문3)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문2-1)로 가십시오
3. 요양 중에 원직 복귀 → 문2-3)으로 가십시오

- 요양종결 이후 1개월 이내 복귀한 경우는 1에 응답 합니다.
- 요양 중에 원직 복귀는 일자리(직장)에 복귀하여 통원 치료 등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문2-1) 요양종료 후 복귀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E101002002~3)

01 02 03 04 05

□□□□년 □□개월

문2-2) 요양이 종결된 후 곧바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02004)

01 02 03 04 05

1. 복귀 전 일시적인 휴식을 위해
2.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3. 기타(적을 것 : E101002004t)

▶ 응답 후 문3)으로 가십시오.

문2-3) 요양이 종결되기 전 사업장으로 복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02005)

01	02	03	04	05
----	----	----	----	----

1. 사업장(사업주)의 요청 때문에
2. 상병 및 장애가 경미하여 취업 치료가 가능하여
3. 경제적인 이유(생활비가 필요해서, 산재보상 금액이 적어서 등)
4. 해고 등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5. 업무의 특성상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수행하기 어려워서
6. 기타(적을 것 : E101002005t)

문3) 'C.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주로 하던 일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변화가 있습니까? (E101003001)

01	02	03	04	05
----	----	----	----	----

1. 변화없음 → 문4)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문3-1) 그렇다면,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E101003002)

01	02	03	04	05
----	----	----	----	----

상세 서술: _____
(생산제품 검사, 미장, 식당 서빙 등 풀어서 서술)

문3-2)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03003)

01	02	03	04	05
----	----	----	----	----

1. 재해 이후 정신적·육체적 어려움
2. 사업주의 지시 및 배려
3. 사업장의 경영 및 조직관리상의 이유
4. 본인의 자발적 요청
5. 기타(적을 것 : E101003003t)

문4) 'C.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직업종류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직업의 종류에 변화가 있습니까? (E101004001)

01	02	03	04	05
----	----	----	----	----

1. 변화없음 → 문5)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문4-1) 그렇다면, 현재 하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E101004002)

01	02	03	04	05
----	----	----	----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문5) 귀하의 이 일자리(직장)에 현재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E101005001)

01 02 03 04 05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문6) 귀하가 원직장 복귀 직후에 하였던 일과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E101006001)

01 02 03 04 05

1. 변화없음 → 문7)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 문3)은 산업재해당시 업무와 현재 업무와의 비교, 본 문항은 원직장 복귀 직후 업무와 현재 업무의 변화 여부입니다.

문6-1) 원직장 복귀 직후 하였던 일과 현재 주로 하는 일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06002)

01 02 03 04 05

1. 재해 이후 정신적·육체적 어려움
2. 사업주의 지시 및 배려
3. 사업장의 경영 및 조직 관리상의 이유
4. 본인의 자발적 요청
5. 기타(적을 것 : E101006002t)

문7) 귀하께서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다고 생각합니까? (E101007001)

01 02 03 04 05

1. 매우 적응하였다
2. 적응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응하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적응하지 못하였다

문8) 원직장 복귀 후 업무에 적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E101008001)

01 02 03 04 05

1.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
2. 산업재해 후 자신감 결여
3. 기존 개인적 질환 등 건강 문제
4. 생소한 업무
5. 새로운 조직 분위기
6. 본인의 직무 능력 부족
7. 관리자 및 동료의 관심 및 배려 부족
8. 기타(적을 것 : E101008001t)
9. 장애요인 없이 잘 적응하고 있음

문9) C.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근로시간 형태에 변화가 있습니까? (E101009001)

01	02	03	04	05
----	----	----	----	----

1. 변화없음 → 문10)으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 산업재해 발생 당시와, 현재 원직장으로 복귀한 이후 근로시간 형태의 비교입니다.

문9-1) 그렇다면, 현재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101009002)

01	02	03	04	05
----	----	----	----	----

1. 전일제
 2. 시간제

• 전일제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 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문10) 'C.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사업장(직장) 전체 근로자 수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소속 사업장(직장) 전체 근로자 수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E101010001)

01	02	03	04	05
----	----	----	----	----

1. 변화없음 → 문11)으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문10-1) 원직장 복귀 후 현재 귀하의 사업장(직장)의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했을 때 전체 근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그룹사의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E101010002)

01	02	03	04	05
----	----	----	----	----

1. 5인 미만
 2. 5~9인
 3. 10~19인
 4. 20~29인
 5. 30~99인
 6. 100~299인
 7. 300~999인
 8. 1,000인 이상

• 응답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5인 미만으로 응답받습니다.
 • 일용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모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파견업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응답받습니다.

문11) 'C.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가 실제 근무하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변화가 있습니까? (E101011001)

01	02	03	04	05
----	----	----	----	----

1. 변화없음 → 문12)으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문11-1) 그렇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E101011002)

01	02	03	04	05
----	----	----	----	----

1. 5인 미만
2. 5~9인
3. 10~19인
4. 20~29인
5. 30~99인
6. 100~299인
7. 300~999인
8. 1,000인 이상

- 사업장은 본사나 개별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의미합니다.
- 일용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모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응답받습니다.

문12) 'C. 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E101012001)

01	02	03	04	05
----	----	----	----	----

1. 변화없음 → 문13)으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문12-1) 그렇다면, 현재 일자리(직장)에서 한 달 평균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초과 근로일, 초과 근로시간 포함)

01	02	03	04	05
----	----	----	----	----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E101012002 :

--	--

 일
- 하루 평균 근무시간 E101012003 :

--	--

 시간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시휴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쉴 경우 등은 일이 있을 때의 통상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합니다.
- 초과근로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일, 총근로시간입니다.
-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응답받습니다.
- 한 달 평균근무일수는 1-31까지 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1-24까지 가능합니다.
- ▶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6) 귀하의 임금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정됩니까? (E101016001)

01 02 03 04 05

임금 산정 방식	해당 여부표시 (○)	금 액
1. 연봉제		
2. 월급제		
3. 주급제 / 격주제		
4. 일급제		일당 E101016002원
5. 시급제		시간당 E101016003원
6. 실적급제		
7. 기타(적을 것 : E101016001t)		

- 매달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액이 연봉계약에 의해 1년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에 해당합니다.
- 급여가 월 단위로 정해져 지급되는 경우는 월급제에 해당합니다.
- 매달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가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면 시간제에 해당합니다.
- 일당제 및 시급제는 “원” 단위로 응답합니다.
- 실적급제 : 임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생산(서비스)량,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는 형태(업적급, 실적급, 도급제 등)에 해당합니다.

문17) 현재 귀하의 한 달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초과근로수당 포함) (E101017001)

01 02 03 04 05

한 달 평균 만원

- 임금은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응답하며, 연봉 응답 시 1/12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 평소 일하는 수준의 임금을 응답받으며, 한 달을 제대로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임금을 물품 등으로 받는 경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임금은 초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 0-99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 한 달 평균 임금이 10만원 미만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8) 'C. 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있는지 여부)라고 말씀하셨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으로 복귀한 현재 시점에서, 위 사항 중 한 가지라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E101018001)

01 02 03 04 05

1. 변화없음 → 문19)으로 가십시오
2. 변화있음

문18-1) 귀하의 현재 일자리(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E101018002)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19)로 가십시오
3. 모르겠다 → 문19)로 가십시오

문18-2) 그렇다면, 귀하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E101018003)

01 02 03 04 05

- 1. 예 → 문19)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문18-3)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18004)

01 02 03 04 05

- 1. 자격요건이 안돼서
- 2. 필요성을 못 느껴서
- 3. 주변(지인)의 만류로
- 4. 회사의 만류로
- 5. 기타(적을 것 : E101018004t)

문19) 'C. 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산업재해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제공되는 부가급여나 복리후생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사업장의 제공되는 복리후생 종류 및 혜택여부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E101019001)

01 02 03 04 05

- 1. 변화없음 → 문20)으로 가십시오
- 2. 변화있음

문19-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1) 귀하의 일자리(직장)에서 제공(시행)되는지, (2) 제공된다면 귀하께서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복리후생 항목 I	(1) 일자리(직장)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변수명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변수명
(1) 법정퇴직금	1	2	3	E101019002	1	2	E101019003
(2) 누진퇴직금	1	2	3	E101019004	1	2	E101019005
(3) 유급휴가(정규, 연월차)	1	2	3	E101019006	1	2	E101019007
(4) 생리휴가	1	2	3	E101019008	1	2	E101019009
(5)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1	2	3	E101019010	1	2	E101019011
(6) 병가(상병휴가)	1	2	3	E101019012	1	2	E101019013
(7) 육아휴직	1	2	3	E101019014	1	2	E101019015
(8) 휴업보상	1	2	3	E101019016	1	2	E101019017
(9) 포상휴가	1	2	3	E101019018	1	2	E101019019
(10)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1	2	3	E101019020	1	2	E101019021

- 법정퇴직금 : 1년간 총 근로소득의 한 달 치를 퇴직금으로 받음
- 누진퇴직금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 1~5년 근속은 1년당 1개월, 5년~10년 근속은 1년당 2개월치 산정
→ 누진 퇴직금을 제공받았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응답 받습니다.

문20) 앞서 응답하신 항목 외, 'C. 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산업재해 당시 일자리(직장)에서 제공되는 부가급여나 복리후생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사업장의 제공되는 복리후생 종류 및 혜택여부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E101020001)

01 02 03 04 05

- 1. 변화없음 → 문21)로 가십시오
- 2. 변화있음

문20-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1) 귀하의 일자리(직장)에서 제공(시행)되는지, (2) 제공된다면 귀하께서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복지후생 항목 II	(1) 일자리(직장)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변수명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변수명
(1) 식소비용보조	1	2	3	E101020002	1	2	E101020003
(2) 학비보조	1	2	3	E101020004	1	2	E101020005
(3) 주택마련지원 (용자 등)	1	2	3	E101020006	1	2	E101020007
(4)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1	2	3	E101020008	1	2	E101020009
(5) 경조사지원	1	2	3	E101020010	1	2	E101020011
(6) 휴양, 콘도(휴가)비용지원	1	2	3	E101020012	1	2	E101020013
(7) 보육비지원	1	2	3	E101020014	1	2	E101020015
(8) 저축장려금지원	1	2	3	E101020016	1	2	E101020017
(9) 종업원지주제도지원	1	2	3	E101020018	1	2	E101020019
(10) 개인연금 보험료지원	1	2	3	E101020020	1	2	E101020021
(11) 생명보험 보험료지원	1	2	3	E101020022	1	2	E101020023
(12) 개인의료-상해보험료지원	1	2	3	E101020024	1	2	E101020025
(13) 상여금(명절비, 휴가비, 선물 등 포함)	1	2	3	E101020026	1	2	E101020027

문21) 'C. 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산업재해 당시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사업장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까? (E101021001)

01 02 03 04 05

1. 변화가 없다 → 문22)로 가십시오
2. 변화가 있다

문21-1) 귀하는 일자리(직장)에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01 02 03 04 05

(1) 국민연금 E101021002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2) 국민건강보험 E101021003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고용보험 E101021004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문22) 'C. 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는 주로 ()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직장 복귀 후 현재 일하는 장소가 변경되었습니까? (E101022001)

01 02 03 04 05

1. 변화가 없다 → 문23)으로 가십시오
2. 변화가 있다

문22-1) 귀하는 현재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일하십니까? (E101022002)

01 02 03 04 05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3. 주로 이동하면서

※ 현재 소속된 일자리(직장)와의 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23)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직장)에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E101023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정년제인 경우 '아니오'에 해당됨) → 문24)로 가십시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닌 소속된 (파견)사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를 응답받습니다.
- 고용주(사용자)와 근로기간을 구두로 정한 경우(약속 또는 계약)도 '1. 예'에 해당합니다.

문23-1) 그렇다면, 고용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E101023002)

01	02	03	04	05
----	----	----	----	----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이하
5. 2년 초과~3년 이하
6. 3년 초과

- 현재 기준이 아닌 이 일자리에 고용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23-2)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현재의 계약(기간)은 연장 또는 갱신된 상태입니까? (E101023003)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현재 처음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2. 아니오'에 해당하며, 주기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된 것이라면 '1. 예'에 해당됩니다.

응답 후 문25)로 가십시오

문24)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일자리(직장)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예 :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 (E101024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 문27)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업체의 요청 또는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 행사도우미, 파출부, 건설 일용근로자,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아르바이트 사원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단기간에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적정기간 일하기로 명백하게 구두 또는 서류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한 사업체(장소)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도 '1. 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25) 만약 특별한 사유(폐업 또는 고용조정,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귀하가 원한다면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E101025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26)으로 가십시오

- 특별한 사유란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본인의 귀책사유 등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 ① 근무태도 불량 : 무단결근, 직장규율 위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 등
- ② 범법행위 : 절도, 횡령, 등 업무와 관련 수뢰·배임 등
- ③ 경력위조
- ④ 기타 사업장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

문25-1) “예”(계속 다닐 수 있음)로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25002)

01 02 03 04 05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1 ⇒ 무기계약, 고용계약 사실은 있으나 근로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3 ⇒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회사 또는 사업체의 내부 규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경우입니다.
 - 공무원(계약직 제외) 및 교원(임시교사, 기간제 교사 제외) 임용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정년은 있으나 특별히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일반 기업체 정식사원 등도 해당됩니다.

응답 후 문27)로 가십시오

문26) 귀하는 현재 일자리(직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E101026001)

01 02 03 04 05

1. 1년 이하(개월) E101026002
2. 1년 초과~2년 이하
3. 2년 초과

- 15일 미만은 1개월로 기입하고, 이외에는 반올림하여 응답받습니다.

문26-1) 귀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26003)

01 02 03 04 05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 적성, 근로조건, 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8. 규정, 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9. 학업, 가족부양, 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적을 것 : E101026003t)

문27) 임금(급여)을 현 일자리(직장)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습니까? (E101027001)

01	02	03	04	05
----	----	----	----	----

1. 현재 일하는 직장
2. 파견업체
3. 용역업체

- 파견업체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본사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 :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예를 들어, 청소원이나 수위 등을 의미합니다.

문28) 귀하께서 현재 하는 일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에 해당합니까? (E101028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문29) 요양종결 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까? (E101029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임의 구두계약 제외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 계약서에 준하는 근로계약서 포함

문30)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다음의 프로그램 중 원직장 복귀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E101030001)

01	02	03	04	05
----	----	----	----	----

1. 심리상담
2. 사회적응 프로그램
3.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상담(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와의 관계 개선 등)
4. 직업훈련
5.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6. 대체인력지원제도
7. 기타(적을 것 : E101030001t)
8. 없음

문31) 귀하가 원직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나 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E101031001~6)

01	02	03	04	05
----	----	----	----	----

1.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2. 사업주
3. 동료근로자
4. 본인
5. 근로복지공단 직원
6. 기타(적을 것 : E101031006t)

문32)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101032001)

01	02	03	04	05
----	----	----	----	----

1. 직업훈련
2. 직장복귀 지원금
3. 취업 정보 제공
4. 기술 습득 기간 동안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용자
5. 전문가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등 실시
6. 사업주와의 지속적 면담
7. 기타(적을 것 : E101032001t)
8. 없음

문33) 귀하의 원직장 복귀에 대해서, 사업주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101033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적극적이었다
2. 적극적인 편이었다
3. 보통이었다
4.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5.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문34) 원직장 복귀 후 직무의 강도와 난이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E101034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약해짐
2. 약해짐
3. 동일함
4. 높아짐
5. 매우 높아짐

문35) 귀하는 산업재해 이후에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E101035001)

01	02	03	04	05
----	----	----	----	----

1.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 문36)으로 가십시오
2.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 문36)으로 가십시오
3. 보통 → 문36)으로 가십시오
4.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5.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문35-1) 그렇다면,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E101035002~8)

01	02	03	04	05
----	----	----	----	----

1. 오랜만에 일을 하려고 하니 낯설어서 적응하기 힘들었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로 인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었다
3. 장애가 있는 나를 배려하는 회사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힘들었다
4. 임금 등 근무조건이 재해 이전에 비해 나빠져서 힘들었다
5. 사업주나 관리자와의 갈등
6. 직장 동료와의 갈등
7. 기타(적을 것 : E101035008t)

문36) 귀하가 원직장으로 복귀한 이후, 사업장(사업주) 차원에서 현재까지 제공한 편의사항이 있으면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E101036001~8)

01	02	03	04	05
----	----	----	----	----

1. 작업장 개조
2. 별도수당 등 금전적 지원
3. 작업시간 단축
4. 직무능력향상 교육기회 제공
5. 근무시간 내 병원진료 허용
6. 회사 내 편의시설 설치
7. 업무조정 및 전환
8. 기타(적을 것 : E101036008t)
9. 없음

문37) 원직장으로 복귀하신 이후, 현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E101037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원만하다
2. 어느 정도 원만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원만하지 못하다
5. 전혀 원만하지 못하다

문37-1) 원직장으로 복귀하신 이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산업재해 발생 전과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E101037002)

01	02	03	04	05
----	----	----	----	----

1. 예전보다 매우 원만해졌다
2. 예전보다 원만해진 편이다
3. 예전과 동일하다
4. 예전보다 다소 나빠졌다
5. 예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문38) 원직장으로 복귀하신 이후, 현재 직장동료들이 귀하를 배려합니까? (E101038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배려해준다
2. 배려해주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5.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다

※ 현재 일자리(직장) 및 업무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문39) 귀하는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101039001	1	2	3	4	5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101039002	1	2	3	4	5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은,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E101039003	1	2	3	4	5

문40) 현재 귀하께서 주로 하시는(맡고 계시는) 일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
시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현재 하시는 일(업무, 직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E101040001	1	2	3	4	5
②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E101040002	1	2	3	4	5
③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E101040003	1	2	3	4	5
④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E101040004	1	2	3	4	5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E101040005	1	2	3	4	5

문41)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임금 또는 소득 E101041001	1	2	3	4	5
② 취업의 안정성 E101041002	1	2	3	4	5
③ 하고 있는 일의 내용 E101041003	1	2	3	4	5
④ 근로환경 E101041004	1	2	3	4	5
⑤ 근로시간 E101041005	1	2	3	4	5
⑥ 개인의 발전가능성 E101041006	1	2	3	4	5
⑦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E101041007	1	2	3	4	5
⑧ 인사고과의 공정성 E101041008	1	2	3	4	5
⑨ 복지후생 E101041009	1	2	3	4	5

문41-1) 그렇다면,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101041010)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한다

문42)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직장)를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E101042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문42-1) 현재 일자리(직장)를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101042002)

01	02	03	04	05
----	----	----	----	----

1.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저하, 적응문제, 갈등, 후유증 등으로 인해
2.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3. 정리해고로 인해
4. 권고사직
5. 명예퇴직
6. 정년퇴직
7. 계약기간이 끝나서
8.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9.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0.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11.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12.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3.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14. 결혼,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
15.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6.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7. 회사가 이사하여서(전근·발령을 받아서)
18.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19. 학업 때문에
20. 군입대 때문에
21.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22. 출산, 육아를 위해
23. 기타(적을 것 : E101042002t)

문42-2) 현재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면 임금근로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자영업(사업)을 원하십니까? (E101042003)

01	02	03	04	05
----	----	----	----	----

1. 임금근로
2. 자영업(사업)
3.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문42-3) 그럼, 귀하는 다른 일자리(직장)로 옮기기 위해 구직활동 이외의 정보수집, 훈련, 교육 등 취업/창업 준비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주로 준비하고 있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101042004~5)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	--	-----	--

1. 공공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2. 민간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3. 재학 중인 학교의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 이용
4. 사설학원 이용(어학, 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등)
5.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 전수
6. 선배, 지인, 사업인계자로부터 기술 전수
7. 회사(프랜차이즈 본사 포함)로부터 직접 기술 전수
8. 독학(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9.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10. 기타(적을 것 : E101042004t, E101042005t)
11.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음

-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1순위에서 '11.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응답하는 경우 2순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문4) 귀하가 이 일자리(직장)에 취업하시게 된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E201004001)

01 02 03 04 05

1. 공공기관의 취업알선(온라인 사이트 포함)
2. 민간기관의 취업알선(온라인 사이트 포함)
3. 학교의 소개 및 추천
4.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추천
5.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
6.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의 소개나 추천
7. TV, 라디오, 신문, 취업정보지 등의 구직광고를 통해
8. 직접 사업체 방문
9. 전 일자리에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0. 기타(적을 것 : E201004001t)

문5) 귀하는 이 일자리(직장)에 어떤 채용방법을 통해 입사하셨습니까? (E201005001)

01 02 03 04 05

1. 공개채용
2. 특별채용
3. 장애인구분모집
4. 기타(적을 것 : E201005001t)
5. 별도의 채용과정이 없었음(지인, 직업소개소 등의 소개)

- 공개채용 : 자격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하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공개된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신규채용의 방법입니다.
- 특별채용 :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채용하는 방법, 스카우트 포함합니다.
- 장애인구분모집 : 신규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에서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한 경우에도 '3.장애인구분모집'으로 응답합니다.
- 별도의 채용과정이 없었음 : 농림어업이나 채용과정이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에 근무할 경우입니다.
예)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해서 슈퍼마켓이나 작은 상점에 점원으로 채용된 경우

문6) 원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타 사업장에 취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201006001)

01 02 03 04 05

1.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2. 업무시간, 환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3. 사업을 물려받게 되어서
4.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성공할 것 같아서)
5.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6. 원직장에서 퇴사해서
7. 이 일자리(직장)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8.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9.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0.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11.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2. 산재 장애 또는 일반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없어서
13. 기타(적을 것 : E201006001t)

문7) 'C.재해사업장' 설문에서 귀하의 주로 하던 일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취업 후 현재 주로 하는 일과 동일합니까? (E201007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 문8)로 가십시오
2. 아니오

문7-1) 귀하께서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E201007002)

01	02	03	04	05
----	----	----	----	----

상세 서술: _____
(생산제품 검사, 미장, 식당 서빙 등 풀어서 서술)

문7-2) 귀하께서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201007003)

01	02	03	04	05
----	----	----	----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문8) 귀하의 이 일자리(직장)에 현재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E201008001)

01	02	03	04	05
----	----	----	----	----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상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임시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문9) 현재 하는 일(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다고 생각합니까? (E201009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적응하였다
2. 적응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응하지 못한 편이다
5. 전혀 적응하지 못하였다

문9-1) 현재 하는 일(업무)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E201009002)

01 02 03 04 05

1. 산업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
2. 산업 재해 후 자신감 결여
3. 기존 개인적 질환 등 건강 문제
4. 생소한 업무
5. 새로운 조직 분위기
6. 본인의 직무 능력 부족
7. 관리자 및 동료의 관심 및 배려 부족
8. 기타(적을 것 : E201009002t)
9. 장애요인 없이 잘 적응하고 있음

문10) 현재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201010001)

01 02 03 04 05

1. 전일제
2. 시간제

- 전일제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문11) 귀하의 일자리(직장)의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했을 때 전체 근로자는 현재 모두 몇 명입니까? (그룹사의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만 응답해 주십시오.) (E201011001)

01 02 03 04 05

1. 5인 미만
2. 5~9인
3. 10~19인
4. 20~29인
5. 30~99인
6. 100~299인
7. 300~999인
8. 1,000인 이상

- 응답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5인 미만으로 응답합니다.
- 일용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모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파견업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응답받습니다.

문12) 귀하가 실제 근무하고 계신 일자리(직장)의 근로자는 현재 모두 몇 명입니까? (E201012001)

01 02 03 04 05

1. 5인 미만
2. 5~9인
3. 10~19인

- 4. 20~29인
- 5. 30~99인
- 6. 100~299인
- 7. 300~999인
- 8. 1,000인 이상

- 사업장(직장)은 본사나 개별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의미합니다.
- 일용직이나 농림어업에 종사하여 정확한 근로자 수를 모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를 기재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응답받습니다.

문13) 귀하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E201013001)

01	02	03	04	05
----	----	----	----	----

- 1. 민간 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계 회사
- 3. 정부 외 공공기관(정부투자, 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위탁기관, 자회사, 재출연기관 등)
- 4.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5.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
- 6. (재단, 사단)법인단체
- 7.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8. 시민단체, 종교단체
- 9. 기타(적을 것 : E201013001t)

문14) 귀하는 일자리(직장)에서 한 달 평균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 (초과 근로일, 초과 근로시간 포함)

01	02	03	04	05
----	----	----	----	----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E201014001 :

일

■ 하루 평균 근무시간 E201014002 :

시간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시휴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쉴 경우 등은 일이 있을 때의 통상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합니다.
- 초과근로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총근로일, 총근로시간입니다.
-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응답받습니다.
- 한 달 평균근무일수는 1~31까지 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1~24까지 가능합니다.
- ▶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5) 귀하는 일자리(직장)에서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십니까? (E201015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16)으로 가십시오

• 초과근로시간이란 정규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정규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일자리(직장)와 문서상 또는 암묵적으로 계약한 근로시간, 관습에 의해 정해진 노동시간을 의미합니다.
 (예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사일에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등)

문15-1) 그럼 귀하의 평소 초과근로시간은 1주 평균 몇 시간입니까? 또 한 달 평균 초과근로 수당은 어느 정도입니까?

01	02	03	04	05
----	----	----	----	----

■ 1주 평균 초과근로 시간 E201015002 :

시간

■ 한 달 평균 초과근로 수당 E201015003 :

만원

• 초과근로시간은 1~168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0~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84시간이 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6) 귀하는 이 직장에서 교대제로 일하십니까? (E201016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17)로 가십시오

문16-1) 교대제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E201016002)

01	02	03	04	05
----	----	----	----	----

1. 2조 2교대제
2. 3조 3교대제
3. 3조 2교대제
4. 4조 3교대제
5. 4조 2교대제
6. 기타(적을 것 : E201016002t)

문17) 이 직장에서는 주 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E201017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문18) 귀하의 임금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정됩니까? (E201018001)

01 02 03 04 05

임금 산정 방식	해당 여부표시 (○)	금 액
1. 연봉제		
2. 월급제		
3. 주급제 / 격주제		
4. 일급제		일당 E201018002원
5. 시급제		시간당 E201018003원
6. 실적급제		
7. 기타(적을 것: E201018001t)		

- 매달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액이 연봉계약에 의해 1년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에 해당합니다.
- 급여가 월 단위로 정해져 지급되는 경우는 월급제에 해당합니다.
- 매달 정해진 날에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가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면 시간제에 해당합니다.
- 일당제 및 시간급제는 “원” 단위로 응답합니다.
- 실적급제 : 임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생산(서비스)량,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는 형태(업적급, 실적급, 도급제 등)에 해당합니다.

문19) 귀하의 현재 한 달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초과근로수당 포함) (E201019001)

01 02 03 04 05

한 달 평균 만원

-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응답하며, 연봉 응답 시 1/12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 평소 일하는 수준의 임금을 응답받으며, 한 달을 제대로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임금을 물품 등으로 받는 경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임금은 초과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 0-99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 한 달 평균 임금이 10만원 미만 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20) 귀하의 일자리(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E201020001)

01 02 03 04 05

- 예
- 아니오 → 문21)로 가십시오
- 모르겠다 → 문21)로 가십시오

문20-1) 그렇다면,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E201020002)

01 02 03 04 05

- 예 → 문21)로 가십시오
- 아니오

문20-2)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201020003)

01 02 03 04 05

1. 자격요건이 안돼서
2.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주변(지인)의 만류로
4. 회사의 만류로
5. 기타(적을 것 : E201020003t)

문2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1) 귀하의 직장에서 제공(시행)되는지, (2) 제공된다면 귀하께서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복리후생 항목 I	(1) 일자리(직장)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변수명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변수명
(1) 법정퇴직금	1	2	3	<u>E201021001</u>	1	2	<u>E201021002</u>
(2) 누진퇴직금	1	2	3	<u>E201021003</u>	1	2	<u>E201021004</u>
(3) 유급휴가(경규, 연월차)	1	2	3	<u>E201021005</u>	1	2	<u>E201021006</u>
(4) 생리휴가	1	2	3	<u>E201021007</u>	1	2	<u>E201021008</u>
(5)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1	2	3	<u>E201021009</u>	1	2	<u>E201021010</u>
(6) 병가(상명휴가)	1	2	3	<u>E201021011</u>	1	2	<u>E201021012</u>
(7) 육아휴직	1	2	3	<u>E201021013</u>	1	2	<u>E201021014</u>
(8) 휴업보상	1	2	3	<u>E201021015</u>	1	2	<u>E201021016</u>
(9) 포상휴가	1	2	3	<u>E201021017</u>	1	2	<u>E201021018</u>
(10)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1	2	3	<u>E201021019</u>	1	2	<u>E201021020</u>

복리후생 항목 II	(1) 일자리(직장)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변수명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변수명
(1) 식사비용보조	1	2	3	<u>E201021021</u>	1	2	<u>E201021022</u>
(2) 학비보조	1	2	3	<u>E201021023</u>	1	2	<u>E201021024</u>
(3) 주택마련지원(융자 등)	1	2	3	<u>E201021025</u>	1	2	<u>E201021026</u>
(4)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1	2	3	<u>E201021027</u>	1	2	<u>E201021028</u>
(5) 경조사지원	1	2	3	<u>E201021029</u>	1	2	<u>E201021030</u>
(6) 휴양, 콘도(휴가)비용지원	1	2	3	<u>E201021031</u>	1	2	<u>E201021032</u>
(7) 보육비지원	1	2	3	<u>E201021033</u>	1	2	<u>E201021034</u>
(8) 저축장려금지원	1	2	3	<u>E201021035</u>	1	2	<u>E201021036</u>
(9) 종업원지주제도지원	1	2	3	<u>E201021037</u>	1	2	<u>E201021038</u>
(10) 개인연금 보험료지원	1	2	3	<u>E201021039</u>	1	2	<u>E201021040</u>
(11) 생명보험 보험료지원	1	2	3	<u>E201021041</u>	1	2	<u>E201021042</u>
(12) 개인의료·상해보험료지원	1	2	3	<u>E201021043</u>	1	2	<u>E201021044</u>
(13) 상여금(명절비, 휴가비, 선물 등 포함)	1	2	3	<u>E201021045</u>	1	2	<u>E201021046</u>

- 법정퇴직금 : 1년 간 총 근로소득의 한 달 치를 퇴직금으로 받음
- 누진퇴직금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 1~5년 근속은 1년 당 1개월, 5년~10년 근속은 1년 당 2개월 치 산정
→ 누진 퇴직금을 제공받았다면, 법정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응답 받습니다.

문22) 귀하는 이 일자리(직장)에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01 02 03 04 05

(1) 국민연금	<u>E201022001</u>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2) 국민건강보험	<u>E201022002</u>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고용보험	<u>E201022003</u>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문23) 귀하는 현재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일하십니까? (E201023001)

01 02 03 04 05

1. 가정에서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3. 주로 이동하면서

- 파출부,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보기 2에 해당됩니다.

※ 현재 일자리(직장)의 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24)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직장)에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셨습니까? (E201024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정년은 '정하지 않았음'에 해당됨) → 문25)로 가십시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가 아닌 소속된 사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를 응답받습니다.
- 고용주(사용자)와 근로기간을 구두로 정한 경우(약속 또는 계약)도 '1. 정했음'에 해당합니다.
- 정년은 있으나 특별히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일반 기업체 정직원, 공무원, 교사 등은 '2. 정하지 않았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통상 파출부, 건설일용직 등 호출, 대기 관련 일용직은 근로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며칠,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근로기간을 구두상, 문서상으로 정하고 일하는 일용직도 존재합니다.

문24-1) 고용될 때 정한 고용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E201024002)

01 02 03 04 05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이하
5. 2년 초과~3년 이하
6. 3년 초과

- 현재 기준이 아닌 이 일자리에 고용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24-2)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현재의 계약(기간)은 연장 또는 갱신된 상태입니까? (E201024003)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최초 계약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 현재 처음으로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2. 아니오'에 해당하며, 주기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된 것이라면 '1. 예'에 해당합니다.

응답 후 문26)으로 가십시오

문25)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일자리(직장)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예 :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 (E201025001)

01 02 03 04 05

1. 예 → 문28)로 가십시오
2. 아니오

- 업체의 요청 또는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간병인, 행사도우미, 파출부, 건설일용근로자,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아르바이트 사원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단기간에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적정기간 일하기로 명백하게 구두 또는 서류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한 사업체(장소)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도 '1. 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26) 만약 특별한 사유(폐업 또는 고용조정,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귀하가 원한다면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E201026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27)로 가십시오

- 특별한 사유란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본인의 귀책사유 등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 ① 근무태도 불량 : 무단결근, 직장규율 위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 등
 - ② 범법행위 : 절도, 횡령, 등 업무와 관련 수뢰·배임 등
 - ③ 경력위조
 - ④ 기타 사업장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

문26-1) “예”(계속 다닐 수 있음)로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E201026002)

01	02	03	04	05
----	----	----	----	----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1⇒ 무기계약, 고용계약 사실은 있으나 근로기간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3⇒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회사 또는 사업체의 내부 규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경우입니다.
 - 공무원(계약직 제외) 및 교원(임시교사, 기간제 교사 제외) 임용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정년은 있으나 특별히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일반 기업체 정직원 등도 해당됩니다.

응답 후 문28)로 가십시오

문27) 귀하는 현재 이 일자리(직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십니까? (E201027001)

01	02	03	04	05
----	----	----	----	----

1. 1년 이하(개월) E201027002
2. 1년 초과~2년 이하
3. 2년 초과

- 개월 수의 응답가능범위는 1~12입니다.
- 15일 미만은 1개월로 기입하고, 이외에는 반올림하여 기입합니다.

문27-1) 귀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201027003)

01 02 03 04 05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목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선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적을 것 : E201027003t)

문28) 임금(급여)을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받으십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으십니까? (E201028001)

01 02 03 04 05

1. 현재 일하는 직장
2. 파견업체
3. 용역업체

- 파견업체 :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을 나갔다가 다시 본사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 :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예를 들어, 청소원이나 수위 등을 의미합니다.

문29) 귀하께서 현재 하는 일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에 해당합니까? (E201029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문30) 고용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E201030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임의 구두계약 제외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 계약서에 준하는 근로계약서 포함

문31)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다음의 프로그램 중 재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E201031001)

01	02	03	04	05
----	----	----	----	----

1. 심리상담
2. 사회적응 프로그램
3.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상담(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와의 관계 개선 등)
4. 직업훈련
5.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6. 대체인력지원제도
7. 기타(적을 것 : E201031001t)
8. 없음

문32) 귀하가 다시 취업하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사람이나 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E201032001~6)

01	02	03	04	05
----	----	----	----	----

1.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2. 사업주
3. 동료근로자
4. 본인
5. 근로복지공단 직원
6. 기타(적을 것 : E201032006t)

문33) 산업재해 당시 직무와 비교할 때, 현재 직무의 강도와 난이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E201033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약해짐
2. 약해짐
3. 동일함
4. 높아짐
5. 매우 높아짐

문34) 귀하는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E201034001)

01	02	03	04	05
----	----	----	----	----

1.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 문35)로 가십시오
2.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 문35)로 가십시오
3. 보통 → 문35)로 가십시오
4.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5.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문34-1) 그렇다면, 재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E201034002~8)

01	02	03	04	05
----	----	----	----	----

1. 오랜만에 일을 하려고 하니 낮설어서 적응하기 힘들었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로 인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었다
3. 장애가 있는 나를 배려하는 회사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힘들었다
4. 임금 등 근무조건이 재해이전에 비해 나빠져서 힘들었다
5. 사업주나 관리자와의 갈등
6. 직장 동료와의 갈등
7. 기타(적을 것 : E201034008t)

문35) 귀하가 현재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사업주) 차원에서 현재까지 제공한 편의사항이 있으면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E201035001~8)

01	02	03	04	05
----	----	----	----	----

1. 작업장 개조
2. 별도수당 등 금전적 지원
3. 작업시간 단축
4. 직무능력향상 교육기회 제공
5. 근무시간 내 병원진료 허용
6. 회사 내 편의시설 설치
7. 업무조정 및 전환
8. 기타(적을 것 : E201035008t)
9. 없음

문36) 현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E201036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원만하다
2. 어느 정도 원만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원만하지 못하다
5. 전혀 원만하지 못하다

문36-1) 현재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산업재해 발생 당시 근무하던 직장과의 비교할 때 어떠합니까? (E201036002)

01	02	03	04	05
----	----	----	----	----

1. 예전보다 매우 원만해졌다
2. 예전보다 원만해진 편이다
3. 예전과 동일하다
4. 예전보다 다소 나빠졌다
5. 예전보다 매우 나빠졌다

문37) 재취업하신 이후, 현재 직장동료들이 귀하를 배려합니까? (E201037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배려해준다
2. 배려해주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5.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다

※ 현재 일자리(직장) 및 업무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문38) 귀하는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201038001	1	2	3	4	5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201038002	1	2	3	4	5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은,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E201038003	1	2	3	4	5

문39) 현재 귀하께서 주로 하시는(맡고 계시는) 일에 대한 본인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현재 하시는 일(업무, 직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E201039001	1	2	3	4	5
②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E201039002	1	2	3	4	5
③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E201039003	1	2	3	4	5
④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E201039004	1	2	3	4	5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E201039005	1	2	3	4	5

문40)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임금 또는 소득 E201040001	1	2	3	4	5
② 취업의 안정성 E201040002	1	2	3	4	5
③ 하고 있는 일의 내용 E201040003	1	2	3	4	5
④ 근로환경 E201040004	1	2	3	4	5
⑤ 근로시간 E201040005	1	2	3	4	5
⑥ 개인의 발전가능성 E201040006	1	2	3	4	5
⑦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E201040007	1	2	3	4	5
⑧ 인사고과의 공정성 E201040008	1	2	3	4	5
⑨ 복지후생 E201040009	1	2	3	4	5

문40-1) 그렇다면,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201040010)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한다

문41)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직장)를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E201041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문41-1) 귀하께서 현재 일자리(직장)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201041002)

01	02	03	04	05
----	----	----	----	----

1.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저하, 적응문제, 갈등, 후유증 등으로 인해
2.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3. 정리해고로 인해
4. 권고사직
5. 명예퇴직
6. 정년퇴직
7. 계약기간이 끝나서
8.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9.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0.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11.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12.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3.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14. 결혼,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로
15.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6.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7. 회사가 이사하여서(전근·발령을 받아서)
18.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19. 학업 때문에
20. 군입대 때문에
21.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22. 출산, 육아를 위해
23. 기타(적을 것 : E201041002t)

문41-2) 현재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면 임금근로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자영업(사업)을 원하십니까? (E201041003)

01	02	03	04	05
----	----	----	----	----

1. 임금근로
2. 자영업(사업)
3.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문41-3) 그럼, 귀하는 다른 일자리(직장)로 옮기기 위해 구직활동 이외의 정보수집, 훈련, 교육 등 취업/창업 준비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주로 준비하고 있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201041004~5)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	--	-----	--

1. 공공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2. 민간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3. 재학 중인 학교의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 이용
4. 사설학원 이용(어학, 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등)
5.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 전수
6. 선배, 지인, 사업인계자로부터 기술 전수
7. 회사(프랜차이즈 본사 포함)로부터 직접 기술 전수
8. 독학(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9.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10. 기타(적을 것 : E201041004t, E201041005t)
11.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음

- ▶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1순위에서 '11.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응답하는 경우 2순위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E-③. 자영업자

※ 귀하가 이 일자리(사업체)를 창업(시작)하신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체)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체명과 소재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 2017년 요양을 종결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체입니까? E301001001 1. 예 2. 아니오
- 귀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직장)는 사업체명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그럼 사업체명은 무엇입니까? _____
- 그 사업체는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E301001002
- 한국표준산업분류: _____ E301001003
- 이 일자리(직장)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구(시/군) 동(읍/면)
- 귀하께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E301001004
- 한국표준직업분류: E301001005

문2) 귀하가 현재의 사업체를 시작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업일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301002001~3)

01 02 03 04 05

- [] 년 [] 월

[계절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간 시점을 창업일로 응답받습니다.
- ▶ 창업시점이 생년월 이전일 수는 없습니다.
- ▶ 창업시점이 현 조사일 이후일 수는 없습니다.

문3) 귀하가 현재의 사업체를 시작한 주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E301003001)

01 02 03 04 05

1.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2. 업무시간, 환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3. 사업을 물려받게 되어서
4.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성공할 것 같아서)
5.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6.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7. 이 사업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8.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9.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0.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11.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2.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없어서
13. 기타(적을 것 : E301003001t)

문4)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사업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E301004001)

01	02	03	04	05
----	----	----	----	----

1. 가족, 친지,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음
2. 기존에 운영되던 것을 인수하였음
3.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였음(동업 포함)
4. 기존 사업에 동업으로 참여하였음(일정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참여하였음)
5. 기타(적을 것 : E301004001t)

문5) 귀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창업활동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E301005001)

01	02	03	04	05
----	----	----	----	----

- | | |
|------------------|----------------|
| 1. 3개월 미만 | 4. 1년 이상 2년 미만 |
|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5. 2년 이상 3년 미만 |
| 3.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 3년 이상 |

• 창업활동이란 사업계획서 수립, 영업장소 탐색이나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자문 및 컨설팅, 재배할 품종 선택, 가축 구입, 어선 구입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6) 귀하가 현재의 사업체를 시작하는 데 소요된 초기투자비용은 모두 어느 정도나 됩니까? (E301006001~2)

01	02	03	04	05
----	----	----	----	----

	만원
--	----

[범주 보기]

- | | |
|-------------------|---------------------|
| 1. 100만 원 미만 | 5. 1,000~5,000만원 미만 |
| 2. 100~300만원 미만 | 6. 5,000~1억원 미만 |
| 3. 300~500만원 미만 | 7. 1억원~3억원 미만 |
| 4. 500~1,000만원 미만 | 8. 3억원 이상 |

• 초기투자비용에는 부동산 비용, 시설비, 상품값 또는 원료비, 인건비, 홍보비, 권리금, 프랜차이즈 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 사업체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물려받을 당시의 자산가를 응답받아 기입합니다.
 • 0-999,999까지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 범주형으로 응답합니다.
 • 공단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문7) 그렇다면, 문6)에서 말씀하신 초기투자비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 마련하셨습니까? 또한 경로별로 마련한 비용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분담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물려받은 경우에는 물려받은 주체를 선택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	----	----	----	----

- | | | | | |
|---------------------------|---|------|---|------------|
| 1. 본인 | 약 | □□□□ | % | E301007001 |
| 2. 가족 및 친지 | 약 | □□□□ | % | E301007002 |
| 3. 정부지원금 및 용자 | 약 | □□□□ | % | E301007003 |
| 4.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 약 | □□□□ | % | E301007004 |
| 5. 금융권 대출 및 용자 | 약 | □□□□ | % | E301007005 |
| 6. 사채 | 약 | □□□□ | % | E301007006 |
| 7. 기타(적을 것 : E301007007t) | 약 | □□□□ | % | E301007007 |

• 분담비율의 경우 0~100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문8) 귀하는 창업 전에 교육, 훈련 등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다음 중 주로 준비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301008001~2)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	--	-----	--

1.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 이용
2.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타 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3. 민간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4. 재학 중인 학교의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 이용
5. 사설학원 이용(어학, 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등)
6.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 전수
7. 선배, 지인 등으로부터 기술 전수
8. 회사로부터 직접 기술 전수
9. 독학(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10. 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11. 기타(적을 것 : E301008001t, E301008002t)
12.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음

- 창업준비활동이란 구체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창업을 하기 위한 정보수집, 직업훈련,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학원수강, 독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1순위에서 '12.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음'을 응답하는 경우 2순위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문9) 귀하가 창업활동 시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사항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301009001~2)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	--	-----	--

1. 신체기능의 제한
2. 이동능력의 제한
3. 의사소통의 제한
4.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5. 창업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육아, 가사 등)
6. 산재로 인한 장애 또는 일반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7.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음
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9. 기타(적을 것 : E301009001t, E301009002t)
10. 특별히 없었음

- 순수하게 개인 측면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습니다.
- ▶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1순위에서 '10. 특별히 없었음'을 응답하는 경우 2순위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문10) 귀하가 순전히 사업체 창업과 관련하여 겪었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사항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301010001~2)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	-----

1. 창업정보 확보의 어려움
2.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
3. 기술 확보의 어려움
4. 인력 확보의 어려움
5. 창업지원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6.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려움
7. 업종선정의 어려움
8. 사업장 위치 선정의 어려움
9. 기타(적을 것 : E301010001t, E301010002t)
10. 특별히 없었음

- ▶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1순위에서 '10. 특별히 없었음'을 응답하는 경우 2순위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 현재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 사업체는 어떤 종류입니까? (E301011001)

01	02	03	04	05
----	----	----	----	----

1. 개인사업체(노점)
2. 개인사업체(노점 외)
3. 개인사업체(농림어업)
4. 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 등)
5. 비영리법인/회사이외의 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6. 비법인단체(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및 암자, 전문가협회 등)
7. 기타 (적을 것 : E301011001t)

문11-1) □□□ 사업체의 종업원 수(유급+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자 본인은 제외합니다.)

01	02	03	04	05
----	----	----	----	----

1. 전체 종업원 수 E301011002 명
2. 유급종업원 수 E301011003 명
3. 무급가족종사자 수 E301011004 명

- 혼자서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종업원 수는 0명입니다.
-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 중 무급으로 사업을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종업원 수에는 무급가족종사자는 포함하나 무급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체 종업원 수는 0-99999까지 응답가능하며, 유급종업원 수,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0-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 유급종업원 수와 무급가족종사자 수를 더한 값이 전체 종업원 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 ▶ 전체 종업원 수가 1보다 큰데, 유급종업원, 무급가족종사자 수의 합이 0일 수 없습니다.

문11-2) □□□ 사업체의 매출 및 수익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창업 후 일년이 안 된 경우 해당기간 매출액 총액을 응답)

01 02 03 04 05

1. 연평균 매출액(판매액): 만원 E301011005~6
2. 연평균 순수익 : ① 순수익이 있음 ② 적자로 순수익이 없음 E301011007
 순수익 : 만원 E301011008~9
 적자금액 : 만원 E301011010~11
3. 현재 부채 총액 : 만원 E301011012~13

[매출액 및 수익규모 부채 범주]

- | | | |
|--------------|------------------|------------------|
| 1. 100만원 미만 | 4. 500~999만원 | 7. 1억원~2억9,999만원 |
| 2. 100~299만원 | 5. 1,000~4,999만원 | 8. 3억원~9억9,999만원 |
| 3. 300~499만원 | 6. 5,000~9,999만원 | 9. 10억원 이상 |

- 매출 및 수익규모는 연평균 기준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 정확한 매출 및 수익액수 등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범주형 보기를 통해 응답을 유도합니다.
- 매출액(판매액)이란 조사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판매하는 물품(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 순수익이란 매출액에서 총비용(재료비와 인건비-본인의 인건비는 제외하지 않음, 세금, 영업비용 등의 전반적인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매출액, 순수익, 부채는 0-999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모름/응답거절 가능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 또는 10억 이상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연간 순수익이 1억원 이상 손익 또는 순익을 보고 있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순수익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적자인 경우 적자금액이 매출액 보다 클 수 있습니다.

문11-3) □□□ 사업체는 몇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선 - 척, 차량 - 대) (E301011014)

01 02 03 04 05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6. 6개 이상
7. 없음

- 사업장에는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농지, 축사나 목장, 양식업장, 노점(가판점), 차량, 어선 등이 다 포함됩니다.

문11-4) □□□ 사업체의 사업장 형태 및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 또는 평' 중에서 하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동일한 형태의 사업장을 여러 개 보유 시 합친 크기로 응답) (E301011015~29)(E301011030~43)

01 02 03 04 05

1. 노점(가판 포함)
2. 차량
3. 점포(㎡ 또는 평)
4. 사무실(㎡ 또는 평)
5. 공장(㎡ 또는 평)
6. 창고(㎡ 또는 평)
7. 인터넷
8. 무점포(방문사업, 우편 등을 통한 사업)
9. 농지, 임야(㎡ 또는 평)
10. 어선
11. 축사나 목장(㎡ 또는 평)
12. 양식업장(㎡ 또는 평)
13. 나의 집 또는 남의 집
14. 야외 작업현장
15. 기타(적을 것 : E301011029)

- 동일한 형태의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진 경우 크기의 응답은 그 사업장들을 합친 크기로 응답합니다.
- 여러 형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복수응답이 가능합니다.
- 면적의 응답가능 범위는 1-99999까지입니다.

문11-5) □□□ 사업체는 동업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동업자는 몇 명입니까? (E301011044)

01 02 03 04 05

1. 예 → (동업자 수: 명) E301011045
2. 아니오

- 동업자 수의 응답가능 범위는 1~99까지입니다.

문11-6) □□□ 사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E301011046)

01 02 03 04 05

1. 가입
2. 미가입

※ 현재 이 사업체에서의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2) 현재 귀하의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301012001)

01 02 03 04 05

1.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일
2.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일(분석, 대화 등)

문13) 귀하의 업무 또는 사업체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E301013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문14) 현재 귀하의 업무 또는 일자리(사업체)는 계절, 행사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입니까? (예: 농림어업 등)
(E301014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날씨 등 기후의 문제, 경기가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15) 현재 주로 일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E301015001)

01	02	03	04	05
----	----	----	----	----

1. 가정에서
2.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3. 주로 이동하면서

※ 현재 이 사업체에서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6) 현재 이 사업체에서 귀하의 정규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E301016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 시 ~ 시 E301016002, E301016003
2. 아니오

• 24시간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예)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6시~18시
• 근로시간의 응답범위는 0-24까지입니다.

문17) 정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귀하는 평소 이 사업체에서 한 달 평균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

01	02	03	04	05
----	----	----	----	----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 일 E301017001
- 하루 평균 근무시간 : 시간 E301017002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시휴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쉬 경우 등은 일이 있을 때의 통상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합니다.
•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응답받습니다.
•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1~31까지 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4까지 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8) 귀하는 현재 이 사업체에서 지난달 본인의 건강(장애, 질병, 치료, 산재 재요양 등)으로 인해 며칠이나 결근하셨습니까?
(E301018001)

01	02	03	04	05
----	----	----	----	----

- 지난달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한 결근일수 : 일

•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였더라도 본인이 장애,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일로 산정합니다.
• 지난달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결근일수는 0~31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문19) 귀하가 현재의 사업체를 시작한 이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까? (도달하였다면)그렇다면, 사업 개시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E301019001)

01	02	03	04	05
----	----	----	----	----

1. 도달했음(사업개시 후

--	--	--

 개월 이내) E301019002
2. 도달하지 못했음

-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창업을 위해 투자된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 손익분기점 도달시기의 경우 1~999까지 응답가능합니다.
- ▶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20) 귀하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사항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301020001~2)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	--	-----	--

1. 만성적인 적자 또는 소득이 적음
2. 창업 시 부채
3. 인력관리(종업원 등)의 어려움
4. 기술개발의 어려움
5. 컨설팅 및 자문의 부족
6.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려움
7. 협력업체와의 업무협력
8. 고객과의 관계형성
9. 기타(적을 것 : E301020001t, E301020002t)
10. 특별히 없음

- 순수하게 사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습니다.
- ▶ 1순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며,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문21) 귀하는 현재의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원하십니까? (E301021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 문22)로 가십시오
2. 아니오

문21-1) 현재의 사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301021002~3)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	--	-----	--

1.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상태의 악화
2. 일반 장애 및 건강상태의 악화
3. 만성적인 적자 또는 소득이 적음
4.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5. 임금근로로 취업하기 위해
6.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7. 적성, 흥미, 전공에 맞지 않음
8. 개인적 사유 발생(휴식, 학업, 육아, 가사 등)
9. 기타(적을 것 : E301021002t, E301021003t)
10. 특별히 없음

▶ 1순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며,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하며 '10. 특별히 없음'은 2순위에서만 응답 가능합니다.

문21-2) 귀하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E301021004)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구직등록이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 마음가짐으로만 구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영업주인 경우(농림어업 경영주 포함), 사업계획서 수립, 영업장소 탐색이나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 자문 및 컨설팅, 재배할 품종 선택, 가축 구입, 어선 구입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21-3) 현재 사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면 임금근로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자영업(사업)을 원하십니까? (E301021005)

01 02 03 04 05

1. 임금근로
2. 자영업(사업)
3.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 문22)로 가십시오

문21-4) 그럼, 귀하는 다른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구직활동 이외의 정보수집, 훈련, 교육 등 취업/창업 준비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주로 준비하고 있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301021006~7)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	--	-----	--

1. 공공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2. 민간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3. 재학 중인 학교의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 이용
4. 사설학원 이용(어학, 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등)
5.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 전수
6. 선배, 지인, 사업인계자로부터 기술 전수
7. 회사(프랜차이즈 본사 포함)로부터 직접 기술 전수
8. 독학(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9.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10. 기타(적을 것 : E301021006t, E301021007t)
11.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음

- 취업준비활동이란 구체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정보수집, 직업훈련,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학원수강, 독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사일 전 4주를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1순위에서 '11. 특별히 없음'을 응답하는 경우 2순위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문22) 귀하는 창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E301022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23)으로 가십시오

- 컨설팅이란 창업에 필요한 자문 및 조언을 전문가관 혹은 관련기관에서 조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22-1) 그렇다면, 귀하는 어떠한 내용의 컨설팅을 받으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E301022002~14)

01	02	03	04	05
----	----	----	----	----

1. 사업화절차 및 요령에 대하여
2. 사업의 타당성(시장성,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여부
3. 상권, 입지분석(농림어업 경영 장소 탐색 포함)
4. 업종, 업태 선정 및 변경
5. 상품, 품종(농림어업의 경우)의 선정 및 변경
6. 기술력 증진(음식의 맛, 농작물 재배방법 등 포함)
7. 상품 개발 및 변경(농림어업 등 품종 개량 포함)
8. 영업(홍보)전략 및 방법(농·수산물 등 판매)
9. 시설·설비 설치, 변경, 개선(농기구, 어기구 포함)
10. 인력 관리 및 조직 운영
11. 휴업 및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농림어업 경영 포기)
12. 법률자문
13. 기타(적을 것 : E301022014t)

문23) 재해 발생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다음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E301023001)

01 02 03 04 05

1. 심리상담
2. 사회적응 프로그램
3. 직장복귀지원에 관한 상담
4. 직업훈련
5.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6. 기타(적을 것 : E301023001t)
7. 없음

문24) 귀하가 재해 발생이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나 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E301024001~5)

01 02 03 04 05

1.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2. 직원
3. 본인
4. 근로복지공단 직원
5. 기타(적을 것 : E301024005t)

문25) 사업체로의 복귀 후 직무의 강도와 난이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E301025001)

01 02 03 04 05

1. 매우 약해짐
2. 약해짐
3. 동일함
4. 높아짐
5. 매우 높아짐

▶ 재해 당시 업무와 현재 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의 변화를 응답합니다.

문26) 귀하는 재해 발생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E301026001)

01 02 03 04 05

1.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 문27)로 가십시오
2.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 문27)로 가십시오
3. 보통 → 문27)로 가십시오
4.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5.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

문26-1) 그렇다면, 재해 발생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E301026002~7)

01 02 03 04 05

1. 오랜만에 일을 하려고 하니 낯설어서 적응하기 힘들었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로 인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었다
3. 장애가 있는 나를 배려하는 회사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힘들었다
4. 수입 등 근무조건이 재해이전에 비해 나빠져서 힘들었다
5. 직원들과의 갈등
6. 기타(적을 것 : E301026007t)

문27) 사업체로 복귀하신 이후,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E301027001)

01 02 03 04 05

1. 매우 원만하다
2. 어느 정도 원만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원만하지 못하다
5. 전혀 원만하지 못하다

- ▶ 피고용인이 있는 대상자(문11-1)에서 전체 종업원 수>0)만 응답합니다.
- ▶ 재해 당시 직장동료 및 직원들과의 관계를 현재 직원들과의 관계와 비교하여 응답합니다.

문28) 재해 발생 이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현재 직원들이 귀하를 배려합니까? (E301028001)

01 02 03 04 05

1. 매우 배려해준다
2. 배려해주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5.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다

- ▶ 피고용인이 있는 대상자(문11-1)에서 전체 종업원 수>0)만 응답합니다.

※ 현재 사업체 및 업무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문29) 귀하는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301029001	1	2	3	4	5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301029002	1	2	3	4	5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은,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E301029003	1	2	3	4	5

문30) 현재 귀하께서 주로 하시는(말고 계시는) 일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현재 하시는 일(업무, 직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현재 하고(말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E301030001	1	2	3	4	5
② 나는 현재 하고(말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E301030002	1	2	3	4	5
③ 나는 현재 하고(말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E301030003	1	2	3	4	5
④ 나는 현재 하고(말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E301030004	1	2	3	4	5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말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E301030005	1	2	3	4	5

문31)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임금 또는 소득	<u>E301031001</u>	1	2	3	4	5
② 취업의 안정성	<u>E301031002</u>	1	2	3	4	5
③ 하고 있는 일의 내용	<u>E301031003</u>	1	2	3	4	5
④ 근로환경	<u>E301031004</u>	1	2	3	4	5
⑤ 근로시간	<u>E301031005</u>	1	2	3	4	5
⑥ 개인의 발전가능성	<u>E301031006</u>	1	2	3	4	5
⑦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u>E301031007</u>	1	2	3	4	5

문31-1) 그렇다면,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301031008)

01 02 03 04 05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한다

문32)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301032001)

01 02 03 04 05

1. 매우 성공적이다
2. 성공적인 편이다
3. 그럭저럭 괜찮다
4. 그저 그렇다
5. 그다지 좋지 않다
6. 고전하는 편이다
7. 매우 고전하고 있다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E-④. 무급가족종사자

문1)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일자리(직장)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사업체명과 소재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	----	----	----	----

- 귀하가 현재 다니는 이 일자리(직장)는 사업체명이 있습니까?
- 그럼 사업체명은 무엇입니까?
-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한국표준산업분류: E401001002
- 일자리(직장)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귀하께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한국표준직업분류: E401001004

1. 예 2. 아니오

E401001001

시(도) 구(시/군) 동(읍/면)

E401001003

- 사업체명은 줄여서 쓰지 말고 최하위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입합니다.
- 소재지는 읍/면/동까지 응답받아야 합니다.

문2) 귀하가 현재의 일자리(직장)에 다니기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E401002001~3)

01	02	03	04	05
----	----	----	----	----

- | | | | |
|--|--|--|--|
| | | | |
|--|--|--|--|

 년

--	--	--	--

 월

[계절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문3) 귀하가 현재의 일자리(직장)를 다니기 시작한 주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E401003001)

01	02	03	04	05
----	----	----	----	----

1. 가구원이 도움을 필요로 해서(인력이 부족해서)
2.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또는 일반장애 정도에 따른 기능수준에 부합해서
3. 지식이나 기술 등과 같은 능력수준에 맞아서
4. 개인 시간 조절이 용이해서
5. 일자리에서 본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또는 일반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6.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7. 가업을 잇기 위해서
8. 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9. 기타(적을 것 : E401003001t)
10. 특별히 없음

문4) 현재 일자리의 사업주는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E401004001)

01	02	03	04	05
----	----	----	----	----

--	--	--

※ '패널과의 관계 코드표'를 참조하여 응답합니다.

문5)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계신 일자리의 근로자는 현재 모두 몇 명입니까? (E401005001)

01	02	03	04	05
----	----	----	----	----

근로자 수 명

• 대표자는 제외한 근로자 수를 응답받습니다.

문5-1) 그 중 본인을 포함하여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E401005002)

01	02	03	04	05
----	----	----	----	----

명

※ 현재 이 일자리에에서의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현재 귀하의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401006001)

01	02	03	04	05
----	----	----	----	----

1.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일
2.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요구하는 일(분석, 대화 등)

• 조사일 전 1주를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문7) 현재 귀하의 업무 또는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E401007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문8) 현재 귀하의 업무 또는 일자리는 계절, 행사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입니까? (예: 농림어업 등)
(E401008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날씨 등 기후의 문제, 경기가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9) 귀하는 현재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일하십니까? (E401009001)

01	02	03	04	05
----	----	----	----	----

1. 가정에서
2.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3. 주로 이동하면서

※ 현재 이 일자리(직장)에서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0) 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일자리의 근무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E401010001)

01	02	03	04	05
----	----	----	----	----

1. 전일제
2. 시간제

- 전일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문11) 현재 이 일자리에서 귀하의 정규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E401011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 시 ~ 시 E401011002~3
2. 아니오

- 24시간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예) 오전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6시~18시
- 근로시간의 응답범위는 0~24까지입니다.

문12) 정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귀하는 평소 이 일자리에서 한 달 평균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 (초과 근로일, 초과 근로시간 포함)

01	02	03	04	05
----	----	----	----	----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E401012001 : 일
- 하루 평균 근무시간 E401012002 : 시간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시휴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쉬 경우 등은 일이 있을 때의 통상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받습니다.
-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응답받습니다.
- 초과근로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응답받습니다.
-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1~31까지 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4까지 가능합니다.
-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3) 귀하는 현재 이 일자리에서 지난달 본인의 건강(장애, 질병, 치료, 산재로 인한 재요양 등)으로 인해 며칠이나 결근하십니까? (E401013001)

01 02 03 04 05

■ 지난달 건강 또는 장애로 인한 결근일수 : 일

-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장애,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일로 산정합니다.
- 지난달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결근일수는 0~31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문14) 귀하가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401014001~2)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1. 신체기능의 제한
2. 이동능력의 제한
3. 의사소통의 제한
4.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5. 산재 장애 또는 질병이나 사고(건강 문제)
6.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등)의 문제
7. 근무환경(편의시설, 작업장 환경)의 문제
8.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9. 일자리가 너무 멀고, 출퇴근이 어려움
10. 대인관계 문제(동료 및 상사와의 마찰)
11. 산재 장애 또는 일반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2. 적성, 흥미, 전공에 맞지 않음
13.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 악화
14.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휴식 필요)
15. 개인적 사유 발생(학업, 육아, 가사, 돌봄 등)
16. 기타(적을 것 : E401014001t, E401014002t)
17. 특별히 없음

- 1순위와 2순위 간 중복응답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 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2순위에서만 '특별히 없음'을 허용하며, '모름/응답거절'은 응답 할 수 없습니다.

문15) 귀하는 현재 이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으십니까? (E401015001)

01 02 03 04 05

1. 예 → 문16)으로 가십시오
2. 아니오

문15-1) 현재 이 일자리를 다니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401015002~3)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	--	-----	--

1. 산재사고 이후 장애상태의 악화
2. 산재 이외 건강상태의 악화
3. 소득이 적음
4.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5. 임금근로로 취업하기 위해
6.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7. 적성, 흥미, 전공에 맞지 않음
8. 개인적 사유 발생(휴식, 학업, 육아, 가사 등)
9. 기타(적을 것 : E401015002t, E401015003t)
10. 특별히 없음

• 1순위와 2순위 간 중복응답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 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2순위에서만 '특별히 없음'을 허용합니다.

문15-2) 귀하는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E401015004)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구직등록이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 마음가짐으로만 구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15-3) 희망하는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E401015005)

01 02 03 04 05

1. 임금근로
2. 자영업자(창업) → 문15-6)으로 가십시오
3. 경제활동 할 의사가 없음 → 문16)으로 가십시오

문15-4) (임금근로 희망자만) 귀하가 임금근로를 희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401015006)

01 02 03 04 05

1. 정기적이고 안정된 소득(생활비, 용돈)을 위해
2.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서
3. 지식이나 기술, 전공 등을 활용하기 위해
4.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돼서
5.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6.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7.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8.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9. 기타(적을 것 : E401015006t)

문15-5) 귀하가 희망하시는 일자리(직장)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항 목	내 용	
① 희망 일자리의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 <u>E401015007</u>)	한국표준산업분류: <u>E401015008</u>
② 희망 일자리의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 <u>E401015009</u>)	한국표준직업분류: <u>E401015010</u>
③ 희망하는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u>E401015011</u>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④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u>E401015012</u>	1. 전일제 근무 → ⑥번으로 가십시오 2. 시간제 근무	
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u>E401015013</u>	1. 아이를 돌보려고 2. 가사일 때문에 3. 학업을 위하여 4.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5.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6. 산재로 인한 후유증 등 건강 문제로 7. 기타(적을 것 : <u>E401015013t</u>)	
⑥ 임금은 최소한 어느 정도를 희망하십니까? <u>E401015014</u>	최소희망임금 한 달 평균 <input type="text"/> 만원	

- 사업내용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와 함께 <보기>에 제시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의 대분류 코드표에 따라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전일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 희망임금의 응답 가능범위는 1~99,999까지입니다.

응답 후 문15-8)로 가십시오

문15-6) (자영업 희망자만) 귀하가 창업(농림어업 경영 포함)을 하시고자 하는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401015015)

01 02 03 04 05

1.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2.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3. 업무시간, 환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4. 사업을 물려받게 되어서
5.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성공할 것 같아서)
6.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7.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8.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9.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10.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1.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없어서
12. 기타(적을 것 : E401015015t)

문15-7) 귀하가 희망하는 창업(농림어업 포함)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항 목	내 용	
창업 희망업종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u>E401015016</u>)	한국표준산업분류: <u>E401015017</u>
한 달 평균 기대 순수익은 어떻게 되십니까? <u>E401015018</u>	한 달 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원하는 사업장 형태는 무엇입니까? <u>E401015019</u>	1. 노점(가판포함) 2. 차량 3. 점포 4. 사무실 5. 공장	6. 인터넷 7. 무점포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사업) 8. 농림어업 9. 기타 (적을 것: <u>E40101501t</u>) 10.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희망업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와 함께 <보기>에 제시된 산업분류 대분류 코드표에 따라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한 달 평균 기대 순수익의 응답가능범위는 0~999,999까지입니다.

문15-8) 귀하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E401015020~21)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1. 임금이나 소득 수준
2. 일의 양(노동 강도)
3. 일하는 시간(대)
4. 능력에 맞는 일
5. 정규직 여부
6.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장기근속 여부)
7. 산재장해인 및 일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8. 산재장해인 및 일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부
9. 대인관계(동료, 상사, 직원 등)
10. 복리후생 지원 정도
11. 이동거리(출퇴근 거리 등)
12. 적성이나 흥미
13. 시간적 여유(통원치료, 휴식 등 자유로운 활동 보장)
14. 삶의 비전이나 꿈
15. 일자리의 발전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
16. 일자리의 사회적 인지도
17. 일자리의 규모
18. 기타(적을 것 : E401015020t, E401015021t)
19. 특별히 없음

- 2순위에서만 '특별히 없음'을 허용하며, '모름/응답거절'은 응답 할 수 없습니다.

문15-9) 그럼, 귀하는 다른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 구직활동 이외의 정보수집, 훈련, 교육 등 취업/창업 준비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주로 준비하고 있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401015022~23)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	-----

1. 공공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2. 민간기관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강좌, 인턴 등) 이용
3. 재학 중인 학교의 직업훈련 또는 프로그램 이용
4. 사설학원 이용(어학, 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등)
5. 부모 및 친지로부터 기술 전수
6. 선배, 지인, 사업인계자로부터 기술 전수
7. 회사(프랜차이즈 본사 포함)로부터 직접 기술 전수
8. 독학(자격증 준비, 채용시험 준비)
9.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수집
10. 기타(적을 것 : E401015022t, E401015023t)
11.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음

- 취업준비활동이란 구체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정보수집, 직업훈련,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학원수강, 독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사일 전 4주를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2순위에서만 '특별히 없음'을 허용하며, '모름/응답거절'은 응답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일자리(직장) 및 업무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문16) 귀하는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401016001	1	2	3	4	5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401016002	1	2	3	4	5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은,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E401016003	1	2	3	4	5

문17) 현재 귀하께서 주로 하시는데(맡고 계시는) 일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현재 하시는 일(업무, 직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E401017001	1	2	3	4	5
②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E401017002	1	2	3	4	5
③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E401017003	1	2	3	4	5
④ 나는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E401017004	1	2	3	4	5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E401017005	1	2	3	4	5

문18) 귀하를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1 02 03 04 05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취업의 안정성 E401018001	1	2	3	4	5
② 하고 있는 일의 내용 E401018002	1	2	3	4	5
③ 근로환경 E401018003	1	2	3	4	5
④ 근로시간 E401018004	1	2	3	4	5
⑤ 개인의 발전가능성 E401018005	1	2	3	4	5
⑥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E401018006	1	2	3	4	5

문18-1) 그렇다면, 귀하를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401018007)

01 02 03 04 05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한다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E-⑤. 실업자

문1) 귀하께서는 현재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E501001001~7)

01 02 03 04 05

1. 부모 또는 형제, (손)자녀의 도움을 받음
2. 다른 친척의 도움을 받음
3. 예전에 모아둔 저축
4. 산재 장해연금 등의 사회보험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6. 배우자의 수입
7. 기타(적을 것 : E501001007t)

- 사회보험급여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를 뜻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경로연금(기초연금), 노인교통비, 모부자가정수당, 가정 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영유아 보육료지원, 학비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농림어업 정부보조금, 급식비지원, 문구비, 수련회비, 노인위생비 등을 말합니다.

문2) 요양 종결 이후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E501002001)

01 02 03 04 05

1. 있었음 년 월 E501002002~3
2. 없었음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구직등록이나 이력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 마음가짐으로만 구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없었음'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상태(D)' 영역에서 경제활동 판별 재확인 필요합니다.
- ▶ '있었음'의 경우 조사일 기준 4주 보다 이전의 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으로 응답한 때에는 '현재 경제활동상태(D)' 영역에서 경제활동 판별 재확인 필요합니다.

문3) 새로운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2개 이상일 경우 3개까지만 적어주세요. (E501003001~3)

01 02 03 04 05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1.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알선을 통해
2.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3. 친구, 친지의 소개
4. 공공 직업안내소(근로복지공단 제외)를 통해
5.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6.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7.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8.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9. 가족을 통해서
10.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11.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12.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3. 자영업 준비
14. 기타(적을 것 : E501003001t, E501003002t, E501003003t)
15. 특별히 없음

▶ 1순위에서 '특별히 없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순위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다음은 향후 취업의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4) 희망하는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E501004001)

01 02 03 04 05

- 1. 임금근로 → 문5)로 가십시오
- 2. 자영업(창업) → 문7)로 가십시오
- 3.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 → 문9)로 가십시오

문5) (임금근로 희망자만) 귀하께서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501005001)

01 02 03 04 05

- 1. 정기적이고 안정된 소득(생활비, 용돈)을 위해
- 2.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서
- 3. 지식이나 기술, 전공 등을 활용하기 위해
- 4.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돼서
- 5.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 6.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 7.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 8.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 9. 기타(적을 것 : E501005001t)

문6) 귀하께서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항 목	내 용	
① 희망 일자리의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E501006001)	한국표준산업분류: E501006002
② 희망 일자리의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E501006003)	한국표준직업분류: E501006004
③ 희망하는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E501006005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④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E501006006	1. 전일제 근무 → ⑥번으로 가십시오 2. 시간제 근무	
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501006007	1. 아이를 돌보려고 2. 가사일 때문에 3. 학업을 위하여 4.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5.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6. 산재로 인한 후유증 등 건강 문제로 7. 기타(적을 것 : E501006007t)	
⑥ 임금은 최소한 어느 정도를 희망하십니까? E501006008	최소희망임금 한 달 평균 <input type="text"/> 만원	

- 사업내용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와 함께 <보기>에 제시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의 대분류 코드표에 따라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전일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 희망임금의 응답 가능범위는 1~99999까지입니다.

응답 후 문10)으로 가십시오

문7) (자영업 희망자만) 귀하가 창업(농림어업 경영 포함)을 하고자 하는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501007001)

01 02 03 04 05

1.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2.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3. 업무시간, 환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4. 사업을 풀려나게 되어서
5.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성공할 것 같아서)
6.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7.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8.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9.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10.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1.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없어서
12. 기타(적을 것: E501007001t)

문8) 귀하께서 희망하는 창업(농림어업 포함)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항 목	내 용	
창업 희망업종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E501008001)	한국표준산업분류: E501008002
한 달 평균 기대 순수익은 어떻게 되십니까? E501008003	한 달 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원하는 사업장 형태는 무엇입니까? E501008004	1. 노점(가판포함) 2. 차량 3. 점포 4. 사무실 5. 공장	6. 인터넷 7. 무점포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사업) 8. 농림어업 9. 기타 (적을 것: E501008004t) 10.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희망업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와 함께 <보기>에 제시된 산업분류 대부분류 코드표에 따라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한 달 평균 기대 순수익의 응답가능범위는 0~999,999까지입니다.
- 전 항목 모름/응답거절 가능합니다.

응답 후 문10)으로 가십시오

문9) 귀하께서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501009001)

01 02 03 04 05

1. 학업 때문에
2.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육아)
3. 가사일 때문에
4. 퇴직하여서
5. 나이가 많아서
6.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7.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문제로
8. 당분간 쉬고 싶어서
9. 기타(적을 것: E501009001t)

응답 후 문11)로 가십시오

문10) 귀하께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E501010001~2)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1. 임금이나 소득 수준
2. 일의 양(노동 강도)
3. 일하는 시간(대)
4. 능력에 맞는 일
5. 정규직 여부
6.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장기근속 여부)
7. 산재장해인 및 일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8. 산재장해인 및 일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부
9. 대인관계(동료, 상사, 직원 등)
10. 복리후생 지원 정도
11. 이동거리(출퇴근 거리 등)
12. 적성이나 흥미
13. 시간적 여유(통원치료, 휴식 등 자유로운 활동 보장)
14. 삶의 비전이나 꿈
15. 일자리의 발전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
16. 일자리의 사회적 인지도
17. 일자리의 규모
18. 기타(적을 것 : E501010001t, E501010002t)
19. 특별히 없음

- ▶ 1순위와 2순위 간 중복응답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 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2순위에서만 '특별히 없음'을 허용합니다.

문11) 다음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01 02 03 04 05

구직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E501011001	1	2	3	4	5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E501011002	1	2	3	4	5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E501011003	1	2	3	4	5	
(4) 경험이 부족하다 E501011004	1	2	3	4	5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E501011005	1	2	3	4	5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E501011006	1	2	3	4	5	
(7) 나이가 너무 많다 E501011007	1	2	3	4	5	
(8)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E501011008	1	2	3	4	5	8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E501011009	1	2	3	4	5	8
(10) 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E501011010	1	2	3	4	5	

- ▶ (8)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 문4)에서 자영업(창업) 희망자만 응답
- ▶ (9)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여성만 응답

문12) 귀하께서는 취직하여 업무를 수행하실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십니까? 아래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E501012001~10)

01 02 03 04 05

(1) 근무일, 근무시간 조정	① 필요	② 불필요
(2) 출퇴근 지원	① 필요	② 불필요
(3) 별도 작업장(장애인 자립작업장, 장애인 근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4) 직무 적응을 위한 일정기간의 훈련	① 필요	② 불필요
(5) 사무보조 및 지원(예: 문서작성, 서류철, 전화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6) 작업지원(예: 물건운반, 낱땀, 경작, 어로활동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7) 의사소통 지원(수화통역, 대독, 대필 등 포함)	① 필요	② 불필요
(8) 이동지원(회사 내 이동, 출장 등 지원)	① 필요	② 불필요
(9) 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예: 식사보조, 화장실 보조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10) 기타(적을 것 : E501012010t)	① 필요	② 불필요

▶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데 '7. 의사소통 지원'을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E-⑥. 비경제활동인구

문1) 귀하께서는 현재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E601001001~7)

01 02 03 04 05

1. 부모 또는 형제, (손)자녀의 도움을 받음
2. 다른 친척의 도움을 받음
3. 예전에 모아둔 저축
4. 산재 장애연금 등의 사회보험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6. 배우자의 수입
7. 기타(적을 것 : E601001007t)

• 사회보험급여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를 뜻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경로연금(기초연금), 노인교통비, 모부자가정수당, 가정 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영유아 보육료지원, 학비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농림어업 정보보조금, 급식비지원, 문구비, 수련회비, 노인위생비 등을 말합니다.

‘현재 경제활동 판별(D)’ 영역 문6)의 2번 보기 응답자는 문1) 응답 후 문2), 문4) 순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경제활동 판별(D)’ 영역 문7)의 2번 보기 응답자는 문1) 응답 후 문3), 문5) 순으로 진행합니다.

문2)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원하였습니까? (E601002001)

01 02 03 04 05

1. 원하였다
2. 원하지 않았다 → 문2-2)로 가십시오

문2-1) 지난주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E601002002)

01 02 03 04 05

1. 있었다
2. 없었다

문2-2) 지난 4주 이내에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601002003)

01 02 03 04 05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3. 근처에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육아
8. 가사
9. 통학
10.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문제
11. 일반장애(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이외)
12. 기타(적을 것 : E601002003t)

▶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하는 경우, D의 문6)을 다시 확인합니다.

응답 후 문4)번으로 가십시오

문3)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601003001)

01	02	03	04	05
----	----	----	----	----

1. 학업 때문에
2.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육아)
3. 가사일 때문에
4. 퇴직하여서
5. 나이가 많아서
6.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7.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문제로
8. 당분간 쉬고 싶어서
9. 기타(적을 것 : E601003001t)

▶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경우 D의 문7)을 다시 확인합니다.

응답 후 문5)번으로 가십시오

문4) 2017년 한 해 동안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E601004001)

01	02	03	04	05
----	----	----	----	----

1. 있었음 년 월 E601004002~4
2. 없었음 → 문6)으로 가십시오

[계절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구직등록이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 마음가짐으로만 구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에서만 모름/응답거절 가능하며 모름/응답거절 시 계절범주로 응답받습니다.
- ▶ 문2) 응답자가 '1. 있었음'을 선택할 경우, 마지막 구직활동 시기는 조사일 기준 4주 이내 일 수 없습니다.

문5) 새로운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하되 2개 이상일 경우 3개 까지만 적어주십시오. (E601005001~3)

01	02	03	04	05
----	----	----	----	----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1. 학교, 학원의 취업정보·알선을 통해
2. 교사, 교수, 스승을 통해
3. 친구, 친지의 소개
4. 공공 직업안내소(근로복지공단 제외)를 통해
5.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6.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7.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8.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9. 가족을 통해서
10.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11.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12. 전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3. 자영업 준비
14. 기타(적을 것 : E601005001t, E601005002t, E601005003t)
15. 특별히 없음

▶ 1순위에서 '특별히 없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순위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다음은 향후 취업의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6) 희망하는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E601006001)

01	02	03	04	05
----	----	----	----	----

- 1. 임금근로 → 문7)로 가십시오
- 2. 자영업(창업) → 문9)로 가십시오
- 3.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음 → 문11)로 가십시오

문7) (임금근로 희망자만) 귀하께서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601007001)

01	02	03	04	05
----	----	----	----	----

- 1. 정기적이고 안정된 소득(생활비, 용돈)을 위해
- 2.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서
- 3. 지식이나 기술, 전공 등을 활용하기 위해
- 4.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돼서
- 5.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 6.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 7.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 8.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 9. 기타(적을 것 : E601007001t)

문8) 귀하께서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	----	----	----	----

항 목	내 용
① 희망 일자리의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 E601008001) 한국표준산업분류: E601008002
② 희망 일자리의 업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 E601008003) 한국표준직업분류: E601008004
③ 희망하는 종사상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E601008005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④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E601008006	1. 전일제 근무 → ⑥번으로 가십시오 2. 시간제 근무
⑤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601008007	1. 아이를 돌보려고 2. 가사일 때문에 3. 학업을 위하여 4.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5.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6. 산재로 인한 후유증 등 건강 문제로 7. 기타(적을 것 : E601008007t)
⑥ 임금은 최소한 어느 정도를 희망하십니까? E601008008	최소희망임금 한 달 평균 <input type="text"/> 만원

- 사업내용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와 함께 <보기>에 제시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의 대분류 코드표에 따라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전일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 희망임금의 응답 가능범위는 1~99999까지입니다.

응답 후 문12)로 가십시오

문9) (자영업 희망자만) 귀하께서 창업(농림어업 경영 포함)을 하고자 하는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601009001)

01 02 03 04 05

1.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워서
2.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3. 업무시간, 환경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4. 사업을 풀려받게 되어서
5.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성공할 것 같아서)
6.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7. 가족, 친지, 지인들의 권유로
8.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9. 국가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10.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1.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또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없어서
12. 기타(적을 것: E601009001t)

문10) 귀하께서 희망하는 창업(농림어업 포함)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02 03 04 05

항 목	내 용	
창업 희망업종은 무엇입니까?	(적을 것: E601010001)	한국표준산업분류: E601010002
한 달 평균 기대 순수익은 어떻게 되십니까? E601010003	한 달 평균	<input type="text"/> 만원
원하는 사업장 형태는 무엇입니까? E601010004	1. 노점(가판포함) 2. 차량 3. 점포 4. 사무실 5. 공장	6. 인터넷 7. 무점포(병문 및 우편 등을 통한 사업) 8. 농림어업 9. 기타 (적을 것: E601010004t) 10.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희망업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와 함께 <보기>에 제시된 산업분류 대분류 코드표에 따라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기입합니다.
- 한 달 평균 기대 순수익의 응답가능범위는 0~999,999까지입니다.

응답 후 문12)로 가십시오

문11) 귀하께서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601011001)

01 02 03 04 05

1. 학업 때문에
2.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육아)
3. 가사일 때문에
4. 퇴직하여서
5. 나이가 많아서
6.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7. 산업재해로 인한 건강문제로
8. 당분간 쉬고 싶어서
9. 기타(적을 것 : E601011001t)

응답 후 문13)으로 가십시오

문12) 귀하께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E601012001~2)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	-----

1. 임금이나 소득 수준
2. 일의 양(노동 강도)
3. 일하는 시간(대)
4. 능력에 맞는 일
5. 정규직 여부
6. 오래 일할 수 있는 정도(장기근속 여부)
7. 산재장해인 및 일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8. 산재장해인 및 일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여부
9. 대인관계(동료, 상사, 직원 등)
10. 복리후생 지원 정도
11. 이동거리(출퇴근 거리 등)
12. 적성이나 흥미
13. 시간적 여유(통원치료, 휴식 등 자유로운 활동 보장)
14. 삶의 비전이나 꿈
15. 일자리의 발전 및 사업의 성공 가능성
16. 일자리의 사회적 인지도
17. 일자리의 규모
18. 기타(적을 것 : E601012001t, E601012002t)
19. 특별히 없음

- ▶ 1순위와 2순위 간 중복응답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 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2순위에서만 '특별히 없음'을 허용합니다.

문13) 다음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01 02 03 04 05

구직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E601013001	1	2	3	4	5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E601013002	1	2	3	4	5	
(3) 학력, 기술, 능력이 모자란다 E601013003	1	2	3	4	5	
(4) 경험이 부족하다 E601013004	1	2	3	4	5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E601013005	1	2	3	4	5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E601013006	1	2	3	4	5	
(7) 나이가 너무 많다 E601013007	1	2	3	4	5	
(8)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E601013008	1	2	3	4	5	8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E601013009	1	2	3	4	5	8
(10) 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E601013010	1	2	3	4	5	

- ▶ (8)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 문6)에서 자영업(창업) 희망자만 응답
- ▶ (9)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여성만 응답

문14) 귀하께서는 업무 수행 시 타인 또는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E601014001~10)

01 02 03 04 05

(1) 근무일, 근무시간 조정	① 필요	② 불필요
(2) 출퇴근 지원	① 필요	② 불필요
(3) 별도 작업장(장애인 자립작업장, 장애인 근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4) 직무 적응을 위한 일정기간의 훈련	① 필요	② 불필요
(5) 사무보조 및 지원(예: 문서작성, 서류철, 전화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6) 작업지원(예: 물건운반, 낚땀, 경작, 어로활동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7) 의사소통 지원(수화통역, 대독, 대필 등 포함)	① 필요	② 불필요
(8) 이동지원(회사 내 이동, 출장 등 지원)	① 필요	② 불필요
(9) 일자리 내 일상생활지원(예: 식사보조, 화장실 보조 등)	① 필요	② 불필요
(10) 기타(적을 것 : E601014010t)	① 필요	② 불필요

▶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데 '7. 의사소통 지원'을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경제활동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F. 일자리 이력**으로 가십시오

F. 일자리 이력

문1) 귀하는 산업재해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명 띄워주기)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F01001001)

01	02	03	04	05
----	----	----	----	----

1. 있다
2. 없다 → 문2)로 가십시오

• 응답자: 원직장복귀자, 자영업자(재해 발생 사업체 복귀자)

문1-1) 그렇다면, 산업재해 이후 산업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을 가장 처음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F01001002~3)

01	02	03	04	05
----	----	----	----	----

최초 그만둔 시기 : 년 월

• 응답자: 원직장복귀자 및 자영업자(재해 발생 사업체 복귀자)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를 그만둔 이력이 있는 사람, (신규 사업체 운영)자영업, 재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문1-2) 산업 재해가 발생한 원직장(원사업장)에서 퇴사(폐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F01001007)

01	02	03	04	05
----	----	----	----	----

1. 개인의 건강문제
2.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3. 사업주, 상사, 동료 등과의 인간관계 갈등
4.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5. 출퇴근 등 이동문제
6.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7. 사업장의 폐업
8. 계약만료
9. 징계해고
10. 사업장의 권고사직 요청 등
11. 기타(적을 것 : F01001007t)

문2) 요양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현재 일자리 이외(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요양 종결 후 현재까지)에 1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위해(또는 수입이 없더라도 18시간 이상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한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F01002001)

01	02	03	04	05
----	----	----	----	----

1. 있었다(재해 발생 사업장 제외)
2. 없었다 → 'G.건강과 생활'로 이동하십시오

• 요양종료 직후 현재의 일자리 이전까지 일자리의 이력 있는 경우 모두 기재 합니다. (단, 현재 일자리는 제외)

- <일자리>
 -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 (직장, 아르바이트 등)
 - (2) 내 사업을 하거나 (예: 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업, 임업, 수산업, 행사 및 노점상 등)
 -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 <주의>
 새벽시장이나 인력사무소, 인맥(십장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매일매일 필요에 의해 고용되고 일거리나 일터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 다음 기준으로 일자리를 파악합니다.
 - (1) 일하는 장소(○○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합니다.
 - (2)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없이 같은 일(건설 현장 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합니다.
 - (3)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합니다.

문3) 요양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현재 일자리(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요양 종결 후 현재까지) 사이에 가졌던 일자리 또는 사업은 총 몇 개입니까? (F01003001)

01	02	03	04	05
----	----	----	----	----

개 (재해 발생 사업장 제외)

- 응답한 개수만큼 문3-1)~문3-12) 문항을 반복하여 질문합니다.
- 응답 가능범위는 1~10입니다.

문3-1) 일자리(직장) 명은 무엇이었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 일자리(직장)명은 줄여서 쓰지 말고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응답받습니다.
- 모름/응답거절 가능합니다.

문3-2) 귀하께서 일자리(직장)을 시작한 시기와 그만둔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F01003A01~6)

01	02	03	04	05
----	----	----	----	----

년 월 시작, 년 월 그만 둠

[계절범주 91.봄(3~5월) 92.여름(6~8월) 93.가을(9~11월) 94.겨울(12~2월)]

- 월에서만 모름/응답거절 가능하며 모름/응답거절 시 계절범주로 응답받습니다.
- 계절범주에서 모름/응답거절 가능합니다.

문3-3) 해당 일자리(직장)은 어떤 사업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사업내용 F01003A07 , 한국표준산업분류 F01003A08

문3-4) 해당 일자리(직장)에서 귀하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다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업무내용 F01003A09 , 한국표준직업분류 F01003A10

문3-5) 해당 일자리(직장)에서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F01003A11)

01	02	03	04	05
----	----	----	----	----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5.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문3-6) 해당 일자리(직장)에서 귀하의 임금(월급) 또는 월소득은 얼마였습니까? (F01003A12~13)

01	02	03	04	05
----	----	----	----	----

만원

[월 평균 소득 범주형 보기]

- | | |
|------------------------|--------------------------|
| 1. 79만원 미만 | 5.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 2. 79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 3.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7.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 4.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 모름/응답거절 가능합니다. 모름/응답거절 시 범주로 응답받습니다.
- 범주 응답 시 모름/응답거절 가능합니다.

문3-7) 해당 일자리(직장)의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다습니까? (F01003A14)

01	02	03	04	05
----	----	----	----	----

- | | |
|-----------|--------------|
| 1. 5인 미만 | 5. 30~99인 |
| 2. 5~9인 | 6. 100~299인 |
| 3. 10~19인 | 7. 300~999인 |
| 4. 20~29인 | 8. 1,000인 이상 |

문3-8) 해당 일자리(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F01003A15)

01	02	03	04	05
----	----	----	----	----

1. 전일제
2. 시간제

- 전일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문3-9) 해당 일자리(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평균적으로 한 달에 며칠 일하셨습니까? 또한 평소에 하루 근무시간과 1주 간 초과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01 02 03 04 05

- 한 달 평균 근무일수

--	--

 일 **F01003A16**
- 하루 평균 근무시간

--	--

 시간 **F01003A17**
-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	--

 시간 **F01003A18**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일시휴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잠시 일을 쉬 경우 등은 일이 있을 때의 통상적인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받습니다.
-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응답받습니다.
- 한 달 평균 근무일수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초과근로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응답받습니다.
- 한 달 평균근무일수는 1~31까지 응답가능합니다.
- 하루 평균근무시간은 1~24까지 응답가능합니다.
-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 시간제 근로자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재확인합니다.
- ▶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84시간이 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3-10) 해당 일자리(직장)에서 근무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F01003A19)

01 02 03 04 05

1. 노동조합 가입
2.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았음
3. 노동조합 없었음

문3-11) 해당 일자리(직장)에서 근무 당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01 02 03 04 05

(1) 국민연금	F01003A20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 국민건강보험	F01003A21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고용보험	F01003A22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문3-12) 해당 일자리(직장)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F01003A23)

01	02	03	04	05
----	----	----	----	----

1.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저하, 적응문제, 갈등, 후유증 등 문제
2.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3. 정리해고로 인해
4. 권고사직
5. 명예퇴직
6. 정년퇴직
7. 계약기간이 끝나서
8.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9.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10.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11.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12.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3.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14. 결혼, 가족간병 등 가사문제로
15.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6.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7. 회사가 이사하여서(전근·발령을 받아서)
18.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19. 학업 때문에
20. 군입대 때문에
21.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22. 출산, 육아를 위해
23. 기타 (적을 것 : F01003A23t)

→ 일자리 이력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G. 건강과 생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일자리 이력 조사표

		01	02	03	04	05									
연번	일자리 명	시작 시기	끝난 시기	일자리 사업내용 (산업분류)	업무내용 (직업분류)	총상장 지위	월평균 임금/월소득	일자리 근로자 수	근로시간 형태	한 달 평균 근무일수	하루 평균 근무시간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	노동조합 가입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퇴직이유
일자리 1		F01003A01 F01003A02 F01003A03	F01003A04 F01003A05 F01003A06	F01003A07 F01003A08	F01003A09 F01003A10	F01003A11	F01003A12 F01003A13	F01003A14	F01003A15	F01003A16	F01003A17	F01003A18	F01003A19	F01003A20 F01003A21 F01003A22	F01003A23 F01003A23t
일자리 2		F01003B01 F01003B02 F01003B03	F01003B04 F01003B05 F01003B06	F01003B07 F01003B08	F01003B09 F01003B10	F01003B11	F01003B12 F01003B13	F01003B14	F01003B15	F01003B16	F01003B17	F01003B18	F01003B19	F01003B20 F01003B21 F01003B22	F01003B23 F01003B23t
일자리 3		F01003C01 F01003C02 F01003C03	F01003C04 F01003C05 F01003C06	F01003C07 F01003C08	F01003C09 F01003C10	F01003C11	F01003C12 F01003C13	F01003C14	F01003C15	F01003C16	F01003C17	F01003C18	F01003C19	F01003C20 F01003C21 F01003C22	F01003C23 F01003C23t
일자리 4		F01003D01 F01003D02 F01003D03	F01003D04 F01003D05 F01003D06	F01003D07 F01003D08	F01003D09 F01003D10	F01003D11	F01003D12 F01003D13	F01003D14	F01003D15	F01003D16	F01003D17	F01003D18	F01003D19	F01003D20 F01003D21 F01003D22	F01003D23 F01003D23t
일자리 5		F01003E01 F01003E02 F01003E03	F01003E04 F01003E05 F01003E06	F01003E07 F01003E08	F01003E09 F01003E10	F01003E11	F01003E12 F01003E13	F01003E14	F01003E15	F01003E16	F01003E17	F01003E18	F01003E19	F01003E20 F01003E21 F01003E22	F01003E23 F01003E23t
일자리 6		F01003F01 F01003F02 F01003F03	F01003F04 F01003F05 F01003F06	F01003F07 F01003F08	F01003F09 F01003F10	F01003F11	F01003F12 F01003F13	F01003F14	F01003F15	F01003F16	F01003F17	F01003F18	F01003F19	F01003F20 F01003F21 F01003F22	F01003F23 F01003F23t
일자리 7		F01003G01 F01003G02 F01003G03	F01003G04 F01003G05 F01003G06	F01003G07 F01003G08	F01003G09 F01003G10	F01003G11	F01003G12 F01003G13	F01003G14	F01003G15	F01003G16	F01003G17	F01003G18	F01003G19	F01003G20 F01003G21 F01003G22	F01003G23 F01003G23t
일자리 8		F01003H01 F01003H02 F01003H03	F01003H04 F01003H05 F01003H06	F01003H07 F01003H08	F01003H09 F01003H10	F01003H11	F01003H12 F01003H13	F01003H14	F01003H15	F01003H16	F01003H17	F01003H18	F01003H19	F01003H20 F01003H21 F01003H22	F01003H23 F01003H23t
일자리 9		F01003I01 F01003I02 F01003I03	F01003I04 F01003I05 F01003I06	F01003I07 F01003I08	F01003I09 F01003I10	F01003I11	F01003I12 F01003I13	F01003I14	F01003I15	F01003I16	F01003I17	F01003I18	F01003I19	F01003I20 F01003I21 F01003I22	F01003I23 F01003I23t
일자리 10		F01003J01 F01003J02 F01003J03	F01003J04 F01003J05 F01003J06	F01003J07 F01003J08	F01003J09 F01003J10	F01003J11	F01003J12 F01003J13	F01003J14	F01003J15	F01003J16	F01003J17	F01003J18	F01003J19	F01003J20 F01003J21 F01003J22	F01003J23 F01003J23t



G. 건강과 생활 - Ga. 산업재해와 건강

문1) 산업재해 이후 귀하의 건강회복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01001001)

01	02	03	04	05
----	----	----	----	----

1. 전혀 회복되지 않음
2. 아직 회복되지 않은 편임
3. 보통임
4. 어느 정도 회복된 편임
5. 완전히 회복됨

문2) 산업재해 이후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통증을 느끼십니까? (G01002001)

01	02	03	04	05
----	----	----	----	----

1. 전혀 없음
2. 가끔 한번
3. 일주일에 몇 차례
4. 거의 매일
5. 항상

문3)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귀하의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01003001)

01	02	03	04	05
----	----	----	----	----

1. 전혀 없음
2. 어느 정도
3. 상당 기간
4. 항상

문4) 산업재해 이전(사고 또는 질병) 평소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G01004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건강함
2. 건강한 편
3. 보통
4. 건강하지 못한 편
5. 매우 건강하지 못함

문4-1) 산업 재해 이전에 있었던 건강문제는 무엇입니까? (G01004002~19)

01	02	03	04	05
----	----	----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2.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3.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4. 만성간염, 간경변 5. 당뇨병 6. 갑상선질환 7. 고혈압, 저혈압 8. 중풍, 뇌혈관질환 9. 심근경색증, 협심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폐결핵, 결핵 11.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12. 천식 13. 백내장, 녹내장 14. 만성중이염,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15.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6. 골다공증 17. 기타(적을 것 : G01004019t) 18. 없음 |
|--------------------------------------------------------------------------------------------------------------------------------------------------------------------------------------------------------------------------------------------------------------|----------------------------------------------------------------------------------------------------------------------------------------------------------------------------------------------------------------------------------------------------------------------------|

G. 건강과 생활 - Gb. 현재의 건강과 생활

문5) 이제부터는 귀하의 건강상태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01005001)

01 02 03 04 05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좋은 편이다 → 문6)으로 가십시오
4. 매우 좋다 → 문6)으로 가십시오

문5-1)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건강문제로 인해서 일을 하는 데(또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G01005002)

01 02 03 04 05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6) 현재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G01006001)

01 02 03 04 05

1. 예
2. 아니오 → 문7)로 가십시오

•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은 제외합니다.

문6-1) 그럼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질병을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01006002~18)

01 02 03 04 05

- | | |
|----------------------|---------------------------|
| 1.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 10. 폐결핵, 결핵 |
| 2.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 11.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
| 3.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 12. 천식 |
| 4. 만성간염, 간경변 | 13. 백내장, 녹내장 |
| 5. 당뇨병 | 14. 만성중이염,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
| 6. 갑상선질환 | 15.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
| 7. 고혈압, 저혈압 | 16. 골다공증 |
| 8. 중풍, 뇌혈관질환 | 17. 기타(적을 것 : G01006018t) |
| 9. 심근경색증, 협심증 | |

문7)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01	02	03	04	05
----	----	----	----	----

- 최근 1년간 총 외래진료 횟수 G01007001
- 산재 후유증으로 인한 외래진료 횟수 G01007002
- 최근 1년간 총 입원 횟수 G01007003
- 최근 1년간 총 입원일 수 G01007004

			회
			회
			회
			일

- 최근 1년간 이용현황을 응답받습니다.
- 약국, 요양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입원횟수는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 총 외래진료 횟수와 총 입원 횟수는 0~365회로 응답 가능합니다.
- 총 입원일 수는 0~365일로 응답 가능합니다.
- ▶ 입원 횟수가 입원일 수 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 ▶ 입원 횟수가 '0'인 경우 입원일 수를 응답할 수 없습니다.
- ▶ 입원 횟수가 '1'이상이 경우 입원일 수를 '1' 이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 ▶ 총 외래진료 횟수, 총 입원 횟수를 모두 '0'으로 응답한 경우 문8)로 이동합니다.
- ▶ 외래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총 입원 횟수를 '1'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문7-1)으로 이동합니다.
- ▶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총 입원 횟수를 '0'으로 응답한 경우 문7-3)으로 이동합니다.

문7-1) 최근 1년 중 가장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G01007005)

01	02	03	04	05
----	----	----	----	----

			일
--	--	--	---

- 장기간 입원이란 의료기관에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입원한 것을 말합니다.
- 총 입원일 수는 1~365일로 응답 가능합니다.
- ▶ 문7-1)을 응답한 경우 문7-2)로 이동합니다.

문7-2) 최근 1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G01007006)

01	02	03	04	05
----	----	----	----	----

1. 산재로 인한 증상 악화
2. 지병/질병
3. 사고
4. 출산
5. 건강검진
6. 요양/휴식(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
7. 성·정형/교정
8. 기타(적을 것 : G01007006t)

- 최근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 ▶ 문7-2)를 응답한 경우 문7-3)로 이동합니다.

문7-3) 최근 1년 중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무엇입니까? (G01007007)

01 02 03 04 05

1.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산재직영병원 → 문7-4)로 이동
2. 상급종합, 종합병원(대학병원)
3. 병원(전문병원 등)
4. 요양병원
5. 의원(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기타)
6. 치과 병·의원
7. 한방 병·의원
8. 보건(지)소/보건의료원
9. 조산원

문7-4) 그렇다면, 다음 중 어느 병원을 주로 이용하셨습니다? (G01007008)

01 02 03 04 05

- | | |
|----------------|-----------------------|
| 1.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7.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 2.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8.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
| 3.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9.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
| 4.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 10. 근로복지공단 경기산업재해요양병원 |
| 5.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 11. 경기케어센터 |
| 6.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12. 강원케어센터 |

문8)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G01008001)

01 02 03 04 05

1. 예,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2. 아니오, 받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 문9)로 가십시오
3. 병의원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문9)로 가십시오

- 문7)에서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입원일 수가 '0'인 경우 2번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 문7)에서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입원일 수가 '1'이상인 경우 3번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문8-1) 지난 1년간, 필요한 의료기관 진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G01008002)

01 02 03 04 05

1. 경제적 이유(치료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서)
2.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3.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
4.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5.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서(정보 부족)
6. 방문 시간이 없어서(육아, 직장 등)
7.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8. 나(또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9. 기타(적을 것 : G01008002t)

문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장애나 육체적 제약이 있습니까? (G01009001~2)

01 02 03 04 05

	예	아니오
1)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 감각기관의 장애가 있다	1	2
2)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기 등의 육체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1	2

※ 귀하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지 묻는 질문입니다.

문10) 귀하는 산업재해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G01010001)

01	02	03	04	05
----	----	----	----	----

1. 전혀 필요 없다
2. 필요 없다
3. 약간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

문11) 귀하는 산업재해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 등으로 인해 현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G01011001)

01	02	03	04	05
----	----	----	----	----

1. 있다
2. 없다 → 문12)로 가십시오

문11-1) 그럼,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로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01011002~3)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	--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 2. 부모 3. 부모 이외의 가족(형제, 자녀 등) 4. 친척 5. 친구 및 이웃 6. 유료 가정봉사원 7. 유료 간병인 |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유료 활동보조인 9. 무료 가정봉사원 10. 무료 간병인 11. 무료 활동보조인 12. 기타(적을 것 : G01011002t, G01011003t) 13. 없음 |
|------------------------------------------------------------------------------------------------------------------------------------------------------------------------------------|---------------------------------------------------------------------------------------------------------------------------------------------------------------------------------------------|

• 주로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만약 응답자가 판단을 어려워할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도록 합니다.

▶ 1순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며,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12.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하며 '13. 없음'은 2순위에서만 응답 가능합니다.

▶ 미혼인데 '1. 배우자'를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1-2) 귀하는 평소 얼마나 많은 시간 도움을 제공 받으십니까?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도움 받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01011004~5)

01	02	03	04	05
----	----	----	----	----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10분 단위로 응답)

• 시간은 0~24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분은 10분 단위로 응답 가능합니다.

• 도움 받는 시간이 10분 미만이면 10분으로 응답받습니다. 10분 이상 도움 받은 경우 1분 단위는 반올림하여 응답받습니다.

▶ 산업재해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로 인해 평소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0시간 0분으로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문11-3) 귀하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십니까? 다음 중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순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01011006~7)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	--	-----	--

1. 일상생활 동작(밥먹기, 옷입기 등)
2. 의사소통(대화하기, 전화하기, 책읽기 등)
3. 이동 및 외출
4. 건강관리(운동, 치료, 목욕 등)
5. 학습활동
6. 금전관리(저축 등)
7. 사회참여(만남, 모임참석 등)
8. 가사 및 육아
9. 기타(적을 것 : G01011006t, G01011007t)
10. 없음

- 주로 도움을 받는 분야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만약 응답자가 판단을 어려워할 경우에는 어떤 분야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제시해 주도록 합니다.
- ▶ 1순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며,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9.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하며 '10. 없음'은 2순위에서만 응답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2) 귀하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지속적으로(약 6개월 이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01 02 03 04 05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낀다	보통이다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①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u>G01012001</u>	1	2	3	4	5
② 옷입기, 목욕하기 등 집안을 돌아다니는 활동	<u>G01012002</u>	1	2	3	4	5
③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 집 밖을 돌아다니는 활동	<u>G01012003</u>	1	2	3	4	5
④ 직업활동을 함	<u>G01012004</u>	1	2	3	4	5

※ 귀하의 평소 일과와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가 하루 일과 중 수면을 제외하고 주로 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지난 1주를 기준으로 다음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01013001~3)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3순위
-----	-----	-----

1. 근로
2. 구직 및 취업 준비
3. 건강관리(운동, 치료, 목욕 등)
4. 취미여가활동(TV시청, 여행, 독서 등)
5. 사회참여(만남, 모임 참석 등)
6. 가사
7. 육아
8. 휴식
9. 결혼, 이사 등 준비
10. 학교, 학원 등 통학(취업 관련은 제외)
11. 독학(취업 관련은 제외)
12. 가족 관련 일(쇼핑, 돌봄 등)
13. 기타(적을 것 : G01013001t, G01013002t, G01013003t)
14. 없음

- 활동종류가 아닌 활동목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예) 인터넷 활용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구직이라면 '구직 및 취업 준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 1순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 2, 3순위에서만 '14. 없음'이 허용되며, '모름/응답거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1순위, 2순위, 3순위 간 중복응답은 불가능 합니다.
단, 1, 2, 3순위가 모두 '13.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미취업자가 '근로'를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 취업자가 '근로'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14) 귀하의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많이 하시는 여가활동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G01014001~2)

01	02	03	04	05
----	----	----	----	----

1순위	2순위
-----	-----

1. 감상,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2. TV 시청(유선방송, 비디오 포함)
3. 라디오 청취
4. 컴퓨터 또는 인터넷 활용
5. 승부놀이(바둑, 당구, 경마 등)
6.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 등)
7. 독서, 신문이나 잡지 보기
8. 스포츠(축구, 테니스, 수영 등)
9. 산책, 산보
10. 학습활동(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
11. 사회(자원)봉사 활동
12. 여행(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13. 사교 일(친구, 친척 만남, 모임 등)
14.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15. 휴식(수면, 사우나 등)
16. 종교활동
17. 기타(적을 것 : G01014001t, G01014002t)
18. 없음

- ▶ 1순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며,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17.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하며 '18. 없음'은 2순위에서만 응답 가능합니다.

※ 귀하의 평소 운동과 수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5) 평소 귀하는 1주일에 며칠 정도 운동하십니까? (G01015001)

01 02 03 04 05

일주일에 평균 일

- 재활을 위해 하는 운동도 포함하여 응답받습니다.
- 하루에 여러 번 운동하더라도 1일로 간주합니다.
- 응답이 어려운 경우, 지난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0~7'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0'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문16)으로 가십시오.

문15-1) 그럼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G01015002~3)

01 02 03 04 05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10분 단위로 응답)

- 시간은 0~24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분은 10분 단위로 응답 가능합니다.
- 운동한 시간이 10분 미만이면 10분으로 응답받습니다. 10분 이상 운동한 경우 1분 단위는 반올림하여 응답받습니다.
- ▶ 하루 평균 운동시간을 0시간 0분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 ▶ 하루 평균 운동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다시 확인합니다.

문16)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수면을 위해 누워계시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잠이 든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G01016001)

01 02 03 04 05

하루 평균 약 시간

- 낮잠은 수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에 통증 등으로 전혀 수면을 못 이루는 경우 주간의 수면은 포함)
- 불면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워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실제 잠이 든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받습니다.
- 응답이 어려운 경우, 지난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분까지 응답하실 경우 반올림하여 응답받습니다.
- 0~24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 수면시간이 3시간 이하이거나 20시간 이상일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 하루 운동시간과 수면시간의 합이 2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일상생활에서의 음주와 흡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는 평소 담배를 피우십니까? (G01017001)

01	02	03	04	05
----	----	----	----	----

1. 피운다
2. 피우지 않는다 → 문18)로 가십시오

문17-1) 그렇다면, 하루 평균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G01017002)

01	02	03	04	05
----	----	----	----	----

1. 40개비 이상
2. 20~39개비
3. 10~19개비
4. 9개비 이내

문18) 귀하는 평소 술을 드십니까? (G01018001)

01	02	03	04	05
----	----	----	----	----

1. 마신다
2. 마시지 않는다 → Gc. 삶의 질로 가십시오

문18-1) 그렇다면, 평소에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G01018002)

01	02	03	04	05
----	----	----	----	----

1. 월 1회 이하
2. 월 2~3회
3. 주 1~2회
4. 주 3~4회
5. 거의 매일

G. 건강과 생활 - Gc. 삶의 질

문19) 산업재해가 귀하의 오늘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G01019001)

01	02	03	04	05
----	----	----	----	----

1.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2. 많은 영향을 미침
3. 보통
4. 약간 영향을 미침
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문20) 소득이나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G01020001)

01	02	03	04	05
----	----	----	----	----

1. 상층 2. 중상층 3. 중하층 4. 하층

문21) 다음은 현재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01	02	03	04	05
----	----	----	----	----

항 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㉗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G01021001	1	2	3	4
㉘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G01021002	1	2	3	4
㉙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G01021003	1	2	3	4
㉚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G01021004	1	2	3	4
㉛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G01021005	1	2	3	4
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G01021006	1	2	3	4
㉝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G01021007	1	2	3	4
㉞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G01021008	1	2	3	4
㉟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G01021009	1	2	3	4
㊱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G01021010	1	2	3	4

• 문항마다 긍정, 부정 성격이 다르니 응답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 귀하의 현재 일상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2) 이제부터는 귀하가 일상생활에 만족하시는 정도를 여쭙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사회적 친분 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를 뜻합니다.)

01 02 03 04 05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가족의 수입 <u>G01022001</u>	1	2	3	4	5
② 여가 생활 <u>G01022002</u>	1	2	3	4	5
③ 주거 환경 <u>G01022003</u>	1	2	3	4	5
④ 가족 관계 <u>G01022004</u>	1	2	3	4	5
⑤ 친인척 관계 <u>G01022005</u>	1	2	3	4	5
⑥ 사회적 친분 관계 <u>G01022006</u>	1	2	3	4	5

문22-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G01022007)

01 02 03 04 05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23) 다음은 귀하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 주시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01 02 03 04 0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u>G01023001</u>	1	2	3	4	5
2.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u>G01023002</u>	1	2	3	4	5
3. 어떤 일을 첫 번에 잘못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u>G01023003</u>	1	2	3	4	5
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 할 수 있다 <u>G01023004</u>	1	2	3	4	5
5.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포기한다 <u>G01023005</u>	1	2	3	4	5
6.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u>G01023006</u>	1	2	3	4	5
7.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를 아예 하지 않는다 <u>G01023007</u>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G01023008	1	2	3	4	5
9.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G01023009	1	2	3	4	5
10.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G01023010	1	2	3	4	5
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잘 대처할 수 있다 G01023011	1	2	3	4	5
12.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G01023012	1	2	3	4	5
13.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이다 G01023013	1	2	3	4	5
14.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G01023014	1	2	3	4	5
15. 자신감이 있다 G01023015	1	2	3	4	5
16. 나는 무슨 일을 쉽게 포기한다 G01023016	1	2	3	4	5
17.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G01023017	1	2	3	4	5
18.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G01023018	1	2	3	4	5
19. 친구가 보고 싶으면 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간다 G01023019	1	2	3	4	5
2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는 사귀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 G01023020	1	2	3	4	5
21. 첫 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G01023021	1	2	3	4	5
22. 나는 사회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G01023022	1	2	3	4	5
23. 지금의 내 친구들은 나의 사교성 때문에 사귀었다 G01023023	1	2	3	4	5

• 문항마다 긍정, 부정 성격이 다르니 응답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Sherer, Maddux 및 Jacobs와 Rogers 등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 SES)

G. 건강과 생활 - Gd. 사회적 관계

문24) 귀하께서는 산업재해 발생 전과 비교하여 친구·이웃·친척과의 교류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01	02	03	04	05
----	----	----	----	----

항 목	매우 소원해졌다	다소 소원해진 편이다	변화가 없다	예전보다 많이 가까워졌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① 친구 G01024001	1	2	3	4	5
② 이웃 G01024002	1	2	3	4	5
③ 친척 G01024003	1	2	3	4	5

문25) 귀하께서는 종교모임이나 친목모임, 동호회 등의 일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01	02	03	04	05
----	----	----	----	----

항 목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2, 3회 정도	1주일에 1회 정도	1주일에 2회 이상
① 종교모임 G01025001	1	2	3	4	5	6
② 친목모임 G01025002	1	2	3	4	5	6
③ 동호회 G01025003	1	2	3	4	5	6

문26) 귀하께서는 현재 취업활동 이외에 특정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G01026001**)

01	02	03	04	05
----	----	----	----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 문27)로 가십시오

문26-1) 가입한 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G01026002~12**)

01	02	03	04	05
----	----	----	----	----

- | | |
|--------------|-----------------------------------|
| 1. 시민단체 | 7. 동호인단체 |
| 2. 종교단체 | 8. 문화 및 예술단체 |
| 3. 정당 및 정치단체 | 9. 운동단체 |
| 4. 환경보호단체 | 10.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
| 5. 소비자단체 | 11. 기타(적을 것 : G01026012t) |
| 6. 인권보호단체 | |

문27) 귀하께서는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G01027001**)

01	02	03	04	05
----	----	----	----	----

1. 개신교(기독교)
2. 카톨릭(천주교)
3. 불교
4. 유교
5. 기타(적을 것 : **G01027001t**)
6. 없음

문28)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G01028001)

01	02	03	04	05
----	----	----	----	----

1.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2. 가족
3. 친척, 친구, 이웃
4. 근로복지공단 직원
5. 공무원
6. 종교인
7. 일반 사회복지 관련 기관 직원(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8. 노무사, 변호사 등 일반 전문가
9. 기타(적을 것 : G01028001t)

H. 개인 소득

※ 귀하의 지난 해(2017년)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2017년 한 해 개인의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이 있었습니까? (H01001001)

01	02	03	04	05
----	----	----	----	----

1. 예
2. 아니오 → 문3)으로 가십시오

- 임금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을 하였더라도 소득이 0원일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의 순수익으로 응답하며, 적자일 경우 소득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문2) 2017년 한 해 동안 귀하의 개인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패널 개인 1인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01	02	03	04	05
----	----	----	----	----

항 목	2017년 금액										
[1] 임금소득 H01002001 *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수인 임금소득이 해당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d> </tr> </table> 만원 소득범주: (H01002002)										
[2] 사업소득 H01002003 * 자영업(노점 포함)이나 자신의 사업체 운영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순수익)이 해당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d> </tr> </table> 만원 소득범주: (H01002004)										
총 계	H01002005										

- 패널 개인 1인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응답자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세후 총소득을 기록합니다.
- 조사일 기준 패널의 취업여부 및 한 달 평균 소득을 참고하여 응답 받습니다.(E1~E3 영역의 평균 임금 및 연간 순수익)
- 조사일 기준 취업자이나 2017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메모란에 해당 사유를 기록합니다.
-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지 않고 응답받습니다.
-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응답받습니다.
- 임금소득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 ① 급여소득: 기본급, 근속급,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전산수당, 특수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잔업수당 등
 - ②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성과급 등
-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은 임금소득에 포함하며, 퇴직금은 임금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사업수익(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이자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유직업(프리랜서) 원고료, 작곡료 등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되, 인쇄·음원 등의 저작권료 등은 재산소득으로 작성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건물 및 토지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주형 보기를 통해 가장 근접한 값으로 응답합니다.
 - ▶ 각 항목 당 소득을 1억원 이상으로 응답할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 ▶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총계가 0일 수는 없습니다.

[소득 범주]

- | | |
|--------------------------|-----------------------------------|
| 1. 60만원 미만 | 7. 1,2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2.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8. 2,4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3. 120만원 이상 ~ 240만원 미만 | 9. 6,000만원 이상 ~ 1억 2,000만원 미만 |
| 4. 240만원 이상 ~ 360만원 미만 | 10. 1억 2,000만원 이상 ~ 3억 6,000만원 미만 |
| 5. 36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11. 3억 6,000만원 이상 |
| 6. 6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

※ 귀하의 2017년 한 해 개인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 2017년 한 해 동안 귀하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얼마입니까?
응답자 1인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01 02 03 04 05

구분	항목	2017년 금액	
사회보험급여	㉞ 휴업급여 H01003001~2	<input type="text"/> 만원	
	㉟ 장해연금 H01003003~4	<input type="text"/> 만원	
	㊱ 상병보상연금 H01003005~6	<input type="text"/> 만원	
	일시금	㊲ 장해일시금 H01003007~8 <input type="text"/> 만원	
	[2] 공적연금	- 국민연금 - 특수지역연금	연금 H01003009~10 <input type="text"/> 만원
일시금 H01003011~12 <input type="text"/> 만원			
[3]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H01003013~14 ·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제공됨.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모성보호 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input type="text"/> 만원	
재산소득	[4] 금융소득 H01003015~16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한다. 예) 적금이나 저축의 이자, 주식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 적금의 원금이나 통장의 잔액은 재산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은행에 가입한 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 주식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채는 재산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input type="text"/> 만원	
	[5] 부동산소득 H01003017~18 ·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등) 또는 부동산 상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집세, 각종임대료, 부동산매매차익, 권리금 차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할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input type="text"/> 만원	
	[6] 그 외 재산소득 H01003019~20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수령한 금액 · 자동차, 각종 가구류, 집기, 어선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임대수입 · 광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임대수입, 작가의 저작권 소득 등	<input type="text"/> 만원	
이전소득	[7] 공적이전소득	㉞ 장애인 수당 H01003021~22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정부보조금으로 받은 지원금 응답	<input type="text"/> 만원
		㉟ 기초연금 H01003023~24	<input type="text"/> 만원
		㊱ 기타 공적이전소득 H01003025~26 · 노인교통비, 모부자가정수당, 가정 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임신·출산 진료비,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보훈급여금, 농림어업정부보조금, 급식비 지원, 문구비, 수련회비, 노인위생비 등	<input type="text"/> 만원
	[8] 사적이전소득	㉞ 가구원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H01003027~28	<input type="text"/> 만원
㉟ 가구원 외 따로 살고 있는 가족, 친척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H01003029~30 · 따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부모, 자녀가구와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예)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및 분가한 자녀가구에게서 생일, 명절 때 또는 월, 분기, 연간 등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용돈 등		<input type="text"/> 만원	
㊱ 그 이외의 사적이전 소득 (친구, 이웃,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H01003031~32		<input type="text"/> 만원	
기타	[9] 기타 소득 H01003033~34 · 퇴직금, 개인연금 일시금, 증여 및 상속, 경조금, 보상금(각종 사고, 이주민주거대책 등), 보험금, 경품 및 복권당첨 등	<input type="text"/> 만원	
총 계		H01003035 <input type="text"/> 만원	

- 패널(응답자) 개인 1인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직접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임금/사업소득 외에서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의 세후 총소득을 기록합니다.
-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주형 보기를 통해 가장 근접한 값으로 응답합니다.
- 사용 목적이 특정된 사회적 현물인 바우처는 소득의 응답대상이 아닙니다.

[1]~[3] 사회보험 급여

- 산재보험 장해연금이란 요양종결 후 산재노동자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경우 장해1급~14급까지 결정되고 장해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1급~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급~7급은 연금, 일시금 중 선택 가능, 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도 장해(상이)연금이 지급되므로 구분하여 응답합니다.

[2] 공적연금 · [7]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므로 구분하여 응답합니다.
 - 노령연금 : [2]공적연금
 - 기초연금 : [7]공적이전소득
- 기초생활수급액은 가구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 응답합니다.

[4]~[6] 재산소득

- 매월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금형 부채이므로 재산소득이 아닙니다.

[8]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은 용돈, 생활비, 교통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 또는 현물로, 일시적인 증여나 상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증여나 상속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적인 현금 외에 의료비·보험료·통신비·관리비 등 지원금액 및 쌀 등 현물도 포함하며, 현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시장평가금액을 응답합니다.

[소득 범주]

- | | |
|--------------------------|-----------------------------------|
| 1. 60만원 미만 | 7. 1,2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2.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8. 2,4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3. 120만원 이상 ~ 240만원 미만 | 9. 6,000만원 이상 ~ 1억 2,000만원 미만 |
| 4. 240만원 이상 ~ 360만원 미만 | 10. 1억 2,000만원 이상 ~ 3억 6,000만원 미만 |
| 5. 36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11. 3억 6,000만원 이상 |
| 6. 6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

※ 귀하 가구의 2017년 한 해 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개인소득 조사 정보를 불러옵니다.

문3) 이제부터는 귀택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귀택에서는 2017년 한 해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이 있었습니까? (I01003001)

01 02 03 04 05

1. 예
2. 2017년 한 해 동안 가구원 전체가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이 전혀 없음 → 문4)로 가십시오

- ▶ 앞서 개인 근로 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17년도에 가구 근로소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 ▶ 앞서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17년도에 가구에 근로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3-1) 2017년 한 해 동안 귀택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임금소득, 사업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귀하를 포함한 가구 전체 소득자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01 02 03 04 05

항 목	2017년 금액
[1] 임금소득 I01003002 *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수인 임금소득이 해당됩니다.	<input type="text"/> 만원 소득범주: (I01003003)
[2] 사업소득 I01003004 * 자영업(노점 포함)이나 자신의 사업체 운영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순수익)이 해당됩니다.	<input type="text"/> 만원 소득범주: (I01003005)
총 계	I01003006

[소득 범주]

- | | |
|--------------------------|-----------------------------------|
| 1. 60만원 미만 | 7. 1,2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2.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8. 2,4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3. 120만원 이상 ~ 240만원 미만 | 9. 6,000만원 이상 ~ 1억 2,000만원 미만 |
| 4. 240만원 이상 ~ 360만원 미만 | 10. 1억 2,000만원 이상 ~ 3억 6,000만원 미만 |
| 5. 36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11. 3억 6,000만원 이상 |
| 6. 6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

- 패널을 포함한 가구 전체 소득자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응답자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세후 총소득을 기록합니다.
- 주업과 부업을 구분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 앞서 응답받은 개인 근로소득을 참고하여 응답받습니다.
- 가구 근로소득의 각 항목은 개인 근로소득의 각 항목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 임금소득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①급여소득: 기본급, 근속급,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전산수당, 특수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잔업수당 등
②상여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기발수당, 성과급 등
-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은 임금소득에 포함하며, 퇴직금은 임금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사업소득(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이자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자유직업(프리랜서) 원고료, 작곡료 등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되, 인세·음원 등의 저작권료 등은 재산소득으로 작성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건물 및 토지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가구원의 조사일 기준 취업여부 및 한 달 평균 소득을 참고하여 응답 받습니다. 조사일 기준 취업자이나 2017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메모란에 해당 사유를 기록합니다.
-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E3 자영업 영역의 연평균 순수익을 참고합니다.
- ▶ 금액의 응답 범위는 0~999,999까지입니다
- ▶ 각 항목 모름/응답거절 가능하며, 모름/응답거절 시 범주형으로 응답받습니다.
- ▶ 소득 응답 중 하나라도 범주형 응답이 나오는 경우, 총계의 자동합계는 범주예시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단 '1. 60만원 미만'은 60만원으로, '11. 3억 6,000만원 이상'은 3억 6,000만원으로 합니다. 이하 소득 문항 모두 동일 처리합니다.
- ▶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하면 총계가 0일 수 없습니다.
- ▶ 각 항목 당 소득을 1억원 이상으로 응답할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문4) 2017년 한 해 동안 귀댁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사회보험급여,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얼마입니까? 귀하를 포함한 가구 전체 소득자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01 02 03 04 05

구분	항목	2017년 금액	
사 재 보 험 요 구	㉗ 휴업급여 I01004001~2	<input type="text"/> 만원	
	㉘ 장해연금 I01004003~4	<input type="text"/> 만원	
	㉙ 상병보상연금 I01004005~6	<input type="text"/> 만원	
	㉚ 유족연금 I01004007~8	<input type="text"/> 만원	
	일시금	㉛ 장해일시금 I01004009~10	<input type="text"/> 만원
		㉜ 유족일시금 I01004011~12	<input type="text"/> 만원
	[2] 공적 연금	- 국민연금	연금 I01004013~14 <input type="text"/> 만원
		-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I01004015~16 <input type="text"/> 만원
	[3] 고용 보험	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I01004017~18 ·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실직자를 대상으로 제공됨.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모성보호 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input type="text"/> 만원
	재 산 소 득	[4] 금융소득 I01004019~20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한다. 예) 적금이나 저축의 이자, 주식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 적금의 원금이나 통장의 잔액은 재산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은행에 가입한 연금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 주식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채는 재산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input type="text"/> 만원
[5] 부동산소득 I01004021~22 ·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등) 또는 부동산 상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집세, 각종임대료, 부동산매매차액, 권리금 차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할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input type="text"/> 만원	
[6] 그 외 재산소득 I01004023~24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수령한 금액 · 자동차, 각종 가구류, 집기, 아선 등과 같은 유형자산의 임대수입 · 광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임대수입, 작가의 저작권 소득 등		<input type="text"/> 만원	
이 전 소 득	㉝ 장애인 수당 I01004025~26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정보보호금으로 받은 지원금 응답	<input type="text"/> 만원	
	㉞ 기초연금 I01004027~28	<input type="text"/> 만원	
	㉟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I01004029~30	<input type="text"/> 만원	
	㊱ 기타 공적이전소득 I01004031~32 · 노인교통비, 모부자가정수당, 가정 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임신·출산 진료비,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보훈급여금, 농림어업정보보호조금, 급식비 지원, 문구비, 수련회비, 노인위생비 등	<input type="text"/> 만원	
	㊲ 가구원 외 따로 살고 있는 가족, 친척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소득 I01004033~34 · 따로 독립하여 생활하는 부모, 자녀가구와 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금소득 예)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및 분가한 자녀가구에게서 생일, 명절 때 또는 월, 분기, 연간 등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용돈 등	<input type="text"/> 만원	
㊳ 그 이외의 사적이전 소득 (친구, 이웃,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I01004035~36	<input type="text"/> 만원		
기타	[9] 기타 소득 I01004037~38 · 퇴직금, 개인연금 일시금, 증여 및 상속, 경조금, 보상금(각종 사고, 이주민주거대책 등), 보험금, 경품 및 복권당첨 등	<input type="text"/> 만원	
총 계		I01004039 <input type="text"/> 만원	

- 패널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사업소득 외에서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의 세후 총 소득을 기록합니다.
- 사용 목적이 특정된 사회적 현물인 바우처는 소득의 응답대상이 아닙니다.
-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주형 보기를 통해 가장 근접한 값으로 응답합니다.
- ▶ 모름/응답거절 시 범주형으로 응답받습니다.
- ▶ 개인 근로소득 이외 소득의 각 항목이 가구 근로소득 이외 소득의 각 항목보다 크다면 다시 확인합니다.
- ▶ H 개인 소득 응답 값을 참고하여 응답받습니다.

[1]~[3] 사회보험 급여

- 산재보험 장애연금이란 요양종결 후 산재노동자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애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될 경우 장애1급~14급까지 결정되고 장애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1급~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급~7급은 연금, 일시금 중 선택 가능, 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도 장애(상이)연금이 지급되므로 구분하여 응답합니다.

[2] 공적연금 · [7]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므로 구분하여 응답합니다.
 - 노령연금 : [2]공적연금
 - 기초연금 : [7]공적이전소득
- 기초생활수급액은 [7]공적이전소득에서 응답합니다.

[4]~[6] 재산소득

- 매월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금형 부채이므로 재산소득이 아닙니다.

[8]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은 용돈, 생활비, 교통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 또는 현물로, 일시적인 증여나 상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증여나 상속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적인 현금 외에 의료비·보험료·통신비·관리비 등 지원금액 및 쌀 등 현물도 포함하며, 현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시장평가금액을 응답합니다.

※ 귀하 가구의 2017년 한 해 한 달 평균 가구 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2017년 한 해 동안 귀댁에서 지출한 한 달 평균 생활비의 항목별 지출 내역은 어떻습니까? 귀하를 포함한 가구 전체 구성원의 연간 한 달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01 02 03 04 05

항 목	2017년 한 달 평균 금액
[1] 식비 (주식비와 부식비) I01005001 I01005002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2] 교육비 - ㉠공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기성/육성회비) I01005003 I01005004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3] 교육비 -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각종치료실, 교재교구비) I01005005 I01005006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4] 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I01005007 I01005008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5] 주거비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주택관리비) I01005009 I01005010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6] 경조사비 I01005011 I01005012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7] 보건의료비 (의료보험료 제외) I01005013 I01005014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8] 교양오락비 (TV, 케이블 TV, 위성TV 시청료,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I01005015 I01005016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9] 내구재 구입비 (전자제품이나 가구, 자동차) I01005017 I01005018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0] 통신비 (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I01005019 I01005020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1] 용돈 (부모, 자녀, 그 외 가구원에게 주는 용돈의 총 합) I01005021 I01005022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2] 피복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생필품 구입비 I01005023 I01005024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I01005025 I01005026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4] 각종 이자비용(원리금 합계) I01005027 I01005028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5] 그 외 기타 세금 (건물세, 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 I01005029 I01005030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6] 현금 및 각종 기부금 I01005031 I01005032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17] 기타 생활비 지출금액(저축/보험 등) I01005033 I01005034	<input type="text"/> 만원, 소비범주: ()
한 달 평균 생활비 총액	<input type="text" value="I01005035"/> 만원

[소비 범주]

- | | |
|--------------------|------------------------|
| 1. 3만원 미만 | 8.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 2. 3만원 ~ 5만원 미만 | 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 3. 5만원 ~ 10만원 미만 | 10. 300만원 ~ 500만원 미만 |
| 4. 10만원 ~ 20만원 미만 | 11.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
| 5. 20만원 ~ 30만원 미만 | 12. 1,000만원 이상 |
| 6. 30만원 ~ 50만원 미만 | |
| 7. 50만원 ~ 100만원 미만 | |

- ‘건강과 생활(G)’ 영역 문7)의료기관 현황에서 이용현황이 있다고 응답한 패널이, [7]보건의료비 응답이 ‘0’인 경우 재확인합니다.
- 문5) 전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름/응답거절 가능하며, 이 경우 범주형 보기를 통해 가장 근접한 답을 얻도록 합니다.
- 0~999999까지 응답 가능합니다.
- 다른 가구원이 지출하여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는 모름/응답거절로 처리합니다.
- 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5,000원 미만은 0원, 이상은 1만원으로 응답(반올림 처리)
- ▶ 각 항목의 개별 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E-3 문7) 초기투자비용 현황에서 정부 및 공단, 금융권 등 용자 및 대출 등이 있다고 응답(3~6)한 패널은 [14] 각종 이자비용이 0원일 수 없습니다.

문5-1) (([7]기타 생활비가 0원 보다 큰 경우)기타로 응답하신 생활비는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신 용도를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01005036))

01 02 03 04 05

- 기타 생활비 지출 항목이 다른 생활비 항목에 포함될 경우 응답 내용을 수정합니다.

문6) 귀하의 가구에서는 지난 1년 간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I01006001)

01 02 03 04 05

1.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었음
2. 생활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없었음 → 문7)로 가십시오

문6-1) 그렇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가장 주된 방법부터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I01006002~3)

01 02 03 04 05

1순위 2순위

1.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이용
2. 현금서비스 이용
3.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림
4.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
5. 사채이용
6. 부동산매각이나 전세금 인상
7.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8. 저축, 예금, 적금의 해약
9.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
10. 자동차, 내구재, 금, 은 등 귀중품 매각
11. 기타(적을 것 : I01006002t, I01006003t)
12. 없음

- ▶ 기타에 ‘자녀가 줌’ 등 ‘사적/공적이전소득’을 응답한 경우 H-문3), I-문4)의 개인/가구 근로 외 소득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 ▶ 1순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며, 1, 2순위에 같은 응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1, 2순위가 모두 기타인 경우에만 중복응답이 가능합니다.
- ▶ 2순위에서만 ‘없음’을 허용하며, ‘모름/응답거절’은 응답 할 수 없습니다.

문9) 귀객은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I01009001)

01	02	03	04	05
----	----	----	----	----

1. 부채가 있음
2. 부채가 없음 → 문10)으로 가십시오

▶ 부채에는 개인이나 가구의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한 경우의 미지급금, 금융기관 부채(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카드론·대환대출 등), 비금융기관 부채(사채, 회사나 친구·친척에게 빌린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여할 할 계 등),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으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 월세나 이자, 도지 등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못해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임대보증금,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문9-1) 현재 귀객의 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I01009002~3)

01	02	03	04	05
----	----	----	----	----

--	--	--	--	--	--	--	--	--	--

 만원

▶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갚아야 할 금액의 총액을 응답합니다.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가 사업·영업을 위해서 빌린 돈도, 부채의 명의를 개인일 경우에는 가구의 부채에 포함합니다.(법인 명의의 부채 제외)
▶ 부채가 10억원 초과라고 응답할 경우 다시 확인합니다.

[부채 범주]

- | | |
|-----------------------|---------------------|
| 1. 500만원 미만 | 6.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2.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7.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 3.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8.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 4.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9. 10억원 이상 |
| 5.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문10) 귀객은 현재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I01010001)

01	02	03	04	05
----	----	----	----	----

1. 저축을 한다
2. 저축을 하지 않는다 → 문11)로 가십시오

▶ 저축에는 금융기관 예·적금, 저축성 보험(재테크 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연금, 계,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종신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을 말합니다.

문10-1) 현재 총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I01010002~3)

01	02	03	04	05
----	----	----	----	----

--	--	--	--	--	--	--	--	--	--

 만원

▶ 현재까지의 총 불입액을 응답합니다.

[저축 범주]

- | | |
|-----------------------|---------------------|
| 1. 500만원 미만 | 6.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 2.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7.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 3.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8.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 4.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9. 10억원 이상 |
| 5.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귀하 가구의 거주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택의 현재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I01011001)

01	02	03	04	05
----	----	----	----	----

1. 일반단독주택
2. 다가구용 단독주택
3. 다세대주택
4. 연립주택(빌라)
5. 일반아파트
6. 영구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 포함)
7.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8.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9. 오피스텔
1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11.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12. 기타(적을 것 : I01011001t)

문12) 귀택의 주거지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I01012001)

01	02	03	04	05
----	----	----	----	----

1. 자가
2. 전세
3. 월세(보증금 있음)
4. 월세(보증금 없음)
5. 사글세
6. 무상
7. 기타(적을 것 : I01012001t)

- 주거형태가 아니라 주거지 소유 형태를 응답하는 문항으로, 문11)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 자가, 전세, 월세(보증금 있음) 응답자는 문8-4)에서 '0'이 나올 수 없습니다.
- ▶ 문12)에서 '1. 자가'로 응답하였으나 문8-2)에서 '2.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재확인합니다.

※ 패널과의 관계 코드표

<p>10. 패널 본인 01. 패널의 아버지 02. 패널의 어머니</p> <p>05. 패널의 조부 06. 패널의 조모</p> <p>11. 패널의 첫째 자녀 12. 패널의 둘째 자녀 13. 패널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p> <p>111. 패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패널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p> <p>121. 패널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패널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24, ...)</p> <p>131. 패널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132. 패널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p> <p>31. 패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p> <p>311. 패널의 첫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첫 번째 사람 = 311, 두 번째 사람 = 312, ...)</p> <p>321. 패널의 둘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첫 번째 사람 = 321, 두 번째 사람 = 322, ...)</p> <p>51. 패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p> <p>997. 혈연관계가 아닌 다른 가구원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p>	<p>20. 패널의 배우자</p> <p>03. 패널의 배우자의 아버지 04. 패널의 배우자의 어머니</p> <p>07. 패널의 배우자의 조부 08. 패널의 배우자의 조모</p> <p>21. 패널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 패널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23. 패널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p> <p>211. 패널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12. 패널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p> <p>221. 패널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2. 패널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p> <p>231. 패널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32. 패널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p> <p>41. 패널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p> <p>411. 패널 배우자의 첫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첫 번째 사람 = 411, 두 번째 사람 = 412, ...)</p> <p>421. 패널 배우자의 둘째 형제/자매의 첫째 자녀 (첫 번째 사람 = 421, 두 번째 사람 = 422, ...)</p> <p>61. 패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p> <p>998.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p>
-------------------------------------------------------------------------------------------------------------------------------------------------------------------------------------------------------------------------------------------------------------------------------------------------------------------------------------------------------------------------------------------------------------------------------------------------------------------------------------------------------------------------------------------------------------------------------------------------------------------------------------------------------------------------------------------------------------------------------------------------------------------	--------------------------------------------------------------------------------------------------------------------------------------------------------------------------------------------------------------------------------------------------------------------------------------------------------------------------------------------------------------------------------------------------------------------------------------------------------------------------------------------------------------------------------------------------------------------------------------------------------------------------------------------------------------------------------------------------------------------------------------------------------------------------------------------------------------------------------------

부록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2018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 (2차 코호트 1차 조사)

저 자

- 정 석 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 슬 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전임연구원)

발행일 2019년 9월 6일

발행인 심 경 우

발행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전화: (02) 2670-0461

팩스: (02) 2670-0479

<http://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

인쇄처 (주)맑은기업 052) 248-2181

※ 이 책은 무단복사, 복제를 불허합니다

〈비매품〉